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477-0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효과성 달성 방안 연구**

2015. 6.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발 간 등 록 번 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효과성 달성 방안 연구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원(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박진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동하(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효과성 달성 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차 례

| | |
|---|-----|
| 요약 | 1 |
| I. 서론 | 15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 2. 연구내용 | 17 |
| 3. 연구방법 | 17 |
| 4. 연구동향 | 19 |
| II. 국내외 저소득 영유아 지원 사업 고찰 | 27 |
| 1. 국내 저소득 영유아 지원 사업 및 정책 현황 | 27 |
| 2. 사업간 중복성 및 연계성 분석 | 45 |
| 3. 국외 영유아 육아지원 사업 및 정책 고찰 | 53 |
| III. 저소득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지출 및 지원수요 분석 | 67 |
| 1. 저소득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지출 현황 | 67 |
| 2. 저소득 영유아가구 육아지원 수혜 현황 | 83 |
| 3. 육아지원정책 수요 및 육아품목 지원에 대한 의견 | 91 |
| IV. 저소득 영유아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방안 | 104 |
| 1. 사업 목표 및 특성 | 104 |
| 2. 사업 대상 및 규모 | 105 |
| 3. 지원 단가 | 114 |
| 4. 사업(안)별 소요예산 | 130 |
| 5.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 전략 | 133 |
| 참고문헌 | 151 |
| 부록 | 157 |
| 부록 1. 저소득 영유아가구 설문지 | 158 |
| 부록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및 대상아 수 | 168 |
| 부록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사업 자료 분석 | 169 |

| | |
|----------------------------------|-----|
| 부록 4. 최저생계비-소득구간 환산 기준 | 172 |
| 부록 5. 기저귀·분유 지원단가별 소요예산 추계 | 173 |

표 차례

| | |
|--|----|
| 〈표 I-3- 1〉 조사 설계 | 18 |
| 〈표 I-3- 2〉 조사 내용 | 18 |
| 〈표 I-4- 1〉 선행연구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안) | 22 |
| 〈표 II-1- 1〉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 요약 | 33 |
| 〈표 II-1- 2〉 연도별 사업지역 현황자료 | 35 |
| 〈표 II-1- 3〉 홀별이 가족가구의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40 |
| 〈표 II-1- 4〉 맞별이 가족가구의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40 |
| 〈표 II-1- 5〉 2015 저출산기본계획 지자체별 현물 지원 사업 | 42 |
| 〈표 II-2- 1〉 소득구간 및 연령별 지원사업 수 | 48 |
| 〈표 II-2- 2〉 중복 발생 가능 사업간 조정 방안 | 51 |
| 〈표 II-3- 1〉 WIC 프로그램 대상자 | 54 |
| 〈표 II-3- 2〉 WIC 식품패키지 종류 | 56 |
| 〈표 II-3- 3〉 홋카이도 미카사시(三笠市) (영아기저귀 구입비용 조성사업) 개요 64 | 64 |
| 〈표 III-1- 1〉 영유아가구의 소득수준별/자녀연령별 양육비 지출 | 68 |
| 〈표 III-1- 2〉 분유·기저귀 발달시기별 가계 지출 비용/비중 | 69 |
| 〈표 III-1- 3〉 소득계층별 육아품목지출 기초통계 | 70 |
| 〈표 III-1- 4〉 응답자 특성 | 72 |
| 〈표 III-1- 5〉 저소득 영유아가구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 73 |
| 〈표 III-1- 6〉 저소득 영유아가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용 | 74 |
| 〈표 III-1- 7〉 지난 한 달 평균 기저귀·분유 구입여부 - 0세아 가구 | 76 |
| 〈표 III-1- 8〉 하위특성별 분유 구입여부 - 0세아 가구 | 76 |
| 〈표 III-1- 9〉 기저귀·분유 구입채널 - 저소득 영유아가구/0세아가구 | 77 |
| 〈표 III-1-10〉 영유아 자녀 월 평균 기저귀 구입비용 | 78 |
| 〈표 III-1-11〉 영유아 자녀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 | 78 |
| 〈표 III-1-12〉 첫째 영유아 자녀 월평균 기저귀 구입비용 | 79 |
| 〈표 III-1-13〉 첫째 영유아 자녀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 | 80 |
| 〈표 III-1-14〉 영유아 자녀 월 평균 조제분유 구입비용 | 80 |
| 〈표 III-1-15〉 영유아 자녀 분유 한통 먹는데 걸리는 일수 | 81 |

| | |
|--|----|
| 〈표 III-1-16〉 첫째 영유아 자녀 월 평균 조제분유 구입비용 | 81 |
| 〈표 III-1-17〉 첫째 영유아 자녀 분유 한통 먹는데 걸리는 일수 | 82 |
| 〈표 III-2- 1〉 육아물품 지원 수혜 경험 | 83 |
| 〈표 III-2- 2〉 지원받은 육아물품 종류/수 | 84 |
| 〈표 III-2- 3〉 육아물품 지원처 | 84 |
| 〈표 III-2- 4〉 육아물품 지원주기/횟수 | 84 |
| 〈표 III-2- 5〉 육아물품 지원방식 | 85 |
| 〈표 III-2- 6〉 지원받은 품목의 지원내용 - 현금액 | 85 |
| 〈표 III-2- 7〉 지원받은 품목의 지원내용 - 바우처 이용권 금액 | 85 |
| 〈표 III-2- 8〉 지원받은 품목 | 85 |
| 〈표 III-2- 9〉 지원받은 육아 물품 중 가장 도움이 된 품목 | 86 |
| 〈표 III-2-10〉 육아물품 지원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 87 |
| 〈표 III-2-11〉 현행 육아물품 지원의 충분 정도 | 88 |
| 〈표 III-2-12〉 가장 최근 산후조리 방법 | 89 |
| 〈표 III-2-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진행 비율 | 90 |
| 〈표 III-3- 1〉 기저귀·분유 지출이 자녀양육에 부담되는 정도 | 91 |
| 〈표 III-3- 2〉 기저귀·분유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 91 |
| 〈표 III-3- 3〉 기저귀·조제분유 적정 지원방식 | 92 |
| 〈표 III-3- 4〉 기저귀·조제분유 적정 지원기간 | 92 |
| 〈표 III-3- 5〉 기저귀·조제분유 적정 지원주기 | 92 |
| 〈표 III-3- 6〉 기저귀/분유 중 한 가지 물품 지원 시, 지원받고 싶은 물품 | 93 |
| 〈표 III-3- 7〉 천 기저귀 사용 경험 여부 | 93 |
| 〈표 III-3- 8〉 희망하는 기저귀 지원 종류 | 94 |
| 〈표 III-3- 9〉 천 기저귀 지원 시, 사용 의향 여부 | 94 |
| 〈표 III-3-10〉 천 기저귀 사용에 대한 의견 | 94 |
| 〈표 III-3-11〉 모유수유 경험 여부(중복응답) | 94 |
| 〈표 III-3-12〉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 | 95 |
| 〈표 III-3-13〉 모유수유에 대한 의견 | 96 |
| 〈표 III-3-14〉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 96 |
| 〈표 III-3-15〉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부분 | 97 |
| 〈표 III-3-16〉 영유아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 98 |

| | |
|---|-----|
| 〈표 III-3-17〉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부분 | 98 |
| 〈표 III-3-18〉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 가장 지원이 안되는 부분 | 99 |
| 〈표 III-3-19〉 자녀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경우, 감소된 부담만큼 지출이 예상되는 분야 | 99 |
| 〈표 III-3-20〉 현행 영유아자녀 육아지원에서 추가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 100 |
| 〈표 IV-2- 1〉 기저귀·분유 지원대상 규모 기존 산출결과 | 106 |
| 〈표 IV-2-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0세아 포함 가입자 수 | 108 |
| 〈표 IV-2- 3〉 선행연구 방식의 지원 대상 규모 | 109 |
| 〈표 IV-2- 4〉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지원대상 산정결과: 1안 | 110 |
| 〈표 IV-2- 5〉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월별 판정 대상자 현황 | 111 |
| 〈표 IV-2- 6〉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적합 판정자의 소득 분포 | 112 |
| 〈표 IV-2- 7〉 지원대상 규모 산정결과: 2안 | 113 |
| 〈표 IV-2- 8〉 저소득 0세아 수 및 추정치 | 113 |
| 〈표 IV-3- 1〉 기저귀·조제분유 시장가격 조사 개요 | 115 |
| 〈표 IV-3- 2〉 기저귀 단계별 제품 및 기준 | 116 |
| 〈표 IV-3- 3〉 분유 단계별 제품 및 기준 | 116 |
| 〈표 IV-3- 4〉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오프라인 가격 기준) | 116 |
| 〈표 IV-3- 5〉 기저귀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각 5개 제품 정보(오프라인 가격 기준) | 117 |
| 〈표 IV-3- 6〉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온라인 가격 기준) | 117 |
| 〈표 IV-3- 7〉 기저귀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각 5개 제품 정보(온라인 가격 기준) | 118 |
| 〈표 IV-3- 8〉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오프라인 가격 기준) | 119 |
| 〈표 IV-3- 9〉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정보(오프라인 가격 기준) | 119 |
| 〈표 IV-3-10〉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온라인 가격 기준) | 121 |
| 〈표 IV-3-11〉 조제분유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각 5개 제품 정보(온라인 가격 기준) | 121 |
| 〈표 IV-3-12〉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온·오프라인) | 123 |
| 〈표 IV-3-13〉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온·오프라인) | 123 |
| 〈표 IV-3-14〉 2015년 5월 분유 가격 | 124 |
| 〈표 IV-3-15〉 2015년 5월 가격대별 분유 가격 조사 결과 | 124 |
| 〈표 IV-3-16〉 2015년 5월 기저귀 가격 | 125 |
| 〈표 IV-3-17〉 2015년 5월 가격대별 기저귀 가격 조사 결과 | 125 |
| 〈표 IV-3-18〉 이용 자녀 1인당 월평균 구입비용 조사 결과 | 126 |
| 〈표 IV-3-19〉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단가 산출 | 127 |

| | |
|--|-----|
| 〈표 IV-3-20〉 가격조사 결과에 기초한 지원단가 산정 결과 | 129 |
| 〈표 IV-4- 1〉 지원대상 산정방식 및 지원단가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 | 131 |
| 〈표 IV-4- 2〉 지원대상 산정방식 및 지원단가(안)별 시범사업 소요예산 | 132 |
| 〈표 IV-5-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중장기 로드맵 | 136 |
| 〈표 IV-5- 2〉 단계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계(안) | 137 |
| 〈부록 표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0세아 포함 가입자 수 | 168 |
| 〈부록 표 2〉 건강보험료 기준 0세아 포함 가입자 수_가구원수별 | 168 |
| 〈부록 표 3〉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월별 판정 대상자 현황 | 169 |
| 〈부록 표 4〉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적합 판정자의 소득 분포 | 170 |
| 〈부록 표 5〉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이용자의 소득 분포 | 170 |
| 〈부록 표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월별 이용 현황 | 170 |
| 〈부록 표 7〉 최저생계비-소득구간 환산 기준 | 172 |
| 〈부록 표 7〉 소요 예산: 1-1안 | 173 |
| 〈부록 표 8〉 소요 예산: 1-2안 | 174 |
| 〈부록 표 9〉 소요 예산: 1-3안 | 175 |
| 〈부록 표 10〉 소요 예산: 2-1안 | 176 |
| 〈부록 표 11〉 소요 예산: 2-2안 | 177 |
| 〈부록 표 12〉 소요 예산: 2-3안 | 178 |
| 〈부록 표 13〉 소요 예산: 가구당 월평균 구입비용 | 179 |
| 〈부록 표 14〉 소요 예산_‘14년 단가 기준 | 180 |
| 〈부록 표 15〉 소요 예산_‘15년 단가 기준 | 181 |

그림 차례

| | |
|---|-----|
| [그림 I-4-1]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 20 |
| [그림 I-4-2] 연령에 따른 단위가격의 인적자본 투자수익성 | 25 |
| [그림 II-3-1] WIC 모유수유 지원을 추이 | 57 |
| [그림 II-3-2] WIC 사업 현금바우처의 시행기간별 실제 사용도 | 58 |
| [그림 II-3-3] 일본 미카사 시 기저귀 바우처 이용권 및 사업시행 개요 | 65 |
| [그림 IV-5-1] 보편지원 내 차등지원설계로 단계적 확대 방안 | 138 |
| [그림 IV-5-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효과성 달성을 위한 연계·통합 전략(1) - 내용·목표 연계 | 139 |
| [그림 IV-5-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효과성 달성을 위한 연계·통합 전략(2) - 발달단계별 지속성 확보 | 140 |
| [그림 IV-5-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흐름도 | 141 |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정책의 보편적 보육·교육 지원 설계 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유아가구 지원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형평성과 분배효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
 - 전 세계적으로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와 미래인적자원의 개발, 그리고 영유아에게 건강한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쳐 누적될 수 있는 부정적 발달결과를 중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영아가구 대상으로 육아필수재에 해당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고자 함.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차차상위 저소득층에 속하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0세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의 품목에 대한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영아가구의 양육부담을 덜고자 함(한성민 외, 2014).
 - 본 연구는 2015년 하반기 시범사업 시행 예정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정책목적 달성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단계적 전략 마련에 목적이 있음.

나. 연구내용

-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지원 사업 및 정책 현황 파악을 통한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검토
-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육아비 지출 및 지원 수혜 현황, 정책 수요 파악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계 구체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

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 및 자료 분석
-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자문회의 및 영유아부모 면담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국외출장을 통한 해외사례 분석

2. 국내외 저소득 영유아 지원 사업 고찰

가. 국내 저소득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및 중복성/연계성 분석

□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가구 및 영유아 대상 지원 정책은 ‘아동복지사업’과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육아지원사업 2개의 정책 틀로 구성됨. 특정 대상 요건에 근거한 선별적 지원과 영유아 모두에 해당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구분됨.

- 내용적으로 크게 (1) 공공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영양·의료 지원 사업, (2) 발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성장 발달을 조기 지원·중재 하는 사업, 그리고 (3)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됨.
- 첫째, 건강·영양·의료 지원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수의 사업이 있으나, 모두 특정한 질병이나 영양상의 결핍 등 의학적 소견이 있는 대상에 한정됨.
- 둘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지자체 출산축하금 및 축하선물 지급이 있음. 대체로 출산 관련 1회성 지원의 특성을 가짐.
- 셋째, 장애인 부모 자녀 대상 언어발달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저소득가구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발달지원서비스)는 전형적인 아동복지사업으로, 부모/가구 대상의 양육지원이 아닌 영유아 대상의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임. 본 기저귀·분유 현물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영역을 갖지 않음.

- 넷째, 부처간 통합 저출산 대책 및 교육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양육수당 및 보육료·교육비 지원, 국세청의 자녀장려금(15년 9월부터 시행 예정) 등은 자녀양육 및 보육·교육 과정에 대한 서비스 현물 지원으로 기저귀·분유 품목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특성이 미미함.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이용에 국한되고, 양육수당은 이에 대한 대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현금지급액의 수준이 표준 보육료·교육비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기저귀·분유의 품목 지급이 갖는 중복성의 문제는 제한적임.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다문화·한부모가족 육아용품 지원 사업 등 취약가족 유형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가짐. 그러나 부부+자녀의 가족형태가 갖지 못한 상대적으로 공백이 되는 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부족한 양육역량을 보강하고자 하는 지원으로, 이러한 결핍에 대한 지원이 본 기저귀·분유의 육아필수재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의 시책사업을 검토한 결과(전국 시도 및 교육청, 2015), 전국 24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양육 관련 지원 중 총 67곳의 지자체에서 출산/육아 용품을 직접 지급하고 출산축하금과 양육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민간사회복지단체에서도 육아필수재 현물 지원을 시행함.
- 약 35개 지자체에서 기저귀를 포함하여 출산용품의 물품을 지원함. 저출산 대책의 틀에서 지자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어 이루어짐. 지자체별 1회성 지원의 특성을 가지나, 품목지원이 중복될 수 있음.
- 상기한 육아 지원 사업 및 정책은 특정 내용의 결핍 혹은 어려움을 가진 영유아와 부모 대상으로 취약한 양육환경을 보강하기 위한 보완재로서의 특성과 1회성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매월 육아필수재 지원과는 중복성이 미미함.
- 그러나 각 사업 및 지자체별로 육아 용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저귀와 분유의 동일 품목이 지원되지 않도록 시행단계의 조정이 필요함.
 - 사업간 지원 서비스 총량을 파악하여 과부족을 분석함으로써,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합 설계될 필요가 있음.

나. 국외 저소득 영유아 지원 사례 및 시사점

- 미국의 WIC(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사업, 영국의 Healthy Start, 캐나다의 Early Childhood Initiatives Program은 저소득층 영양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영양 지원 사업임.
 - 영국의 Healthy Start는 지역 식료품소매상을 통해 발달시기별로 권장되는 분유, 우유, 과일, 채소, 비타민 등의 건강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캐나다의 Early Childhood Initiatives Program은 아동학대, 방임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환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화된 건강·영양 지원 사업의 형태를 띤.
- 일본 미카사 시의 기저귀 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매칭 사업으로, 유입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고령화되는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영아가구 대상으로 기저귀 현물을 지원함. 마을의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적 효과를 보임.
 - 미국의 Diaper bank는 정부의 WIC 사업이 건강·영양 지원으로 국한된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기저귀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민간단체의 기저귀 지원 사업임.
 - 영국의 북런던지역 RNFL (Real nappies for London) 사업은 1회용 종이기저귀의 쓰레기량을 줄이고 천기저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된 천 기저귀 지원 사업임.

3. 저소득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지출 및 지원수혜 분석

가. 저소득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지출 현황

- 가구 소득계층별 영유아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용 지출을 비교하면,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양육비 지출비중의 감소로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서문희 외, 2010).
 - 특히 영아기 육아 관련 내구재와 소비재 등 '상품' 구입의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남(최윤경 외, 2013). 소득수준이 낮은 하층의 가계지출

대비 영유아자녀 육아비 지출 비중이 31.8%로, 중층(26.3%), 상층(28.8%)에 비해 높음. '영아가구의 경우 육아품목 소비지출 중 분유와 기저귀가 차지하는 비중이 26.5%로 지출 비중이 큼.

- 본 연구의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육아비 지출 조사 결과¹⁾, 자녀양육비 전체 지출은 약 45만2천원, 이 중 취학전 영유아자녀 대상의 양육비 지출은 월 평균 약 38만 9천원으로 조사됨.
 - 자녀양육비 지출이 조사대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166만원)의 각 27.2%, 23.4% 수준임.
 - 저소득 가구 내에서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연령이 많아질수록 월 평균 상시적인 양육비용 지출이 늘어남. 즉 영아가구에 비해 유아가구의 월 평균 비용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0세아 가구의 경우, 매월 구매하는 소비재 외에, 자녀의 출산으로 지출하게 되는 내구재, 서비스재의 구입 비용이 큼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최윤경 외, 2012, 2013). 그러나, 2012년 이후 무상 보육·교육의 육아지원 확대로,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고 유아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영아가구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 통계청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나 자산이 많을수록 출산을 많이 하는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육아필수재 지출 패턴

- 저소득 0세아 가구의 육아품목 구매율을 조사한 결과, 기저귀 100%, 분유 69.0%로 육아필수재로서의 긴요도가 분유보다 기저귀가 큼. 모유수유의 조제분유 대체율이 천 기저귀의 1회용 기저귀 대체율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비율이 기저귀(88.8%), 분유(58.8%)로 매년 인터넷을 이용한 육아품목의 구매율이 증가 추세임. 특히 0세아 가구의 온라인 구매율이 다른 연령보다 높음.
 - 가구당 월 평균 기저귀 구입비용은 7만8천원, 1일 평균 7개를 사용함. 0세아의 경우 월 평균 8만4천원, 1일 평균 약 8개를 사용함. 가구소득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는 월 6만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월 평균 조제분유 구입비용은 10만원, 800g 분유 한 통을 먹는데 걸리는데 평균 8일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 영아가구에서는 분유 구매에 월 8만8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0세아 1인당 분유 한통에 약 9일(8.7일) 걸리는 가운데, 대체로 한 달에 평균 분유 4통을 먹는 것으로 조사됨. 모유수유 비율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분유 소비량에 편차가 있음.

다. 저소득 영유아가구 육아지원 수혜 현황¹⁾

기저귀, 분유와 같은 육아품목을 지원받은 경험이 조사대상의 약 9.3%로 응답됨.

-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원받은 수혜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그러나 최저생계비 100% 이상의 차상위층에서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차상위계층 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지원방식은 육아물품이 다수인 관계로 직접 수령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바우처 이용권, 출산축하금/양육보조금에 대한 현금 지원의 순임.
- 지원품목으로 '기저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기 옷을 비롯하여 출산용품, 영유아식품/이유식 재료, 그리고 출산축하/장려금의 현금 지원이 응답됨.

육아물품 지원이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2.1%로, 도움되지 않았다는 부정응답 17.9%보다 우세함. 0세아 가구의 긍정응답률(84.2%)이 다소 높음.

- 현행 육아물품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약 62%, 충분하다 7.5%로,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함.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7%로 적지 않음.
- 최저생계비 100% 이하와, 월가구소득 231~250만원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육아물품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음. 또한, 자녀연령별로 0세아와 3~4세아를 둔 가구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다

1) 조사대상 저소득 영유아가구는 가구소득 응답에 기초하여 유의 표집됨. 법정 저소득 지원 가구를 대표하는데 제한이 있음.

소 많음. 출산 직후 신생아 1년과 유아기 만 3~4세에 육아물품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라. 육아지원정책 수요 및 육아품목 지원에 대한 의견

□ 기저귀·조제분유 지출이 자녀양육에 경제적으로 (약간+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기저귀 96.3%, 분유 87.0%로 높게 나타남.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기저귀 90.0%, 분유 83.8%로 높음.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방식으로 현금 지급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바우처카드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직접 배달 또는 수령 방식에 대한 수요도 약 10% 이상 나타남.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에 대해, 자녀 월령 24개월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후 36개월까지, 12개월까지의 순으로 응답됨. 매월 주기로 지급하는 것을 가장 선호되었으며, 분기별 지급에 대한 의견도 10% 이상임.

- 기저귀·조제분유 중 한 가지만 지원할 경우, 기저귀 지원에 대한 선호가 분유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음.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저귀 지원 선호가 더 많았으며, 분유에 대한 지원 의견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천 기저귀 사용 경험은 약 28% 인 가운데, 천기저귀 혼합사용에 대한 의견이 전체 3.3%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1회용 기저귀 지원을 선호함. 천 기저귀 지원 시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함.

- 모유수유 경험은 (과거+현재) 약 87%의 가구에서 응답되었으며, 모유수유를 전혀 한 적이 없는 비율은 14.2%임.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92.3%), 그리고 0세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90.6%)에서 모유수유를 경험한 비율이 다소 높음.

- 모유수유를 하지않는 이유로, 모유가 생산되지 않아서/모유량이 적어서, 그리고 약 복용과 질병 때문에 등의 기능적인 이유가 많음.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유수유가 어려운 비율이 약 7.7~9.3%임.

□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현재 생활에서 그리고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생활비/생계비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으며, 이는 일하지못함(실업)과 주거비 상승의 응답과 합쳐지면 1순위 응답 기준 46.7% (중복응답기준 약 97.7%)로 그 비중이 커짐.

- 자녀양육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의 '육체적 피로'임. 그 다음 육아 자체의 어려움(3순위), 육아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상황(4순위), 그리고 일하는 경우 양육시간과 여력의 부족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5순위)에 대한 응답이 있었음.
- 0세아 가구에서도 동일한 응답 순위를 보이는 가운데, 육아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육아자체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많음.
- 건강·영양상의 문제와 우울감과 불안 등 사회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육아 자체의 힘듦과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0세아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 육아에 대한 상담 및 코칭과 같은 심리적·물리적 지원을 함께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음.
- 체감하는 어려움 대비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자녀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영양 지원', '생활비/생계비 지원'의 순으로 응답됨. 현행 육아지원 정책 중에서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가장 크게 체감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양플러스 등 건강·영양·의료 위주의 영유아 지원체계가 긍정적으로 체감됨.
- 육아지원이 확대될 경우, 감소한 양육비용 부담이 어떠한 부분으로 지출될지 질문한 결과, '생활비'로 쓰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비', 육아품목 구입의 '양육비 지출'의 순으로 응답됨. '저축'과 '대출/빚갚기'가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육아지원 시 서비스 또는 바우처 지원보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68.1%로 많았으며, 0세가 가구에서도 유사하게 응답됨.
- 현행 육아지원 설계에서 우선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으로 양육비 지원이 가장 많은 가운데, 건강·영양·의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컸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대상 육아멘토링 및 부모교육과 육아상담의 지원, 영유아부모 육아공동체 모임 및 품앗이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음. 지역사회 단위의 지

원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함.

4. 저소득 영유아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설계

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의 설정

- 본 현물 지원사업은 저출산 원인으로 파악된 양육부담 완화의 1차적 목표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출산을 제고의 목적을 가짐.
 - 앞서 살펴본 대로 가계 양육부담이 소득수준과 발달시기별로 다른 계층/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신생아기 1년의 시기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사업목표를 육아지원정책의 기본 목적인 가계 양육부담의 완화에 두는 것이 타당하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완화의 목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보강하는 것 또한 정책적 타당도를 가짐.
- 자녀양육 부담의 완화를 통해 영유아와 영유아가구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업목적 및 지원 대상 설정을 통해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영아 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조성”임.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목표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양육환경을 제공’으로 구체화 하도록 함.
 - 본 사업의 목표를 ‘저소득층 양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Healthy Start와 같이 현물지원과 함께 부모교육과 자녀양육지원을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 및 사업내용(심리정서적 지지 포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부처-지자체-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및 영유아가구 대상 건강·영양·의료 지원과 아동발달중재 사업, 교육복지사업, 취약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연계하여 통합설계와 지원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편지원 체계 내 선별지원의 보강을 통한 저소득층 양육지원 효과의 증대를 또 다른 목표로 함. 부처별 사업간 중복성을 최소화 하고, 대상별 내용별

연계성 확보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본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함.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비용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양육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내용과 질 중심의 과정적 설계와 성과 지표를 담도록 함.
- 즉 신규로 진입하는 본 사업의 경우, 개별가정의 육아품목 구입비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육아필수재의 공유와 대여 사업으로 연계·확장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모유수유와 천 기저귀 병행 사용과 같은 영유아가구 대상 양육과정의 문화 형성과, 취약계층 고유의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하여 전문화된 통합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나. 사업대상 선정 및 규모

- 본 연구 역시 사업추진 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건강보험료에 기초하여 환산된 소득자료에 기초하여 대상규모를 추정함.
 - 사업대상의 선정은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환산한 소득수준에 의해 선별함.
 - 단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고려하여, 취약계층 가족유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시설아동을 포함하도록 함.
-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만 0세아 수는 51,101명으로, (2안)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신청 자료에 기초하여 추정된 대상아 수도 55,436명으로 비슷한 수준임.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0세아 수는 78,892명으로, (2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신청자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는 77,548명으로 비슷함.
 -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추정 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서비스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는 110,976명임 소득수준이 적을수록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서비스 신청 및 이용률이 더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에 기초한 대상 규모 추정치가 최저생계비 구간이 확대될수록 다른 빈곤율 지표²⁾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고려한 추정임.

2) 한국 아동빈곤율 13.4%, 다차원적 빈곤율 약13%, 소득빈곤율 약16.4%(남상호, 2014)

〈표 1〉 기저귀·분유 지원대상 0세아 규모 산출

단위: 가구, 명, %

| 구분 | 2013 | 사업계획서 | 2014 | 2015 |
|------------|---------|----------------|-------------------------------|-------------------------------------|
| 최저생계비 160% | 164,018 | | | |
| 최저생계비 150% | 143,386 | 164,114 | 136,530 | (110,976) |
| 최저생계비 140% | 125,047 | | | (101,668) |
| 최저생계비 130% | 105,940 | | | (90,100) |
| 최저생계비 120% | 87,453 | | | 89,249 |
| 최저생계비 100% | 54,098 | | 53,831 | 57,567 |
| 산출 고려 요인 | 다태아 비율 | 맞벌이, 모유수유불가 비율 | 미가입/피부양자, 부부*맞벌이, 다태아, 모유수유불가 | 미가입/미납부, 맞벌이, 다태아, 모유수유불가 (모 부채 추가) |

주: 2015년 산출결과 ()는 2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료를 이용한 결과임.

다. 지원단가 및 소요예산

- 지원단가 산출을 위해, (1)본 조사에 실시한 기저귀·조제분유 월령별 제품라인을 반영한 가격조사와, (2)KICCE 육아물가조사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품목 위주의 가격조사 결과, 2개를 활용함.
 - 2개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가격이 저렴함. 분유의 경우 저가평균이 본 조사결과 분유 1통 21,500원, 기저귀 1개 266원으로 나타났다으며, 육아물가조사에서는 분유 1통 약 17,000원, 기저귀 1개 228~299원으로 조사됨.
 - 1일 평균 기저귀 8개 사용, 한 달 분유 4통의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 단가를 산출하고, 다양한 조사결과의 단가 산출의 합의를 검토하고 소요예산을 추계함.
 - 이용 아동의 월령단계별로 시장에 제공되는 다양한 상품라인을 고려한 본 조사결과의 저가 평균을 지원단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2안에서 한달 지원 단가가 기저귀 64,000원, 분유 86,000원으로 산출됨.

〈표 2〉 가격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 단가

| 구 분 | 본 조사 결과 (월령단계별 제품 모두 반영) | | | 육아물가조사 결과 (대표품목군 위주) | | |
|----------------|-----------------------------|-----------------|---------------|-------------------------|------------------|-----------------------------|
| | 전체 가중평균 (1-1안) | 저가군평균 (1-2안) | 최저가 (1-3안) | 전체 산출평균 (2-1안) | 저가군 평균 (2-2안) | 베스트 대표품목 1개 기준 (2-3안) |
| 분유(1통) | | | | | | |
| 오프라인 | 33,208 | 23,500 | 15,325 | 32,549 | 17,343 | 29,000 |
| 온라인 | 31,052 | 21,500 | 15,360 | 28,811 | 16,934 | 25,000 |
| 기저귀(1개) | | | | | | |
| 오프라인 | 403 | 274 | 247 | 396 | 299 | 380 |
| 온라인 | 337 | 266 | 231 | 326 | 228 | 260 |

주: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단계별 저가군 제품의 평균단가에 월령별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2015 본 조사 결과, 2015 5월 KICCE 육아물가조사 결과

-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단가에 따라 예산규모에 차이가 남. 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최소 568 ~ 최대 1,061억원로 산출됨.
- 본 사업의 시범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2015. 10-12)의 소요예산을 산정한 결과, 최저생계비 100% 이하까지 0세아를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3개월에 약 113억원 소요가 예상되므로, 이들을 시범사업의 적정 대상규모로 하여, 기저귀를 우선 지원하여 본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함.

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설정의 중요성

- 경제적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의 프레임에서 확장하여,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과정, 프로그램, 즉 비용지원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보강한 통합지원서비스로 연계함(예: 미국의 Headstart, 영국의 Sure start).
- 기존의 지자체 지원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지자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운영 모델을 꾸림.

□ 사업대상의 선정과 지원 수준 - 단계적 확대 방안

- 사업의 효과성 체감은 지원 수혜율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 따라서 저

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지원체계내에서도 취약환경의 범주에 들어와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의 과정과 최종 판정에 포괄성과 접근성을 제고함. 즉 건강보험 소득수준 + 취약유형의 선정기준을 마련함. 기존 사회복지지원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맞춤형급여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대상 등 기존 사업 대상자를 모두 포괄하고, 취약가족유형(한부모, 조손, 청소년, 장애부모 등)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반영함.

- 매월 발생하는 바우처 구매권에 대해, 사용액을 누적하여 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경우 구매대행 및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민센터/보건소와 연계함.
- 특정시점 부모교육과 육아상담 바우처 발생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 등 기존의 영유아가구/영유아 대상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며, 모 부재분유지원 대상자의 경우 육아멘토링 및 공동체 네트워크를 안내함
- 사업수혜율 제고 및 홍보 강화, 교육 제공 등에서 나아가, 임신·출산 시기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해 조기 개입하여 본 사업의 지원대상을 신청주의가 아닌 해당 대상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함. 즉 출생 시점, 병원과 지역주민센터의 출생신고, 보건소/소아과 예방접종 등 출산 직후 생애 초기의 발달월령별 주요 시점과 지원정책의 접촉점에서 0세아의 지원계층의 모수를 파악하여 신청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사업대상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가동함.
- 현금 지원의 성격을 따므로, 기저귀가 불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분유 구매로 일부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이 경과하여 종료되더라도,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와의 연계와 네트워크는 지속되어 육아 지원체계내에 머물도록 함. 육아지원 수혜에 대한 책무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 모델을 가동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된 육아지원은,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대한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관련 예산이 2014년 기준 연간 약 15조(14조 8,600여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는 OECD 영유아 재정 지출 권고 기준인 GDP의 1%를 달성한 것으로, 최근 5년 가파르게 상승한 육아 지원 분야의 투자와 예산을 반영한 결과이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가구) 대상 육아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대한 보육료·교육비 지원 외에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체 지원으로 양육수당이 있으며, 그 밖에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의 지정(분유, 기저귀, 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가족유형을 고려한 한부모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조손, 장애(아)가족 지원 등이 있다. 2015년에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 가구 대상(부부합산 소득 연간 4천만원이하) 양육지원의 방식과 내용이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무상 보육·교육의 설계 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유아가구 지원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형평성과 분배효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비 부담을 고려했을 때,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과 가족유형별 지원만으로는 소득분배와 출발선 평등의 육아지원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최윤경, 2013; 한경님, 2010). 3-5세 누리과정과 영아무상보육 등 생애초기 육아지원의 확대가 영유아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각 계층의 필요도의 차이를 고려한 양육 지원체계는 미흡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차등지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계층 관점의 요구가 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와 미래인적자원의 개발, 그리고 영유아에게 건강한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쳐 누적될 수 있는

부정적 발달결과를 중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다(예: 미국의 Early Head Start 및 WIC, Food Stamp 프로그램, 영국의 Sure Start 및 Healthy Start; Heckman, 2008; NICHD, 2002). 영유아기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정책과제이나, 새로운 육아지원의 실행은 여전히 많은 논의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필요로 한다.

본 사업은 저소득 영아가구를 대상으로 육아필수재에 해당하는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차차상위 저소득층에 속하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0세아 가구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의 품목에 대한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영아가구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덜고 아이낳기 좋은세상의 조성”을 사업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저소득 영아가구 대상 지원의 내용과 방식에서 사각지대 없이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방향과 상대적 저소득층의 개념이 적용된 설계이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예비타당도 검토가 완료되어(한성민 외, 2014), 2015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육아지원의 확대가 지속된 시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육아 지원의 착수가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는데 최적인지 그 정책적 정합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영영아(만0세) 대상 육아필수재 품목 지원을 통해 보편적 육아지원정책의 틀에서 부족했던 육아 지원의 내용과 방식, 수혜율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기저귀·조제분유 현물 지원이 대상 가구와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육비 경감과 부담 완화의 효과를 갖는지 실증데이터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대상 가구의 수혜도와 체감만족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원 사업의 성격과 대상의 선정 및 규모 파악, 그리고 지원 내용과 전달체계의 구성에 관해 검토하여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영유아가구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그리고 저소득 영아가구 지원 사업으로서의 적정성(타당도)이 검토되어 향후 육아품목 지원 정책으로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과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지원 사업과 정책 현황 파악을 통하여, 국내외 관련 사업의 내용과 범위 및 특성을 고찰하고 중복성과 연계성을 검토한다.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지원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국내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육아비 지출과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양육 부담의 실체가 어떠한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의 수혜가 양육부담 완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저소득 영아가구 지원의 방향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육아 품목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 이용 및 비용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 영아가구의 양육부담과 지원수혜가 미치는 양육부담 완화의 정도와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저소득 영아가구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설계를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 대상을 규정하고 그 규모를 파악한다. 구체적 지원 내용과 단가, 사업수행의 전달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사업실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예산소요를 추정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 영아 가구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넷째, 저소득 영아가구의 육아지원에 수요와 의견을 조사하여, 육아지원정책의 설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대된 저소득층 기준에 따른 대상 선정과 선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및 (안)별 실효성을 검토하고, 타 저소득층 및 영유아가구 대상 지원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검토한다. 또한 현행 보편적 육아지원체계 내 선별적 현물지원체계 보강의 연계와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3. 연구방법

상기한 연구내용의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가.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국내의 육아지원 사업과 정책에 대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데이터 정리 및 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 현황과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기존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소득계층별 양육비용과 구매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현물 지원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설문조사

저소득 영유아가구 600사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현재 자녀 양육관련 지출 및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원설계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였다.

〈표 1-3-1〉 조사 설계

| 대상 | 자녀연령 | 가구소득 | | 첫째아 기준 | 모든 자녀 기준 |
|-------------------|------|----------|-------------|-----------|-------------|
| | | 199만원 이하 | 200~250만원이하 | | |
| 영유아 부모 (주 양육자) | 만 0세 | 75 | 75 | 150 | (187) |
| | 만 1세 | 38 | 37 | 75 | (110) |
| | 만 2세 | 37 | 38 | 75 | (110) |
| | 만 3세 | 50 | 50 | 100 | (128) |
| | 만 4세 | 50 | 50 | 100 | (119) |
| | 만 5세 | 50 | 50 | 100 | (128) |
| 총 계 | | - | - | - 600 | - |

주: 전체 응답자 특성 표 참조. 61p.

〈표 1-3-2〉 조사 내용

| 구분 | 문항내용 |
|-------------------------|--|
| 주 양육자 특성 | -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지역규모 등 |
| 가구 특성 |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여부 |
| | -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건강보험료 |
| | - 가구 소득 및 지출, 맞벌이 여부, 모 근로소득 |
| | - 가족유형, 자녀 수/연령 |
| 양육비 지출 및 수혜 현황 | - 월 평균 가계지출, 양육비 부담, 자녀연령별 양육비 - 기초생활급여 등,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지원 및 수혜 |
| 기저귀·조제분유 이용 및 지원에 대한 의견 | - 구입처 - 기저귀/조제분유 월평균 지출금액 및 사용량, 브랜드/용량 등 상세내역, 가격체감, 선호품목, 희망 전달체계 |

| 구분 | 문항내용 |
|--------------|---------------------------------------|
| 육아지원 수요 및 의견 | - 천 기저귀/모유수유 경험 여부 및 의견 |
|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필요성, 선호하는 지원방식, 효과 |
| | -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
| | - 영아 양육경험 - 가장 많이/또는 적게 지원되는 부분 |
| | - 육아지원 비용의 사용처 |
| 기타 | - 육아필수재 지원의 필요성, 예상효과 등 의견 조사 |
| | - 육아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 육아지원정책의 우선 순위 |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영아부모 심층면담

사업대상의 선정과 규모의 파악, 효율적인 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지원대상자 및 관련 전문가, 실무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4회 실시하였다. 또한 영아 및 0세아 부모를 대상으로 총 2회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사업추진과 연구방향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위해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마. 국외 출장

주요 선진국의 영아기 현물지원 운영 실태 및 동향 파악을 위해 국외 출장을 실시하였다(기간: 2015. 6. 16~18). 일본 홋카이도 미카사 시청 및 삿포로 지역을 방문하여 지자체 현물 지원사업의 운영방식과 실행체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후지여자대학의 전문가를 면담하여 관련 사업의 지역사회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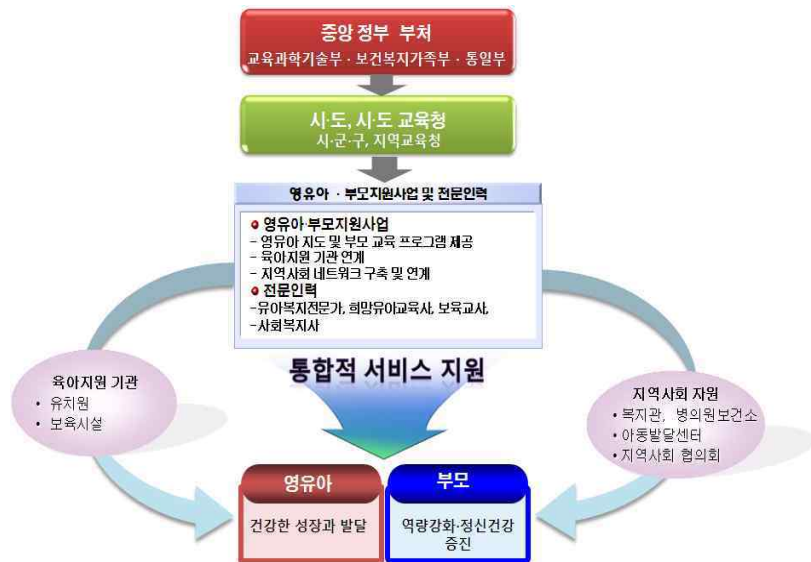
4. 연구동향

관련연구는 크게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지출을 조사한 양육비용 연구와 관련 육아지원 사업의 특징과 효과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영유아가구 지원 관련 선행연구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장명림 외, 2009)이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과 내용, 사업주체의 연계를 체계성 있게 마련하여, 취약계층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시범 적용하였다.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전인 발달 지원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부모의 정신건강, 부모 및 영유아의 양육 역량 강화 지원을 함께 제안한 통합 프로그램의 형태이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연수과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 밖에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이윤진 외, 2014)과 주민 자치 방식의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유해미 외, 2013),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육아용품 공유 및 대여 사업(김미정 외, 2014) 연구가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육아지원이 지역사회 단위의 사업모델의 개발과 사업주체간 연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있다.



자료: 장명림·이윤진·이정림·이미화·전혜정·민현숙·박수연·이세원·김주연·정주희·송운정(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1-4-1]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둘째,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방안 연구(이삼식 외, 2013)로 본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생후 12개월까지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을 사업대상, 지원품목과 지원 수준, 소요재정 및 부담주체, 전달체계 등으로 제안하였다. 소득계층별 출산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소득효과모형을 통해 소득효과가 높은 가구소득 1~2분위까지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영아 양육가구의 욕구, 기저귀·분유 지원방향을 물품 지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저귀·분유 각각에 대한 소비패턴과 지출비용을 파악하여 지원수준을 제안하고 사업대상과 지원수준을 고려한 방안별로 소요재정을 추정, 주체 간 부담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저귀·분유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셋째, 예비타당성 연구(한성민 외, 2014)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정책 분석(상위계획과의 연관성/중복성, 사업목표 및 사업대상, 전달체계의 적절성)과 비용 효과의 AHP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의 예비타당도 평점 0.512를 산출, 사업 미시행 평점인 0.448보다 높아 사업시행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0.5를 갖 넘긴 수준으로 사업추진에 약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정책분석 결과, 상위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간접적으로 연계성이 확보되며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그리고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양육비 경감의 사업목표와 사업대상, 사업방식이 명확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용효과분석 결과에서는 12개월간 매월 기저귀 비용 75,000원, 전체 5% 대상 조제분유 비용 140,000원을 지원할 경우, 가계소득 5% 증가와 약 0.77%의 출산자녀수 증가로 정책효과를 예측한 바 있다.

넷째,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신·수유부의 건강과 영양 지원 방안(이정림 외, 2014) 연구에서, 영유아 지원의 대표적인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임신부 및 수유부를 위한 건강정책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여, 저소득층 영유아, 임신부·수유부의 건강 및 영양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과, 지자체 보건소에서 사업별 수혜자격 기준의 단계별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주체별 역할, 사업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1-4-1〉 선행연구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안)

| 분야 | 도출방안 | 최종안 |
|----------|--|--|
| 사업 대상 | ①최저생계비 160% ②최저생계비 120% ~ 160% ③최저생계비 120%까지 | ①최저생계비 160% |
| 지원 물품 | ①물품방안1 -의학적 이유로 모유수유 불가능 시에만 기저귀+분유 -나머지는 기저귀만(천기저귀 관련 지원) ②물품방안2 -의학적 이유로 모유수유 불가능 시에만 기저귀+분유 -나머지는 기저귀만(천기저귀 관련 미지원) ③물품방안3 -의학적 이유로 모유수유 불가능 시에만 기저귀+분유 -모유량 부족 및 위업 시 기저귀 또는 분유 선택 -나머지는 기저귀만(천기저귀 관련 지원) | ①물품방안1 -의학적 이유로 모유수유 불가능 시에만 기저귀+분유 -나머지는 기저귀만(천기저귀 관련 지원) |
| 지원 수준 | ①공급관점(온라인쇼핑몰 최저가격 평균) ②공급관점(다양한 판매처별 가격 평균) ③수요관점(실태조사결과) | ①공급관점(온라인쇼핑몰 최저가격 평균) |
| 재정 분담 | 국비:지방비=50:50 | 국비:지방비=50:50 |
| 부모 교육 제공 | ①사업수행기관 ②전문교육기관(의뢰기관 포함) ③온라인(보건복지부) | ①+② 절충 (인정교육기관의 교육이수증 제출) |
| 전달 체계 | ①시군구(읍면동) 주관+카드사 바우처 운영 ②시군구(읍면동) 주관+정보원 바우처 운영 ③보건소 주관+카드사 바우처 운영 ④보건소 주관+정보원 바우처 운영 | ①시군구(읍면동) 주관+카드사 바우처 운영 |

자료: 이삼식·이현주·최효진·이지혜·기재량·임지영·유재언·박지연·이소영·송리라(2013). 157p

다섯째, 해외연구는 양육비용 연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미국 농림부에서 매년 양육비 조사가 이루어져 공표되고 있다. 독일 통계청(2014)은 과거 5년간 양육비가 한 자녀 가정은 6.4%, 두 자녀 가정은 8.5%, 세 자녀 이상은 7.0% 각각 증가했다고 보고, 사교육이 거의 없고 대학도 무상교육인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였다. 각 가정의 양육비 통계를 살펴보면, 한 자녀 가정이 월평균 584유로(약80만 5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두 자녀가정은 515유로(70만 8천원), 세 자녀 가정은 484유로(66만 5천원)으로 아이가 많을수록 평균 지출비용은 적다고 밝혔다. 이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장난감이나 옷을 물려받아 사용하기 때문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의료보험료를 비롯한 일부 개인지출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양육비는 더 많을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한 부모 가정이 체감하는 자녀양육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연합뉴스 보도자료; 최윤경 외, 2015 미발간 재인용).

여섯째, 국내 양육비에 관한 연구로, 자녀 육아와 관련하여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예체능 및 주요과목 사교육비(40.6%)’와 어린이집/도우미 비용(32.0%)로 나타났으며, 취학전 영유아자녀의 적절한 양육비용은 월평균 86만 8천원, 육아시간은 1일 평균 3.68시간이 적절하다고 보고되었다(고승연, 2014). 연구자는 직간접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해 과대평가되어있는 출산 및 양육 비용에 대한 인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고승연, 2014).

일곱째, 미국의 대표적인 저소득 가구 건강·영양 증진 및 현물 지원인 WIC(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이 사업을 통해 영유아의 영양부족을 예방하고, 출생시 체중이 증가되었으며, 조산 및 영아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Whaley, S. E., Koleilat, M., Whaley, M., Gomez, J., Meehan, K., & Saluja, K., 2012). 보충식품 지급을 통한 여성/아동의 건강 유지 외에도 모유수유 장려가 WIC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 변화된 정책이 여성의 모유수유를 증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의 완화와 함께, 사업 다각화의 과정을 거쳐 건강한 양육환경 및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모유수유 장려도 함께 고안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OECE 가족 자료에 의하면(OECD Family Database, 2015 참조), 한국의 2006년 기준 모유수유 비율이 자녀 생후 3개월까지 49.6%, 4개월까지 43.4%, 6개월까지 26.8%로, OECD 국가 평균 (각각 47.4%, 38.9%, 23.4%)을 다소 상회하

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2015년 모유수유 경험 비율을 고려하여,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 설계에서 모유수유 권장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질병, 모부재 등에 의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분유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다양한 육아지원 방식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 한국의 경우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에 유의한 효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와 의견이 다수이다. 한편 Laroque and Salanie(2014)는 매월 150유로의 양육보조금 지원이 출산율 상승에 유의한 효과를 낳았으며, 특히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그러하다고 하였다(김은설 외, 2014 재인용).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대 양육비용의 증가가 출산률에 제한적인 음(-)의 효과를 갖는데, 이는 대졸 미만의 저학력층에서 뚜렷하고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김은설·문성혁 외, 2014). 즉 경제적 부담 완화의 양육지원 설계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저소득,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출산률 제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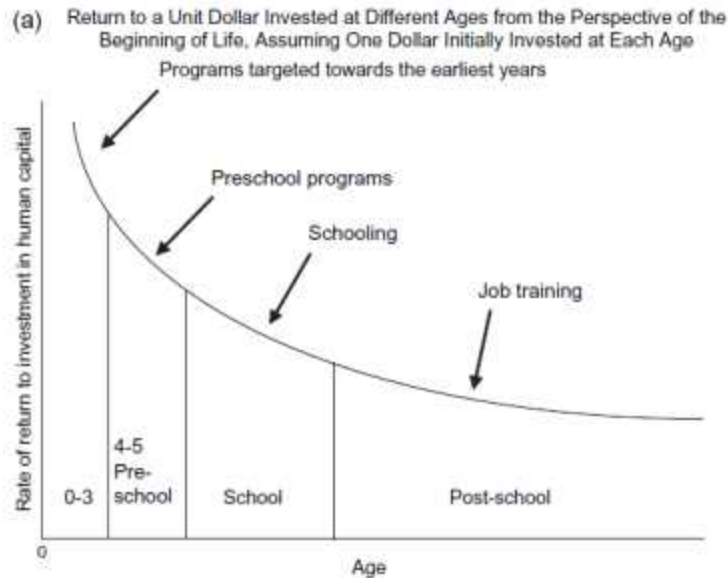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이 전체적으로는 출산의사 형성에 유의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그러나 그 영향력이 저소득층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큼을 보고한 바 있다(홍석철·김정호, 2012; 유해미, 외, 2011, 김은설 외, 2014 재인용).

한편, 서문희·이혜민(2014) 연구에서도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영유아가구의 기관 이용 비용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낳았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체감만족도는 2012년 이후 현행 보편적 지원체계보다 2009년 이전 저소득층 위주 선별지원 방식에서 더 컸으며, 보육료 지원의 비용부담 감소 효과도 그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외연구의 경우, 영유아기에 대한 정부의 생애초기 투자가 이후의 사회복지 비용 감소 및 건강한 성장발달의 긍정적 누적효과를 낳는다고 보고하고 있다(Heckman, 2008; Havnes, T. et al, 2011; NICHD, 2002; 최윤경 외, 2014). Heckman(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 청소년 임신, 건강 저해환경 등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의 수준이 낮은 데에 기인한다.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기술과 능력의 격차는 어린 아이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성과(건강, 범죄)의 중요

한 결정요인은 어린 아동의 가정환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 많은 아동들은 불우한 가정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있으며, 실험적 연구결과는 가정환경지원의 부족이 아동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실험적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역동적으로 보완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학습에 대한 이득이 적을 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학습에 대한 이득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림 1-4-2] 와 같이 사회가 충분히 이른 시기에 개입하면, 불우한 아동의 건강과 인지적 또는 비인지적 능력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사회적으로 불우한 아동에 대한 초기개입이 진학률을 높이고, 범죄율은 낮추고, 노동생산성은 높이고, 십대임신율은 낮추는 등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인직업훈련, 재활프로그램, 성인문맹프로그램, 등록금보조, 경찰비용 지출과 같은 중후기개입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불평등성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수립에 있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기술력을 생산하고 사회 불평등성을 줄이는 위해서는 생애초기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FIGURE 18
Returns to a Unit Dollar Invested



자료: Heckman(2008). Schools, Skills and synapses. Economic inquiry, 46(3), 289-324.

[그림 1-4-2] 연령에 따른 단위가격의 인적자본 투자수익성

최근 Havnes, T.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정책적 보조를 받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가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육아지원 방식의 효과성에 가구의 소득수준/학력 등의 계층 변인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하겠다.

II. 국내외 저소득 영유아 지원 사업 고찰

1. 국내 저소득 영유아 지원 사업 및 정책 현황

본 절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육아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 수행 주체를 담당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저소득 영유아가구 지원 체계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지원 정책은 '아동복지사업'과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육아지원사업 2개의 정책 틀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공공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영양·의료 지원사업'과 발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특정 대상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중재하는 사업,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의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에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취약계층 내 가족유형과 대상특성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대표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 아이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양육지원금 보조와 1회성 출산 축하 및 품목 지원이 있으며, 대표적인 정부 육아지원정책으로 0~5세 보육료·교육비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자녀장려금 및 양육보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 간에는 개념적으로 중복성의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과 내용, 지원 수혜율(=수급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중복성과 연계성이 어느정도 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 보건복지부

1) 영양플러스 사업³⁾

영양플러스 사업은 미국의 WIC(The Special Supplement Nutrition Program

3)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를 토대로 함.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을 벤치마킹하여 2008년에 도입한 국가영양 지원제도로(이삼식 외, 2013: 37) '국민영양관리법' 제 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를 근거로 한다. 이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가진 국민에 대해 그 위험인자를 감소 또는 제거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공보건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세미만 영유아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로,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발견된 대상자에게는 영양교육, 상담 실시 및 보충식품(6종)을 제공한다. 최저생계비 120~200% 미만 대상자는 서비스 비용의 10%를 자부담한다.

영양위험요인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검사(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신체계측(신장, 체중),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의 평가방법을 사용하며, 동 사업 대상자는 영아는 생후 만12개월까지, 유아는 생후 만1세~6세 미만(72개월 미만), 임신부는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는 출산 후 12개월까지를 자격기간으로 하며, 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1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보충식품' 패키지는 대상자에 따라 영아용(0~5개월, 6~12개월), 유아용(만1~6세미만), 임신부·혼합수유부용, 출산부용, 완전모유수유부용 등 6가지로 구되며, 영아용 식품패키지 2종에는 '조제유'가 포함되어 있다.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⁴⁾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로서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4) 「보건복지부(2015a). 2015년도 모자보건사업안내」를 토대로 함.

3)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난청조기진단사업)⁵⁾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가구,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 가구 신생아를 지원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 AOAE 10,000원, 자동청성뇌간 반응검사: AABR 27,000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ABR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⁶⁾

최저생계비 200% 이내 저소득계층의 만 3-6세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 방문하여 신청 후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친다.

5) 암환자의료비 지원⁷⁾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성인,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중 소아암환자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암환자(차상위계층 포함)와 건강보험가입자인 소아암환자 중 환아 가구의 소득재산조사에서 소득기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 이하, 재산기준이 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 재산의 최고 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지원 대상에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우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외한다.

소아암환자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 전체 암종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원, 백혈병 이외는 연간 최대 2천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가 보건소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서비스 상담 및 신청을 하여

5) 「보건복지부(2015a). 2015년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토대로 함.

6) 「보건복지부(2015a). 2015년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토대로 함.

7) 「보건복지부(2015b). 2015년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를 토대로 함.

이용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보건소의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건소가 서비스를 결정, 제공한다.

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인 자로서⁸⁾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는 자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된다.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의 형태를 취하며, 이 서비스 이용권으로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를 이송한다.

7) 언어발달지원사업⁹⁾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의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8) 사업이 최초 도입·시행된 '06년 최저생계비 130% 이하 둘째아 출산 시 지원 대상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07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08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09~'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15년에는 65% 이하로 확대됨.

9)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안내'를 토대로 함.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별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는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가 제공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형으로 구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다형은 총 22만원을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차상위계층(가형) 2만원 본인부담, 차상위 초과~전국가구 월평균 50% 이하(나형) 4만원 본인부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초과 100% 이하(라형) 6만원 본인부담으로 바우처지원액이 차등화되어 있다.

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¹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사업 기획/집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의 사회서비스 재정 투자 사업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노인·장애인 가구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19개 중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영유아 발달 초기에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비스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2세~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장애아동, 부모중 장애인이 있는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아동은 1등급 대상이며, 그 외는 2등급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에 차등을 두어 1등급은 1인당 월 25천원, 2등급은 1인당 월 15천원이 지원되며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

10)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토대로 함.

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비스는 10개월간 제공되며, 1등급은 재신청 판정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중 1회 연장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 가구에 제공인력을 주 1회 이상 파견하여 책읽어주기, 독후활동, 도서지급(월 4권 이상), 부모 대상 독서 지도 및 상담(월 1회 이상)을 제공한다.

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로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를 제공인력 1인당 5명 이하 소그룹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6개월간 48회 제공되며, 기본 서비스 횟수는 주 2회(회당 60분)임. 이외 부모 교육 및 상담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한다.

서비스 가격은 월 20만원으로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을 10%(2만원)만 부담하며, 평균소득 50%초과~100% 이하 가정은 서비스 가격의 20%(4만원)을 부담한다.

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는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이다.

전국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대체활동,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표준 프로세스에 준거하여 제공하되 이용자의 욕구를 판단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를 조정한다. 서비스는 12개월간 제공된다.

서비스 가격은 월 20만원으로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을 10%(2만원)만 부담하며, 평균소득 50%초과~100% 이하 가정은 서비스 가격의 20%(4만원)을 부담한다.

라)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는 부모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능력 향상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이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정의 만3~12세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12개월간 월 12만원 내외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본인 부담 1.2만원). 서비스는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서비스, 학습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로 구성되며 만 3세~4세는 회당 30분, 만 5세 이상은 회당 50분씩 주 3회 제공한다.

〈표 II-1-1〉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 요약

| 사업명 |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
|--------|--|---|---|--|
| 대상 |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 만 2세~취학 전 아동 | - 차상위~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만 0~6세 영유아 | - 차상위~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인터넷 중독 선별 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만 18세 이하 아동 |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정 - 만 3~12세 아동 |
| 서비스 내용 | - 아동과 부모 대상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서비스 - 이용자 가구에 제 공인력을 주1회 이상 파견하여 책 읽어주기, 독후활동, 도서지급(월 4권 이상), 부모 대상 독서 지도 및 상담(월 1회 이상)을 제공 |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 지역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를 제공인력 1인당 5명 이하 소그룹으로 제공 | - 인터넷 과다 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대체활동,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표준 프로세스에 준거하여 제공 | - 부모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해 언어능력 향상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을 지원. -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서비스, 학습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로 구성 |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재구성

9) 드림스타트사업(아동통합서비스 지원)¹¹⁾

이는 ‘아동복지법’ 제 37조(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 연령은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만 13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도 포함한다.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한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아동, 결손가정, 성폭력 피해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가 기본서비스로 제공되며, 사정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임산부에는 산전 및 산후검진,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에게는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총 8종의 프로그램이 필수로 지원된다. 부모에게는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을 지원하며, 이외 기타 서비스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이 이루어진다.

추진체계는 시·군·구가 설치한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로 서비스 상담 및 이용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며, 시·군·구청이 욕구조사를 통해 확정하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6년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보건소 20개소에서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16개 시·군·구에서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8년 사업 명이 ‘드림스타트’로 변경된 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2011년에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의 근거가 신설된 후, 전국적으로 사업지역이 확대되어 2014년에는 전국 219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보다 10개 지역이 추가된 229개 시·군·구로 사업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11)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를 토대로 함.

〈표 II-1-2〉 연도별 사업지역 현황자료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사업실시 시·군·구 수 | 16 | 32 | 75 | 101 | 131 | 181 | 211 | 219 | 229 (예정) |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P.212.

10)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는 영유아 대상의 지원 사업이 아닌 임신·출산부의 진료비 지원이나 ‘진료’라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지원 방식을 참고할 만하여 살펴보았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 동법 시행령 제 23조에 근거하며, 2008년 12월 도입되었다. 이는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구: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범위로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이다. 지정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제시해 결제하도록 한다. 최초 도입 당시 1회 사용 한도가 있었으나, 2013년 4월 1일부터 1일 사용한도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다¹²⁾.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에서 지원되는데, 대상과 지원방식, 이용기관 등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부를 대상으로 2015년 5월 1일 신청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부로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시스템으로 수진자의 자격 조회를 통해 지원된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동일하다(국민건강보험 급여보장실, 201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임신부 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부에 대한 지원도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전 소득계층의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동일한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비롯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정부의 여러 바우처 지원이 2015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국민건강보험 급여보장실, 2015).

12)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에서 인출(2015. 4.30)

11) 양육수당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284).

양육수당은 2009년 도입 당시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수준 차 상위 이하로 저소득층 가정양육 영아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었으나(서문희·최혜선, 2010: 25) 2013년 3월 만 5세 이하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가구소득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301).

지원 금액은 월령별로 차등화되어, 11개월 이하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4개월 미만은 10만원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감액된다. 현금으로 지급되어 아동 또는 부모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보건복지부, 2015: 284).

12)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으로서의 육아지원정책

만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첫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있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기존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부모대상 정부지원단가가 자녀 연령별로 책정되어, 유아(만3~5세)는 누리과정에 대해 월 22만원, 영아는 만0세 406,000원, 만1세 357,000원, 만2세 295,000원이 지급된다.

그 밖에,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료 지원이 별도로 설계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둘째,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발급 아동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장애아 진단·평가에 근거한다. 지원내용으로, 만12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정부지원 단가의 100%) 지원하고, 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에게 교육비를 전액을 지원한다¹³⁾.

13)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보육료교육비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비용 지원의 보편적인 확대로 흡수되었다. 다문화가정 보육·교육비 지원 2011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아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교육비를 전액(정부지원 연령별 단가의 100%)을 지원한 바 있다.

셋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취업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서비스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이다. 생후 3~24개월까지의 영아이며 월 200~2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시간이 변경가능하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동행,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를 제공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나. 여성가족부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¹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조(복지급여의 내용)에 근거하여,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을 포함한다. 지원내용으로, 만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을 지급하며, 추가적으로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인 만 5세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2)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가족지원서비스)를 근거법령으로 여성가족부가 총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14)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서 인출.

이는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때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원기관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5: 275).

시·도별로 1개(서울 2개)의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상담),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을 추진하며, '지원 대상'은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제한되지는 않는다(여성가족부, 2015: 276).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 중 '출산 및 양육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로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양육지원'의 지원 내용이 병원비와 양육용품(분유, 기저귀, 의류,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의료급여와 해산급여로 병원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부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의무자 및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여성가족부, 2015: 278; 이삼식 외, 2013: 41) 저소득층 지원 성격이 있다.

지원액은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1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 중 양육용품 지원은 1회 1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급 방법은 병원비는 의료기관에, 양육용품은 구입 대상처에 계좌입금하는 방식이다(여성가족부, 2015: 278).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조(복지급여의 내용)에 근거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최장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부모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그리고 자

립지원촉진수당으로 만 24개월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시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위기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역량 강화 도모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이 있다. 전국 31개소의 사업수행기관에서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위기가족 지원서비스(가족보듬),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조손가족 희망사다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¹⁵⁾

4)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 육아용품 지원사업

여성가족부가 육아용품업체 (주)매일유업·제로투세븐과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에 육아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이 저소득 다문화가족과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협력하게 되며, 분유와 출산에 필요한 물품 등을 향후 3년간 총 9억원 상당 지원하게 된다.

분유, 출산축하키트(영양제, 영아의류, 베이비로션 등)를 제공하고, 신생아 육아방법 교육, 모유성분 분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매일유업은 물품 지원 뿐 아니라 다문화·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수유 및 이유식 상담 등 육아 정보를 제공한다. 그 밖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출범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교육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¹⁶⁾

다. 국세청: 자녀장려금¹⁷⁾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1)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15)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_index_04.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

16) <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

17) 국세청 보도자료(2015. 4. 28).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자녀장려금 첫 지급을 위해 253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 안내” 요약·발췌함.

3) 주택 요건, 4) 재산 요건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첫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둘째, 부부합산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 전년도 6. 1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채 소유하여야 한다.

넷째, 재산 요건으로 전년도 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¹⁸⁾.

한편, 이러한 4가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4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신청제외자에 해당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산식에 따라 결정되며 산식은 아래 <표 II-1-3>, <표 II-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1-3> 홑벌이 가족가구의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2,100만원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15. 4.28). p.19

<표 II-1-4> 맞벌이 가족가구의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2,500만원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15. 4.28). p.19

라. 지자체

첫째, 경기 하남시와 군포시에서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모유수유 용품(전동

18)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등 1개월 대여)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공동육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각 지자체 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육아용품 대여 및 장난감 나눔터 운영(김미정 외, 2014, 12p)과도 연관되어 있다.

둘째, 부산 동구에서는 출산축하 선물 지원으로 셋째아 출산부터 산모에게 미역과 기저귀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진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월 10~1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가구는 차액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사업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정밀평가 필요' 판정을 받은 자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하위 30%이하인 자(지역가입자 55,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69,000원 이하)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비용으로 연간 1인당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는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전남 해남군의 출산장려 지원으로 출산 직후 산모에게 미역과 쇠고기, 아기 내의, 목욕용품 등을 담은 '아기사랑택배'를 배송하며, 부모가 원하는 경우 아기이름 작명가와 연결시켜 주었다. 출산시 1회성 축하금 30만원 외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매월 양육보조금 15만원을 자녀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전달체계와 행정체계 면에서도, 군청,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각기 따로 맡아 진행하던 저출산 관련 업무를 보건소 중심으로 일원화되도록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내에 출산장려팀을 만들었다. 이로써 사업 효과면에서 2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2013년 2.47명, 2014년 2.34명). 해남군의 경우 다문화가족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양육지원 내용과 지원수준을 맞춤형으로 구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혹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이 있으나, 대체로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지자체의 현물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저출산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II-1-5 참조). 총 67개 지자체에서 약 4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별로 출산용품 및 육아용품 지급과 출산축하금 및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약 35개

지자체에서 기저귀를 포함하여 출산용품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예산 40억5천만원 대비 2015년 약 8억 증가하였다. 저출산대책의 틀 안에서 지자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1-5〉 2015 저출산기본계획 지자체별 현물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 지역 | 연번 | 세부 사업명 | 예산 | | 주요내용 |
|----|----|------------------------------------|-----------|-----------|--|
| | | | 14 (A) | 15 (B) | |
| 부산 | 1 | 출산가정 축하선물 지원 | 0 | 0 | • 셋째 자녀 이후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 선물 지원(기저귀, 미역) |
| | 2 | 출산산모 유착기 대여 | 0 | 0 | • 유착기 8대 보유 |
| | 3 | 산후 유착기 대여 | 0 | 0 | • 유착기 무료 대여 |
| | 4 | 산후 유착기 대여 | 0 | 0 | • 관내 출산산모에게 유착기 대여 |
| | 5 | 출산직원 축하 미역 지원 | 0 | 1 | • 출산여성공무원에게 미역 지원 |
| | 6 | 출산기념 축하미역 지원 | 1 | 2 | • 출생신고 시 축하 미역 지원 • 2013년 지원 실적: 863명 |
| | 7 | 산후조리비용 지원 | 470 | 670 |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50만원, 1회)+기장미역 |
| | 8 | 행복둥이 날개옷 출산축하선물 지원사업 | 0 | 0 | • 셋째이후 출산가정에 신생아 내의 지원 |
| | 9 | 임신출산용품 지원 | 6 | 6 | • 출산일 전후 1개월간 구입한 출산용품에 대해 금액한도 내(1인 최대 200천원) 사후 정산 |
| | 10 | 육아용품대여점 운영지원 | 3 | 3 | • 이동양육가정에 육아용품 대여 |
| | 11 | 이웃사랑 실천 출생아 지원 | 3 | 3 | • 서대신1동 출생아에 출산용품지원 |
| | 12 | 서삼아동 출산 축하 선물 지원 | 2 | 2 | • 서대신3동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지원 |
| | 13 | 출산가정 축하 선물 전달 | 1 | 1 | • 중무동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지원 |
| | 14 | 출산축하 아기용품지원 | 2 | 2 | • 셋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축하용품(1만원상당)지원 |
| | 15 |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용품 지원협력 업무협약 체결(화명1동) | 0 | 0 | • 관내 산부인과와 업무협약을 체결, 화명1동 거주 주민 중 셋째이후 자녀 출산가정 축하용품(5만원상당)지원 |
| | 16 | 임산부 직원 사무, 출산용품 지급 | 3 | 3 | • 출산·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한 여직원에게 임산부용 사무·출산용품 지급 |
| | 17 | 임신 출산용품 | 0 | 6 | • 임신직원 보호용품 지원, 출산축하 지원용품 |
| | 18 | 다문화가정자녀출산지원 | | | • 다문화가정 자녀 출산 시 출산용품지원, 아이 돌잔치 지원 등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 |
| | 19 | 다문화가정 행복만들기 사업 | 12 | 12 | • 다문화 가정출산 산모에게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증정: 40가구 |
| | 20 |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사업 | 0 | 1 | • 연산1동내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육아용품 3개월 무상 대여 |
| | 21 | 출산직원 축하 물품 지원 | 1 | 1 | • 출산 직원 1인당 5만원 상당의 물품 지급 |
| 대구 | 22 | 전동유착기 대여 및 | 1.0 | 1.0 | • 전동기 유착기 무료대여 |

| 지역 | 연번 | 세부 사업명 | 예산 | | 주요내용 |
|----|----|---------------------------|-----------|-----------|---|
| | | | 14 (A) | 15 (B) | |
| | | 모유수유 홍보 | | | • 대상: 관내 거주 수유부 |
| | 23 | 다자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출산축하선물 지급 | 7.5 | 7.5 | • 대상: 셋째아 이상 및 다문화 출산 가정 • 내용: 출산용품 지원 |
| | 24 | 직장인 산모등 유축기 대여사업 | 4.0 | 4.0 | • 관내 직장인 산모 및 장기입원 영유아를 둔 산모 유축기 대여 |
| 인천 | 25 | 출산용품 지원 | 473.0 | 576.0 | • 보건소등록 임신부 출산용품 지원: 19,200명 |
| | 26 | 출생신고자 출생축하물품 지원 | 10.0 | 10.0 | •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에게 출산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출산 축하물품 지원 |
| 대전 | 27 | 유축기 무료 대여 | 0.0 | 0.0 |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 보건소에 등록된 28주이상 임신부 |
| | 28 | 산모 및 영유아 유아용품 무료대여 | 18.0 | 14.0 | • 유축기,서적세트,장난감 무료대여 |
| | 29 | 임신직원 태아보호용품 지원(동구) | 2.0 | 2.0 | • 임신직원 태아보호용품 지원 |
| 울산 | 39 | 임신직원 태아보호용품 지원(북구) | 567.0 | 628.0 | • 임신 및 출산직원을 위한 용품 지원 |
| | 31 | 임신직원 태아보호용품 지원(울주군) | 4.0 | 4.0 | • 임신한 직원 전원(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태아보호용품 지원 |
| 세종 | 32 | 유축기 대여 | | 20 3.0 | • 유축기 대여 151명 |
| | 33 | 다문화가정건강관리사업 | 36.0 | 36.0 | • 다문화가정 출산육아용품 쿠폰(10만원) 지원 • 신생아기저귀 지원 등 •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축하기념품(7만원권 쿠폰) 지급 |
| 강원 | 34 | 임신 축하기념품 제공 | 12.0 | 12.0 | • 출산육아용품 및 산전검비지원 |
| | 35 | 출산육아용품 및 산전검비지원 | 42.0 | 42.0 |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임신축하물품 지원 |
| | 36 | 임산부 등록관리 | 16.0 | 18.0 |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유축기 대여, 모유수유 실태조사 |
| | 37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6.0 | 4.0 |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영유아, 임신부) |
| 충북 | 38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사업 | - | - | • 출산자(배우자 포함) 지원(상품권, 미역 선택) |
| | 39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출산자지원) | 0.4 | 0.4 | • 특수분유 및 저단백식이 환아관리: 5명 |
| | 40 | 선천성대사이상환아 특수분유지원 | 20 | 20 | • 건강한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
| 충남 | 41 | 모유수유사업 지원 | 17 | 32 |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모유수유관련 책자 및 홍보물 제작 배부 |
| | 42 | 유아 보호형 장구(카시트) 대여 | 9 | 5 | • 36개월 미만 유아가정 보호형 카시트 대여(15대) |

| 지역 | 연번 | 세부 사업명 | 예산 | | 주요내용 |
|----|----|---------------------|-----------|-----------|--|
| | | | 14 (A) | 15 (B) | |
| | 43 | 3째아 이상 출산축하용품 지원 | 5 | 25 | • 3째아 이상 출산축하용품 지원 |
| | 44 |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 630 | 1,250 |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 | 45 | 출산 축하용품 지급 | 30 | 30 | •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
| | 46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 14 | 14 | • 출산선물지급 및 임신부건강교실 운영 |
| | 47 | 저소득층 유모차 지원사업 | | 60 | • 저소득층 유모차 지원(200명) |
| | 48 |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 | 75 | 75 | • 영유아 300명 차량보조시트 지원 |
| 전북 | 49 | 마더박스(육아용품) 지원(신규) | | 30 | • 보건소 등록관리 임신부 육아용품 지원 |
| | 50 | 고창군 출생아 기념품 지급 | 11 | 11 | • 관내 출생아에게 출산기념품 지급 (300명) |
| | 51 | 임산부 관리 신생아 물품지급 | 17 | 18 | • 임신부 출산용품(마더박스) 지원 |
| | 52 | 탄생축하기념 기저귀 지급 | 21 | 21 | • 나주시 출생가구 기저귀 1박스 지급: 700명 |
| | 53 | 전동식 유축기 대여 | - | 3 | • 유축기 대여 |
| | 54 | 다문화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1 | 1 | • 다문화 가정 출산축하용품(내의)지원 50명 |
| | 55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사업 | 19 | 19 | • 신생아 출산용품(체온계 외 2종): 190명 |
| | 56 | 임부 산전·산후 건강관리용품 지원 | 15 | 15 | • 산전, 산후 건강관리용품 지원 150명 |
| 전남 | 57 | 산모 아기사랑 택배사업 | 30 | 30 | • 출산가정 산후조리식품 제공 |
| | 58 |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지원 | 55 | 45 | • 신생아 출생용품 지원 |
| | 59 | 출산축하용품 지원 | 21 | 20 | • 보건소 등록 임신부 출산용품지원 |
| | 60 | 자녀탄생 축하카드 및 축하용품 지급 | 16 | 16 | • 축하카드 발송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
| | 61 | 출산장려 지원사업 | 802 | 748 |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생아건강 보험지원 • 임신부교실 운영 • 출산 축하물품 지원 |
| 경북 | 62 |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 246 | 156 | • 출산육아용품 구입 및 대여에 따른 운영비 |
| | 63 | 유축기 대여 | 8.0 | 8.0 | • 유축기 대여 |
| 경남 | 64 | 둘째아 이상 출산용품 지급 | 15.0 | 18.0 | • 둘째아 이상 출산용품 지급 600명 • 지원품목: 출산용품세트3종(삼푸&바스, 베이비오일, 로션), 배넷 저고리, 턱받이 등 |
| | 65 | 출산축하 용품 지원 | 25 | 25 | • 출산축하용품 및 홍보물 |

| 지역 | 연번 | 세부 사업명 | 예산 | | 주요내용 |
|----|----|---------------------|-----------|-----------|--|
| | | | 14 (A) | 15 (B) | |
| | 66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출산 격려 사업 | 3 | 2 | • 여성결혼이민자 중 출산가정 축하 및 신생아용품전달, 육아양육지도 |
| 제주 | 67 |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 운영 | 236.0 | 80.0 | •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 4개소운영 •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 운영 |
| 계 | | 총 67개 지자체 | 4,045 | 4,851 | • 35개 지자체에서 출산용품 지급 |

자료: 전국 시도 및 교육청(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마. 민간 사회복지단체

한편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지원사업으로 대표적으로 「동방사회복지회」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부모지원으로 미혼양육모의 경제적인 자립과 사회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기저귀/의류 현물과 부모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¹⁹⁾

2. 사업간 중복성 및 연계성 분석

가. 영유아 지원 사업의 소득계층·영유아연령별 분석

앞서 1장에서 정리한 국내 저소득 아동 지원 대상 사업을 미취학 아동에 한정하여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지원 해당 사업을 정리하였다.

〈표 II-2-1〉에 따르면, 우선 연령별로는 만 0세아(신생아 대상 사업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가짓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만 3세, 만 4~5세, 만 1~2세, 6세 순으로 나타난다. 동일 연령 기준으로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해당사업의 종류, 즉 가짓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우선 0세의 경우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이 추가되며, 엄밀하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산모에 대한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도 추가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의 가짓수가 가장 많

19) <http://www.eastern.or.kr/main/publish/view.jsp?menuID=001002>

다.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가짓수가 점차 줄어들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은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셋째아 이상에게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사업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 및 의료 지원 사업, 발달 지원 사업, 양육비 등 비용 지원 사업으로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0세의 경우 건강 및 의료 관련 지원 사업의 집중도가 높다. 즉, 0세의 경우 총 6개에 해당하는 건강 및 의료(비)지원 사업 중 만 3세 이상부터 지원되는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을 제외한 5개 사업이 최저생계비 200%(=전국가구 평균 소득 65%)까지 지원된다.

만 1~6세(취학전)까지는 건강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중 2~3개의 사업이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된다.

언어발달, 영유아 발달,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은 최저 연령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만 0세부터 사업 대상에 포함되나, 언어 발달, 인터넷 과몰입 치유 등의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영아부터 사업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영아에게는 실질적으로 건강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양육비 등 비용 지원 사업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양육비 등 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살펴보면, 전연령·전소득 계층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양육수당(⑩)과 보육·교육비 지원(⑪)을 제외하면 만 3세 이하 아동 중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의 자녀는 연간 '출산 양육지원'으로 병원비와 양육용품 70만원을 지원받으며 부모의 연령²⁰⁾과 소득계층에 따라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10~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출산양육지원(병원비, 자녀양육생필품 등)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된다.

만 4세~취학전 아동 중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의 자녀는 '출산 양육지원' 70만원을 제외하고 부모 연령과 소득계층에 따라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또는

20)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 만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추가적으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5세 이상이며 아동이 만5세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서는 한부모 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10~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대상은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 특정 취약 대상에 한정되며, 병원비와 양육용품을 연간 7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미혼 모부자에 대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제외하면, 소득계층도 최대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2015년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10만원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 75,000명, 이 중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2,400명에게 추가 아동 양육비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여성가족부, 2015. 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아동양육비는 2015년 2,200명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014년 출생아수가 43만 5천 3백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통계청, 2015. 2. 26 보도자료), 2014년 12월 기준 0~6세 영유아 인구가 321만 15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보건복지부, 2015) 현재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양육비 지원 사업은 현재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교육비 지원’에 비해 그 수혜 대상층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 기간(지속성) 측면에서도 1회성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요컨대 영유아 대상의 지원 사업들은 가짓수가 많으나, 사업에 따라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 영양결핍아동 등 특정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지원 시 소득계층에 따른 유사 지원과 중복을 배제하고 있어 수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은 월 최대 15만원 정도에 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육비 지원 사업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교육비 지원 외에는 지원 대상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지원되는 비용 수준도 필요한 양육비에 비해 충분치 않고, 특정 문제 및 취약으로 인한 결핍을 보완하는 지원으로 추가 또는 중복 지원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최윤경, 2013, 서문희 외, 2010), 저소득계층의 경우 영아기에서 0세에 대한 양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양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필수재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중복성 측면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0~1세의 영아는 보육·교육 기관 이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로 가정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양육비 지원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어, 한부모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양육비 지원 외에 좀 더 넓은 대상을 포괄하여 육아 필수재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체감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2-1〉 소득구간 및 연령별 지원사업 수

| | | 소득 구간 및 지원액 | | | | | | | |
|----|------|--|---|--|--|---|--------------------------------------|--------------------|------------------------|
| | | 최저 생계비 100% | 최저 생계비 120% | 최저 생계비 130% | 최저 생계비 150% | 최저 생계비 200% | 최저 생계비 300% | 최저 생계비 447% | 전계층 공통 |
| | | 기초수급 | 차상위 | |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 |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 |
| 연령 | 만 0세 | 12개 ①②*③* ⑤⑥*⑦ ⑧-2,⑧-3, ⑨, ⑫,⑬,⑭ | 12개 ①②*③* ⑤⑥*⑦ ⑧-2,⑧-3, ⑨, ⑫, ,⑭ | 11개 ①②*③* ⑤⑥*⑦ ⑧-2, ⑧-3, ⑫, ,⑭ | 10개 ①②*③*⑤ ⑥*⑦⑧-2, ⑧-3 ⑬,⑭ | 9개 ①②*③* ⑤⑥⑦⑧- 2, ⑧-3,⑬ | 6개 ②*⑤⑦ ⑧-2, ⑧-3, ⑬ | 2개 ②*,⑬ | ②* (셋째아 이상), ⑩,⑪ |
| | 만 1세 | 9개 ①⑤⑦⑧- 2, ⑧-3, ⑨,⑫,⑬, ⑭ | 9개 ①⑤⑦⑧- 2, ⑧-3, ⑨,⑫,⑬, ⑭ | 8개 ①⑤⑦⑧- 2,⑧-3 ⑨,⑫,⑬,⑭ | 7개 ①⑤⑦⑧-2, ⑧-3, ⑬,⑭ | 6개 ①⑤⑦⑧- 2,⑧-3, ⑬ | 5개 ⑤⑦⑧-2, ⑧-3,⑬ | 1개 ⑬ | ⑩,⑪ |
| | 만 2세 | 10개 ①⑤⑦⑧- 1, ⑧-2,⑧-3, ⑨,⑫,⑬, ⑭(⑩) | 10개 ①⑤⑦⑧- 1, ⑧-2,⑧-3, ⑨,⑫,⑬, ⑭(⑩) | 9개 ①⑤⑦⑧- 1, ⑧-2,⑧-3, ⑨,⑫,⑬(⑨) | 8개 ①⑤⑦⑧-1, ⑧-2, ⑧-3, ⑬,⑭ (8) | 7개 ①⑤⑦⑧- 1,⑧-2, ⑧-3,⑬ (7) | 7개 ⑤⑦⑧-1, ⑧-2,⑧-3, ⑬ (7) | 1개 ⑬(1) | |
| | 만 3세 | 12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 ⑧-4,⑨, ⑫,⑬,⑭ | 12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 ⑧-4,⑨, ⑫,⑬,⑭ | 11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 ⑧-4,⑫, ⑬,⑭ | 10개 ①④⑤⑦⑧ -1,⑧-2,⑧-3 ,⑧-4,⑬,⑭ | 9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 ⑧-4,⑬ | 7개 ⑤⑦⑧-1, ⑧-2,⑧-3, ⑧-4,⑬ | 1개 ⑬ | |
| | 만 4세 | 11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 | 11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 | 10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 | 9개 ①④⑤⑦⑧ -1,⑧-2,⑧-3 ,⑧-4,⑭ | 8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⑧- | 6개 ⑤⑦⑧-1, ⑧-2,⑧-3 (6) | - | |
| | 만 5세 | 11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 | 11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 | 10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 | 9개 ①④⑤⑦⑧ -1,⑧-2,⑧-3 ,⑧-4,⑭ | 8개 ①④⑤⑦ ⑧-1,⑧-2, ⑧-3,⑧- | 6개 ⑤⑦⑧-1, ⑧-2,⑧-3 (6) | - | |

| | | | | | | | |
|----------------------|---------------------------|---------------------------|-------------------------|-----------------------|---------------------|-------------------|---|
| | ⑧-4,⑨, ⑫,⑭ | ⑧-4,⑨, ⑫,⑭ | ⑧-4,⑫, ⑭ | | | | |
| | 11개 | 11개 | 10개 | 9개 | 8개 | 6개 | - |
| 만 5세 | ①④⑤⑦⑧-1,⑧-2,⑧-3,⑧-4,⑨,⑫,⑭ | ①④⑤⑦⑧-1,⑧-2,⑧-3,⑧-4,⑨,⑫,⑭ | ①④⑤⑦⑧-1,⑧-2,⑧-3,⑧-4,⑫,⑭ | ①④⑤⑦⑧-1,⑧-2,⑧-3,⑧-4,⑭ | ①④⑤⑦⑧-1,⑧-2,⑧-3,⑧-4 | ⑤⑦⑧-1,⑧-2,⑧-3,⑧-4 | |
| 만 6세 (취학 전) | ④⑤⑦⑧-1,⑧-2,⑧-3,⑧-4,⑨,⑫,⑭ | ④⑤⑦⑧-1,⑧-2,⑧-3,⑧-4,⑨,⑫,⑭ | ④⑤⑦⑧-1,⑧-2,⑧-3,⑧-4,⑫,⑭ | ④⑤⑦⑧-1,⑧-2,⑧-3,⑧-4,⑭ | ④⑤⑦⑧-1,⑧-2,⑧-3,⑧-4 | ⑤⑦⑧-1,⑧-2,⑧-3,⑧-4 | |

주: 1) * 신생아 대상 사업

2) ()안은 해당 사업 수

① 영양플러스 사업, 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③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④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 ⑤ 암환자의료비 지원(소아암), 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⑦ 언어발달지원사업, ⑧ 지역사회투자사업(⑧-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⑧-2: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⑧-3: 인터넷 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 서비스, ⑧-4: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⑨ 드림스타트 사업, ⑩ 양육수당, ⑪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⑫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⑬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출산 및 양육지원), ⑭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지원

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유사 사업 비교

여기서는 영유아 대상 지원 중에서도 기저귀·조제분유 등 물품 지원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유사 사업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기저귀 및 분유 지원사업 실시와 관련해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한 선행 연구에서는 ‘기저귀’ 또는 ‘분유’ 등 육아생필품 지원이 직접적인 지원 내용이었던 ‘영양플러스 사업(보건복지부)’,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여성가족부)’, 지자체의 출산용품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사업 내용’, ‘사업 목적’, ‘사업 대상’을 기준으로 검토한 바 있다(이삼식 외, 2013: 66).

선행연구에서는 우선 저소득층 영유아 대상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과 비교해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원품목 중 ‘기저귀’는 중복되지 않고, 조제분유의 경우도 저소득층이면서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동시에 보유한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여 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위험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하였다(이삼식 외, 2013: 68). 특히 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현재 계획처럼 조제분유 지원 대상으로 영아의 건강위험을 고려하기 보다는 모성의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와 어머니가 없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시설입소아처럼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분유를 지원받는 대상의 중복 위험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은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시 초기 위기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미혼모·부라는 특정 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분유와 기저귀 등 출산·양육 생필품 구매에 지원되는 비용도 10만원 이하로 1회에 그치며 주로 병원비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 중 미혼모·부자에 대한 육아생필품 구매 1회 지원이 중복될 수 있으나 이는 극소수일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삼식 외, 2013: 69). 또한 지원내용면에서 가장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용품 지원 사업도 출산률 제고의 목적에서 '출산축하'의 의미로 제공되는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으로 0세아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비해 그 대상 규모는 한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표 II-15 참조).

즉, 선행연구에서는 유사한 기존 사업과 비교해 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사업 중복성의 문제는 미미한 수준이라 진단하고 있다(이삼식 외, 2013: 69). 또한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정 및 연계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영양플러스 사업과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저소득층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가 중복 가능한 대상인데, 이 경우 두 사업의 주관부처가 동일하므로 부처 내 사업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 분유 지원의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모의 모유수유 가능 여부는 관계 없이 영아의 영양위험요인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 두 사업을 조정한다면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모의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를 분유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분유지원을 일괄하고 본 사업에서는 기저귀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즉, 본 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이 지원 내용을 각각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분할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모유수유 불가능한 대상을 포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사업별로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두 사업에서 모두 분유 지원을 포함하도록 유지하되, 어머니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영아의 영양위

힘요인이 있어 영양플러스 사업의 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복 대상자만을 단순히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은 기저귀·분유 등 생필품 구매 지원의 비중이 매우 낮아 중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조정이 불필요할 정도로 보여지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생필품 지원이라도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금액 수준과 지원품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I-2-2〉 중복 발생 가능 사업간 조정 방안

| | 중복가능 부분 | 조정방안 |
|------------------------|---|---|
| 영양플러스 사업 | 모유수유 불가능한 저소득층 영아 중 영양위험요인 있는 경우(12개월 미만) | 두 사업의 주관부처가 동일하므로, 기저귀 지원과 분유 지원을 분리, 분유 지원은 영양플러스에서 일괄함. |
| 한부모가족 지원 | (기초수급자 외)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가족 | 12세 미만 자녀 대상 월 10~15만원 지원으로, 별도 조정 불필요 |
|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 | 저소득층 미혼부·모 영아(12개월 미만) 가정 | 출산·양육 생필품 구매가 1회 지원에 한정되므로 별도 조정 불필요 |
| 지자체 출산용품 지원사업 | 저소득층 영아(12개월) 가정 | 정부부처 사업 도입 시 해당 사업 운영 중인 지자체는 지원 품목 변경 또는 추가 지원 필요 대상으로 변경 유도 |

주: 이삼식 외(2013).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방안 연구. P.70 〈표 3-10〉에 추가함.

한편,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 지원품목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나, 현금 지원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유아 가정의 육아생필품 구매를 지원하고 양육비의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서의 중복성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 2013년 양육수당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의 사용 대상과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89.5%가 양육수당 전액을 자녀에 사용하며, 자녀 양육비로 지출할 경우 ‘아이물품구매’가 64.4%로 가장 비중이 크며, ‘아이를 위한 저금’ 17.8%, 교육비 13.0%, 돌봄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4.4%로 나타난 바 있다(서문희·이혜민, 2013: 144). 양육수당을 아이물품구매에 사용하는 비율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증가하였는데,

0세아의 경우 '아이물품 구매' 로 사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높아 83.1%에 달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3: 144)

양육수당을 아이물품 구매에 사용한 경우 기저귀(66.4%), 분유(17.6%), 간식(5.3%) 순으로 구매비율이 높은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저귀·분유의 구매비율은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비율을 보였다(서문희·이혜민, 2013: 145). 0세의 경우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출한 품목이 기저귀인 경우가 73.5%, 분유인 경우가 20.5%로 0세아 가정의 경우 기저귀와 분유 구매에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개월 미만아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으로 구매할 품목중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이 기저귀인 비율이 증가하여(서문희·이혜민, 2013: 146) 저소득층에 있어 양육수당이 육아생활품 구매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개월 미만 0세아의 경우 지원받는 20만원의 양육수당으로 기저귀, 분유 구매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2014년 12월 기준 약 38만여 명의 0세아가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난 바(보건복지부, 2014: 212), 두 사업에 중복으로 해당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는 양육수당을 기저귀와 분유 등 자녀양육을 위한 필수품 구입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양육수당의 도입 취지는 '어린이집 이용 가정과의 지원 형평성 제고'와 이를 통한 가정 내 양육 가구의 '양육비 경감'에 있음을 고려할 때, 두 사업이 사업의 목적과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중복성 논란이 되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육수당의 금액 적정성에 대한 부모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0세의 경우 적정 금액을 약 41만원 정도로 희망하고 있어(이정원·이혜민, 2014: 108) 양육비 경감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저소득층에 기저귀·분유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양육수당에 더해져 양육비 경감을 실질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실상 평균 양육비용에 준하는 양육지원이 이루어져 표준 양육비용의 부담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의 목적과 취지, 직접적인 사업 대상, 내용,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기저귀·분유'라는 특정 육아필수재의 지나친 중복 지원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사

업간의 미세 조정(fine tuning)으로 조정 및 연계가 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현금지원인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체계에서 고려되는 것으로, 향후 아동수당의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상품의 품목 위주의 지원은 통합되거나 재편될 필요가 있다.

3. 국외 영유아 육아지원 사업 및 정책 고찰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1)현물지원과 (2)현금지원/세제혜택, (3)시간 지원의 육아휴직으로 나뉜다.

현물지원에는 보육·교육·돌봄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제공과 육아필수재와 같은 구체적 품목 지원으로 구성되는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출산육아용품과 같은 출산장려지원은 대체로 1회성 수혜의 특성을 띠고, 정기적인 지원체계로 품목 지원을 지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또는 자녀양육 관련 세제지원(Child care tax credit)과 같은 현금지원의 형태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거나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특히 유럽국가의 경우, 자녀 1인당 아동수당²¹⁾의 형태로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육아품목을 구매 지출하지 않더라도 자녀양육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쾌적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리라는 견해와 이를 지지하는 관련자료가 아동수당의 현금지원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싱가포르, 대만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수당 지급의 형태로 육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목적사업인 양육수당을 통해 전체 영유아 가구가 기본적으로 수혜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 지원 형태로 영유아 가구 양육비의 지출 품목에 해당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현물로 지원을 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 부담의 격차를 줄이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양육비 절감을 목표로 국가수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국외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국가

21) 스웨덴의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육아지원, 주거 급여 등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의 영유아 부모들에게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나, 사업목적은 달리고 있다. 건강한 임신, 출산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둔 모자보건사업에서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효과성 달성 측면에서 양육비 부담완화보다는 임신부, 산모,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초점을 둔 사업이라 사업목표와 대상이 상이하다. 따라서 해외사례 조사범위를 포괄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가. 조제분유 현물 지원 사업

1) 미국(WIC)²²⁾

국외 사례 중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으로 꼽히며, 미국내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사업효과를 인정받은 성공한 사업 중 하나로, 사업 관리 체계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 사업목적과 대상자격요건

미국에서는 1960년대 저소득층의 영양불량 혹은 영양실조 문제의 사회적 인지가 동기가 되어, 1974년 미국전역에서 건강한 임신, 출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사업목적으로하는 WIC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WIC프로그램 사업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영양위험군이다.

〈표 II-3-1〉 WIC 프로그램 대상자

| 대상자 구분 | 대상자 유지기간 |
|----------|-------------------------|
| 임산부 | 임신 중, 임신종료(출산 포함)후 6주정도 |
| 모유수유 여성 | 신생아 생후 12개월이내 |
| 비모유수유 여성 | 임신 종료(출산 포함)후 6개월이내 |
| 영아 | 생후 12개월 이내 |
| 유아 | 생후 13~60개월이내 |

자료: www.fns.usad.gov/wic

22) WIC: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지원자는 지역요건과 소득, 영양요건을 만족해야한다. 먼저, 지역요건으로 지원한 지역(주)에 살아야 하며, 인도부족기구(ITO: Indian Tribal Organization)지역 지원자는 ITO에 의해 관리되는 거주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WIC를 제공하는 지역에 살고, WIC 전문 클리닉에서 신청해야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소득요건은 지원자의 세전 총소득이 연방빈곤 소득기준(US Poverty Income Guidelines) 185% 이내여야한다. 2015년 1월 기준 4인가족 연간 \$44,863이다. 자동적으로 소득자격이 충족되는 기준이 있다. SNAP 자격자, 메디케이드, TANF(빈곤가족 임시지원) 자격자는 WIC에 참여할 수 있고, 메디케이드, TANF를 받을 수 있는 어느 특정 가족구성원이 있는 지원자도 지원적격자이다. 주정부에 따라서는 다른 특정 국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WIC에 참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양요건을 만족해야한다. 이는 영양위험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진, 의사, 간호사에 의해 처방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WIC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이루어진다. 영양 위험은 크게, 빈혈, 저체중, 임신중절 경험 등 의료적 조건과 불량한 식단 등의 식이적 조건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지며, WIC 영양위험기준 국가목록에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영양조건을 만족된다.

WIC 담당기관이 신청자 모두를 지원할 재원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순위가 정해져있는데, 1)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영아, 2)의학적 문제 경험자나 산모, 그리고 WIC참여자 중 6개월 이하의 영아, 3)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유아, 4)식생활위험요인을 가진 영아, 임산부, 수유부, 5)식생활위험요인을 가진 유아 6) 영양위험요인의 비모유수유산모, 7)영양위험가능 노숙이민자 등의 순서로 관리한다.

나)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미국연방정부 농무성(USDA) 식품영양청(FNS)의 행정을 통해 90개 주 WIC 담당기관과 47,000개의 WIC 상품을 파는 소매상점을 통해 전달된다. 교육, 상담, 검진 등 직접 서비스는 카운티(County)단위의 보건 담당 부서, 병원, 보건소, 학교, 공공주거지원지역, 이민자 및 원주민 의료서비스 시설 등이 있다.

식품을 해당대상자에게 전달할 때에는 1)참여자가 바우처를 가지고 식료품소매점에 가서 해당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 2) WIC 참여자의 집으로 식품을 배달해주는 방식, 3) 대상자가 주정부 혹은 지역기관에서 식품을 받아오는 방식이 있으며 3가지 중 1가지 이상 선택이 가능하다. 지원서비스로는 영양식품, 영

양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상담 및 지원, 다른 의료 복지서비스 소개, 검진서비스 등이 있다.

WIC 식품패키지에는 영아용 조제분유, 영아 및 성인용 시리얼, 과일주스, 달걀, 우유, 치즈, 땅콩버터 건조 두류, 완두콩, 참치캔, 통밀빵 등이 포함된다. 제품 선정 기준은 영양보충 효과성, 구매용이성, 다양한활용성, 가격적절성, 높은 영양 밀도, 단백질, 칼슘, 비타민A, 비타민C의 함량여부가 기준이 된다. WIC 식품 패키지는 그 대상자에 따라 7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표 II-3-2〉 WIC 식품패키지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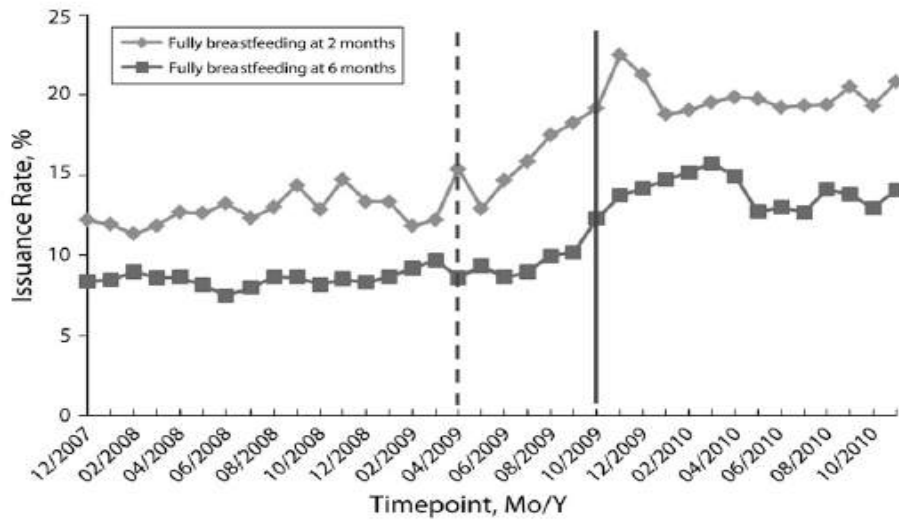
| 패키지 | 범주내용 | 패키지 | 범주내용 |
|-----|-------------------------|-----|----------------------------|
| 1 | 0-3개월 영아식품 | 5 | 임산부, 모유수유부 식품 |
| 2 | 4-12개월 영아식품 | 6 | 비모유수유부식품 |
| 3 | 특별식품요구되는 유아 및 여성을 위한 식품 | 7 | WIC 조제분유 전혀 안받는 완전모유수유부 식품 |
| 4 | 1-5세 유아식품, | | |

자료: www.fns.usad.gov/wic(2015. 4. 11. 인출)

식품비용 감소를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조제분유 리베이트의 형식을 취한다 즉, 주 단위 WIC 담당기관에서는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조제분유를 선정하고, 가장 높은 할인을 제시하는 조제분유 회사가 해당 주의 WIC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영아용 조제분유를 공급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또하나는 WIC 참여자들에게 구매가능한 특정식품을 큰 포장 단위로 구매하도록 하거나, 같은 상품의 경우 저렴한 종류를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을 통해 해마다 사업참여 대상자들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저소득층은 다른 프로그램과 더불어 WIC를 동시에 수혜하도록 연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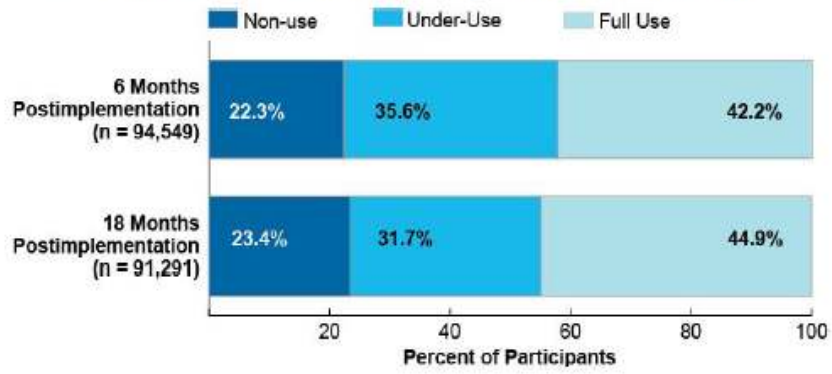
WIC 수혜율은 미국 전체 영아의 반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2004년 기준 연방정부에서 WIC 프로그램에 \$4.37 billion을 지원, 매달 평균 7.5 million명의 여성 및 영유아를 지원), 2006년 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에 의해 프로그램의 구성과 효과를 재점검하여, 2009년 모유수유 지원을 늘렸고 보충식품의 선택의 폭도 넓히는 변화를 주었다. 매달 체크 형태의 바우처를 받아 식료품 소매장에서 사용하며, 구입가능 물품은 nutrition-rich package로 제한되어 있다.



Note. Dashed vertical line indicates start of breastfeeding training and education (April 2009); solid vertical line indicates food package change (October 2009).

FIGURE 2—Issuance rates of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fully breastfeeding packages to infants aged 2 and 6 months in Southern California.

FIGURE 6.—Overall CVV use (State-level), 6 and 18 months postimplementation



있다. 사업 대상자는 10주이상의 임신부와 4세 이하의 아동들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이다. 자격요건으로는 소득보조를 받고 있거나, 소득기반 실업수당 수급자, 소득연계 고용지원 수급자, 자녀세액공제 수혜자 중 연간 가구소득 16.190유로 이하인 가구, 18세 미만 임신모가 있다.

지원 제품은 바우처를 가지고 지역 식료품소매상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구매 가능 식품으로는 분유, 우유, 과일, 채소, 비타민이 있다. 단, 생후 6개월까지는 반드시 모유를 먹이고, 가능하면 2년까지 모유수유를 권장하며,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분유를 권장하고 있다.

우유과 과일, 채소의 경우도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저지방, 살균우유를 이용하되, 유색, 농축, 염소, 가루우유 등은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과일과 채소의 경우도, 잘려져있거나, 다져진 것은 가능하나, 각종 조미료나, 조리, 건조된 것은 불가하다. 신생아 조제분유의 경우도 반드시 태어날 때부터 이용가능한 조제분유는 허용하지만, 소우유로 제조되지 않은 조제분유, 6개월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조제분유는 이용이 불가하다.

이러한 지원품목을 수급받기위해 지원자는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의 일부는 조산사, 간호사, 의사 등의 전문적인 소견을 적어 완성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3.10유로 바우처 2장을 받는다. 바우처는 4주마다 제공되며 지역마트, 야채가게, 슈퍼마켓 등 다양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8주마다는 비타민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약국에서 비상약 구입 지원하기도 한다.

본 사업의 경우 수요자(산모, 영아), 사업 전달자(조산사, 간호사, 건강 전문의), 공급자(소매업자)의 역할별로 매뉴얼을 제작해 필요한 전문지식(사업타당성, 연구결과 및 전문지식 등)부터 사업이행 지침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3) 캐나다(Early Childhood Initiatives Program)

캐나다의 Early Childhood Initiatives Program은 뉴브른스윅 정부가 1992년에 세운 정책이다. 긴급한 아동과 가족을 위해, 보건소, 의료서비스부, 사회개발부의 협력 사업이다.

본사업의 목적은 부모가 아동이 최선의 출발을 시킬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긴급아동은 다음과 같이, 육체적, 심리적 문제로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들을 정의한다.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성장 발달이 늦거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방치되거나, 가족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들이 우선적인 대상이다. 우선적인 대상자는 부모의 건강에 위협을 암시하는 환경적 요인이거나,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임산부가 우선적인 대상이다. 출산 전후 6개월 동안의 산모와 그 아동은 산전과 산후로 구분된다.

산전 서비스로는 임산부에게 하루에 1리터 상당의 우유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과 비타민영양제가 공급된다. 산후서비스로는 보건복지부 지역 공공보건부가 생후 4개월까지 신생아 분유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의 경우도 아이가 4개월이 될 때까지, 비타민과 하루에 1리터 상당의 우유를 받을 수 있다. 본사업의 종료 후에는 신생아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회개발부가 48통까지 조제분유를 지급할 수 있다.

조산아의 경우, 조제분유 쿠폰이 해산하는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제공된다. 보건소는 18개월미만의 아이에게 그밖에 다른 종류의 분유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분유들의 지원은 보건소의 의사처방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4) 일본 (하치오지시: 모자 영양식품 지급(母子栄養食品の支給))

일본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양육비 절감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은 동경에 있는 하치오지시라는 지자체에서 신생아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치오지 시에서는 '모자 영양식품의 지급'이라는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생활보호수급자 가구의 임산부 또는 영유아, 지원신청한 연도의 시민세 비과세가구의 임산부 또는 영유아, 전년도 소득세 비과세 가구의 임산부 또는 영유아이다.

본 사업은 모성 보호 및 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구 임산부, 수유부의 분유와 유아용 분유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신생아 생후 4개월째까지이고, 신생아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하여, 신청한 다음달부터 만 1세의 생일인 달까지 지급한다.

임산부의 경우, 1인 1개월에 약 780그램, 신생아의 경우 1인 1개월에 약 880그램 정도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자 건강수첩, 생활보호수급 증명서, 시민세·도민세(비과세) 증명서(소득증명서), 그리고 의사가 신생아의 영양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견서가 필요하다.

나. 기저귀 현물 지원 사업

1) 미국(diaper bank)

미국에서 기저귀 지원은 민간 비영리 단체로부터 시작되었다. 1994년 Resolve 라는 회사가 휴가기간동안 지역 위기 보육시설을 지원하기위해 기저귀운동을 개최하는 것으로 기저귀 은행 운동이 시작되었다. 끊임없는 수요로 인해 5년이 상 지속한 Resolve사의 전통이 되었고, 2000년에는 기저귀은행 운동은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인 Diaper Bank가 설립되었다. Diaper Bank는 미국의 Food Stamp, WIC, Medicaid, TANF 등 공적원조가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영유아 가구의 경우, 기저귀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와 유아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무료로 공급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기관과 단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Diaper Distribution Network에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지역기관을 통해 후원받은 기저귀를 무료로 배포한다. 대상자는 연방정부의 빈곤선 기준 아래에 있는 가구의 아동들이며, 한 달에 아동당 최소 50개의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 공급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지급받을 수 있다.

2) 핀란드(Maternity package)

핀란드에서는 국가에서 임신부에게 출산패키지를 제공한다. 1937년 출산수당이 처음으로 제공되기 시작했고,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지원되었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과 산모사망률을 기록한 핀란드는 1949년에 모든 엄마들에게 지원되기 시작했다. 출산패키지는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와 the Government Purchasing Centre에 의해 제공되었고, 1994년에 Kela(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f Finland)에서 운영감독하고 있다.

핀란드 거주자가 출산이 예정된 경우, 세금공제액인 140유로를 출산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출산수당 대신 출산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출산수당 대상자는 핀란드에 거주하거나,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예비엄마들과 입양부모들이다. 출산수당 자격요건으로는 최소 154일의 임신을 지속해야하며, 임신 후 4개월 내에 의사로부터 의료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출산수당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154일간 임신이 지속되고, 임신 후 4개월 내에 의료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인증을 신청서와 함께 Kela 사무소에 보낸다. 출산패키지는 우편으로 보내주고, 현금지급을 원할 경우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신청은 최소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 패키지내 제품들은 판매제품이 아니며, EU법에 적용되는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제품 제공기관이 정해진다. 출산패키지 제품으로는 아동의 옷, 천기저귀, 가제수건, 목욕제품, 장난감 등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초산모들은 출산 패키지를 선택하고 있으며, 전체 예비산모의 3분의 1 정도만 현금수당을 받는다. Kela에서 매해 60,000건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40,000건 정도가 출산패키지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출산 패키지의 제품들은 매년 환경친화적인 제품들로 바뀌어 가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2000년부터 포함된 재활용 가능한 기저귀이다.

3) 영국(Real nappies for London: RNfL)

영국 런던(London)에서 런던 사회적기업관리조직 (London Community Resource Network: LCRN)과 런던 런던폐기물당국(London Waste Authority: NLWA)이 북런던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RNfL는 종이기저귀의 쓰레기량을 줄이고 천기저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천 기저귀 초기 비용을 회피시켜주고자 지정된 회사로부터 천기저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4.15파운드 바우처를 무료로 지급한다.

런던의 6개 자치구(Bexley, Camden, Hackney, Haringey, Islington, Tower Hamlets)에 거주자들은 런던바우처를 받는다. 예외 자치구(Barnet, Enfield, Waltham Forest)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받기도 한다. 본 사업대상자는 18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런던 거주 가구이다. 지원방식으로는 먼저 기저귀를 구입하고 나서 구입영수증과, 영아 출생 확인증, 은행거래증, 시민세 지불내역 등 거주 증명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구입가능한 천기저귀 타입은 크게 2가지가 있고, 천기저귀 약세서리를 구입할 때에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초기 구입비용을 지역에 따라 적게는 40파운드에서 많게는 Swansea에서 100파운드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구입장소는 천기저귀 관리사무소, 세탁소, 런던바우처를 허용하는 소매점,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

4) 일본 (乳児紙おむつ助成: 영아 기저귀 조성사업(시 독자 제도))

가) 사업 개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미카사시(三笠市)에서는 새로운 시민의 출생을 축하하고,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미카사시로의 전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저귀 교환권을 교부하고 있다. 2011년(平成 23년) 7월부터 미카사시에서 처음 시행한 본 사업은 영아 기저귀 조성사업(乳児紙おむつ助成) 이라고 하며, 다른 육아필수재, 예컨대 우유에 비해 종이기저귀는 대부분 가격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평성 문제에 따라 교환권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다. 본사업의 대상자는 0세아동이 있는 보호자로 미카사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시세(市税) 등을 체납하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대상자들 모두에게 교부되는 것이라기보다 신청자에 한해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절차로는 미카사시청 복지사무소 복지총무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입하고 서명을 한 후 출생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기저귀 교환권 교부 기준은 접수된 신청서의 기입내용, 시세(市税) 등의 납세현황을 조사한다. 체납내용이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부모의 수입과는 관계없으며,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불가하다.²³⁾

시청에서는 교부기준 부합에 대한 판단 결과를 2-3주 검토 후 “교부결정통지서”로 신청가구에게 우편으로 통지한다. 지원가능자의 경우 통지서와 함께 교환권을 동봉한다. 해당 보호자는 시청 내 복지사무소 창구를 방문하여 기저귀 교환권을 교부받을 수도 있다. 분실, 파손 시 재교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부기간은 1회당 3개월분 19,500엔에 한하여 연 4회 교부한다. 교부월은 7월, 10월, 1월, 4월이다. 교부 상당액은 2015년 현재기준 1개월에 6,500엔으로 연간 총 7,8000엔이다. 출생월부터 만 1세 직전월까지 1년분이다. 미카사시로 전입을 한 0세 아동 보호자의 경우는 그 전입월부터 아동연령 만 1세 직전월까지에 상당하는 교환권을 교부받게 된다. 반대로 교부월 이전 3개월간 미카사시에서 전출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환권 유효기간의 경우, 교부월의 다음달부터 3개월의 말일까지 교환이 가

23) 생활보호대상자는 개인별로 지원규모는 다양하나, 최저한도의 생활이 지원되고 있다. 본 사업을 수혜할 경우, 수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생활보호 조건에서 어긋나게 된다고 하여 본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며, 다른 정책사업들도 마찬가지이다. 홋카이도의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이 800엔 정도이다.

능하다. 교환권으로는 기본적으로 기저귀만 가능하나 관련된 것 1개 정도의 물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용가능한 점포로는 시가 지정한 약국(drugstore)이 있으며 시내약국에 가서 교환권을 제시하면 기저귀 수령이 가능하다. 교환권 사용에 대한 거스름돈은 없다.

〈표 II-3-3〉 홋카이도 미카사시(三笠市) (영아기저귀 구입비용 조성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2011년 4월 1일 이후 0세 아동의 보호자 - 시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시세를 체납하지 않은 가구 |
| 지원절차 | - 신청서 및 영아의 건강 보험증 사본 제출 - 전입의 경우, 이전거주지역의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 - 심사후 교부가 결정이 되면, 지시에 따라 교부받음. - 교부받은 교환권을 시내의 지정된 약국 점포에서, 교환권 상당의 영아용 기저귀로 교환이 가능(천기저귀도 가능) |
| 교부상당액 | - 매월 6,500엔 교부함. (산출기준: 1일 기저귀사용비용(200-250엔) *30일) - 최대 3개월분으로 지급. 연 4회(7월, 10월, 1월, 4월) - 출생한 월부터 만 1세되기 전 월까지 1년분임. - 전입의 경우 전입한 달부터 만 1세가 되는 월까지의 분을 교부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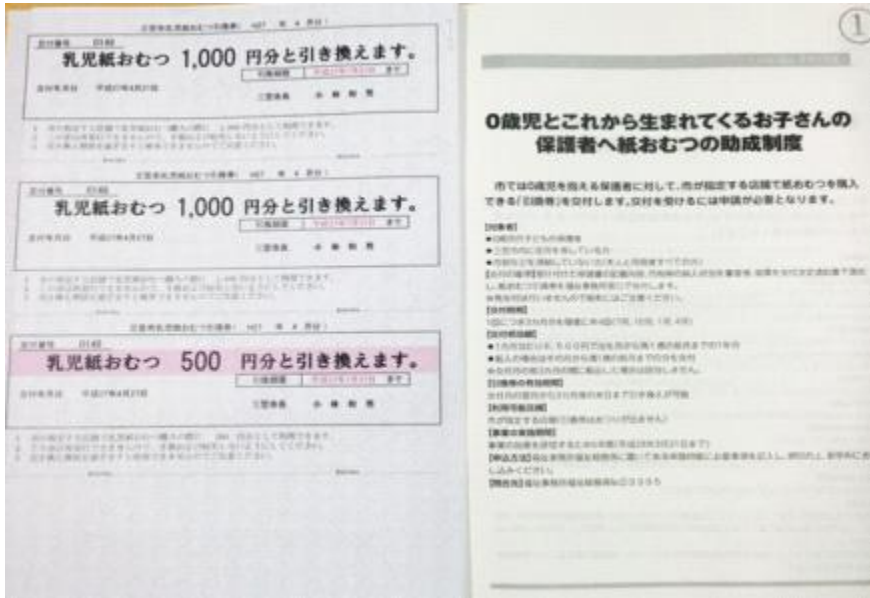
자료: http://www.city.mikasa.hokkaido.jp/hotnews/detail_sp/00001129.html(2015. 6. 8 인출)

나) 사업 운영상의 특징

국외출장을 통해 추가적으로 본 사업운영에 대해 특징적이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한 노력이 특징적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매월 마을홍보책자뿐 아니라, TV광고를 통해 홋카이도 전역에 광고가 된다. 기저귀사업을 포함한 마을 홍보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는 광고로, 8-9월, 12-1월에 홍보광고 방영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다음으로 특징적인 점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매칭 비율이다. 미카사시와 중앙정부와의 예산운용과 관련해서는 미카사시의 인구가 적고 예산이 적은 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있다. 본 사업비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70%가 들어오며, 나머지 30%를 지역자치단체인 미카사 시청에서 담당한다.²⁴⁾

24) 미카사 시의 경우 시운영을 위한 원리상환금의 경우에도 그 금액의 70%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고 30%의 예산은 '일반지원'이라고 하는 시민세, 교부세, 수수료 등으로 충당한 지방자치단

기저귀 지원 단가 산출기준 및 교환권 운용체계 또한 상당히 단순하다. 시장 조사를 거쳐 아동 1인당 하루 200-250엔정도의 기저귀 사용 비용이 들어 30일을 곱하여 계산된 것이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원금액은 동일하다.



자료: 일본 미카사 시청 제공(2015)

[그림 II-3-3] 일본 미카사 시 기저귀 바우처 이용권 및 사업시행 개요

다른 기저귀 브랜드를 선호하여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교환권 운영 체계의 경우도 기저귀 소비자로부터 교환권을 받은 기저귀를 판매한 소매업체에서는 그 교환권을 미카사 시청에 가지고 오면 해당금액을 시청에서 소매업체에 입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밖에 부정수급과 같은 추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히 특징적이다. 교환권의 정상적인 사용여부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선택 문제이며, 지자체에서는 가게의 신용을 믿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관여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와 같은 현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시·도 단위수준에서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 乳兒用紙おむつ購入費用助成事

체의 재원으로 예산을 구성한다.

業(영아기저귀 구입비용 조성사업)라고도 일컬어지는 본사업의 목적은 미카사시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했으며,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시 독자적인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국의 전국단위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

본 사업 실시기간과 관련하여 사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5년간 진행하기로 한 본 사업은 2016년 3월 31일까지 종료된다. 이후 사업의 지속 여부에 관해서는 올해 미카사시 담당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진행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효과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본 사업 실시 이후 2014년 인구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이와 같은 일은 49년만에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차년도 정책시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예산문제가 걸려 있다. 미카사 시청도 여느 일본 현대 도시와 마찬가지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본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어도 노인복지 예산이 아닌 이와 같은 젊은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예산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점 고려해보면 차년도 사업 지속성 확보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추정된다.

그밖에 홋카이도 지역에는 지역단위로 육아지원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삿포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임신부부터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언제든지 자유로이 방문하여 1:1로 보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멘토를 구하고, 보육교구들의 공유를 통해 실제 보육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마련해준다. 또한 삿포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소(어린이집), 소학교(초등학교), 초등아동회관(아동돌봄교실)이 한 개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어서 각각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부대시설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후지여자대학교(藤女子大學校)의 육아지원분야 전문가인 나키노 키와키 교수과 논의해 본 결과, 본 사업의 인구유입 효과는 굉장히 신선하고 바람직하며, 일본의 중앙정부 정책을 포함한 사회에서는 육아활동을 위한 제도와 지원은 잘되어 있지만, 현재 일본사회는 육아부담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갖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인식이 사회정책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출산율 제고와 관련하여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재취업을 제고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남성의 어떤 지표와도 관련성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육아활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깊어, 다양한 보육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여성의 육아업무를 덜어주기 위함일 뿐이라고 밝혔다.

Ⅲ. 저소득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지출 및 지원수요 분석

2012-2013년 3-5세 누리과정과 무상 영아보육, 양육수당의 지급으로 전 연령 전계층 사각지대 없는 영유아 지원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가구가 수혜하는 육아지원 급여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육아지원 효과는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의 상승과 가계 양육부담의 완화라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으나, 전계층 보편지원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육아지원에 대한 체감만족과 비용부담 완화는 2009년 이전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체계 효과보다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서문희·이혜민, 2014).

2015년 시점, 보편지원 설계 하에서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육아 지출 및 육아지원 수혜 현황은 어떠한지, 그들의 양육부담 실제와 수혜를 통해 향후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육아지원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 확인된 예비타당도와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고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저소득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지출 현황

가. 소득수준 및 자녀연령별 양육비용

1) 선행 연구 결과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 지출 부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조사에 의하면(서문희·최윤경·신운정·이세원, 2010), 양부모가정 기준 자녀 1인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103만9천원, 자녀 2인가구는 148만6천원, 3인가구 165만9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계소비지출 대비 각 39.5%, 50.0%, 57.5%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 중 영유아자녀 고유의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자녀 1인가구 58만4천원, 2인 76만7천원, 3인 86만2천원으

로 적지않아, 저소득층 영유아의 최저양육비가 자녀 1인당 약 30~40만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²⁵⁾ (서문희 외, 2010).

가구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출을 비교하면,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양육비 지출비중의 감소로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10).

2012년 서울시 영유아가구의 육아생계비 조사 결과(최윤경 외, 2012)에서도 소득계층별로 양육비 지출규모와 육아 상품·서비스 구매 내역이 달라, 정부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층과 중층의 양육비 지출 중위값에 큰 차이가 없어, 소득 하층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큼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영아기 육아 관련 내구재와 소비재 등 '상품' 구입의 부담이 저소득층 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외, 2013 육아정책 브리프).

이는 서비스 위주의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이자 결과로, 내구재 장만과 육아필수재 구입이 정기적으로 요구되는 양육비 지출의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층의 가계지출 총액 대비 영유아자녀 고유의 육아비 지출 비중이 31.8%로, 중층의 26.3%, 상층의 28.8%에 비해 높다.

가) 발달시기별 영유아가구 소비지출

영유아가구 특성별 가중치 산출을 위해 2012년 육아생계비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최윤경 외, 2013, 22-23p). 영유아 가구의 발달시기별(영아, 유아)에 따른 소비지출/소득 현황은 다음 <표 III-1-1> 와 같다.

<표 III-1-1> 영유아가구의 소득수준별/자녀연령별 양육비 지출

| 단위: 원(명) | | | | |
|------------------|-----------|-----------|-----------|-------|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중위값(지출비중) | (수) |
| 월가계지출총액 | 3,058,240 | 1,257,161 | 2,880,000 | (449) |
| 월가구소득 | | | | |
| 하(120~230만원) | 1,962,580 | 567,520 | 1,970,000 | (31) |
| 중(240~570만원) | 2,991,029 | 875,064 | 2,900,000 | (379) |
| 상(580만원 이상) | 4,582,307 | 2,711,659 | 4,200,000 | (39) |
| 발달시기 | | | | |
| 임신·신생아기(임신~12개월) | 2,801,900 | 1,122,336 | 2,500,000 | (100) |

25) 영유아가 1명 있는 한부모 가구의 양육비도 월 77만5천원으로, 자녀 고유항목의 지출에만 40만7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된다(서문희 외, 2010)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중위값(지출비중) | (수) |
|----------------|------------------|------------------|-----------------------|--------------|
| 영아기(13~30개월) | 2,893,652 | 1,032,969 | 2,800,000 | (115) |
| 유아기1(31~48개월) | 3,105,368 | 953,377 | 3,000,000 | (95) |
| 유아기2(49~72개월) | 3,337,000 | 1,601,714 | 3,010,000 | (140) |
| 월육아지출총액 | 1,182,464 | 1,201,591 | 805,510(28.0%) | (449) |
| 월가구소득 | | | | |
| 하 | 906,065 | 857,607 | 626,225(31.8%) | (31) |
| 중 | 1,124,352 | 1,136,619 | 763,500(26.3%) | (379) |
| 상 | 1,966,892 | 1,691,949 | 1,210,833(28.8%) | (39) |
| 발달시기 | | | | |
| 임신·신생아기 | 1,519,108 | 1,319,136 | 1,205,125(48.2%) | (100) |
| 영아기 | 1,248,386 | 1,295,401 | 712,183(25.4%) | (115) |
| 유아기 | 1,105,811 | 1,342,011 | 671,208(22.4%) | (95) |
| 유아기2 | 933,625 | 820,909 | 712,123(23.7%) | (140) |

자료: 최윤경·유해미·김성숙·송신영(2012). 영유아 양육물가현황과 지수화 방안

첫째자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월평균 소비지출, 지출총액, 소득총액 모두 영아 가구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품목지출 총액 비교해 보면 영아 가구의 지출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조사 당시 전체 육아품목 지출 총액은 영아 가구가 140만원, 유아가구가 약93만원으로 나타났고 육아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육아대표품목 지출도 영아가구가 약106만원, 유아가구가 71만원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다. 영유아 가구 소비지출 항목 중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월 지출비용 기초 통계와, 분유와 기저귀의 월평균 지출 비용을 구매율, 구매시기, 구매빈도, 구매수량들을 모두 고려하여 소비재 품목의 연간 총 지출로 추정하여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한 소비지출 비중은 <표 III-1-2> 와 같다.

<표 III-1-2> 분유·기저귀 발달시기별 가계 지출 비용/비중

단위: 원

| 품목 | 월 지출비용 | | | | 가중치(월 지출비중) | | |
|-----|--------|---------|------|---------|-------------|---------------|----------|
| | 영아가구 | | 유아가구 | | 영유아가구 | 영아가구 | 유아가구 |
| | N | 평균 | N | 평균 | 1,000.00 | 1,000.00 | 1,000.00 |
| 분유 | 75 | 108,079 | 7 | 72,214 | 61.29 | 114.77 | 7.22 |
| 기저귀 | 151 | 70,091 | 16 | 129,428 | 90.06 | 149.85 | 29.58 |

자료: 2012 서울지역 육아생계비 조사 결과(최윤경 외, 2012).

영아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분유 108,079원 (가계지출비중 11.5%), 기저귀 70,091원 (15.0%)이며 유아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분유 72,214원, 기저귀

129,428원으로 분유는 영아가구의 지출이 많고 기저귀는 유아가구의 지출이 많게 나타났으나, 유아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한된 사례 수에 의한 결과이다.

‘영아가구의 경우 전체 육아품목 소비지출 중 분유와 기저귀가 차지하는 비중이 26.5%로 영아가구에서 분유와 기저귀의 지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육아필수 품목 53개를 추출한 후, 영아자녀가 있는 가구의 육아비 지출 비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을 살펴본 결과, 내구재(카시트, 유모차, 돌앨범, 영유아 교재교구 등)를 제외하고는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53개 육아품목 지출(약 9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또한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 발달시기의 특성별에서도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을 지나 영유아기에 접어들면 월 가계지출 총액 대비 영유아자녀 고유의 양육비용 지출이 약 22~25%의 비중을 보인다. 반면, 임신후기와 출산, 12개월 미만의 신생아기에는 약 48.2%의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비 지출 비중을 보인다. 이는 출산준비로 인한 육아내구재의 구입(옷, 이불, 승용물, 출산용품 등)과 소비재(분유, 기저귀)의 구입비용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외, 2012, 2013).

나) 소득수준별 영유아가구 소비지출

영유아 가구의 소득계층 및 발달시기에 따른 소비지출/소득 현황은 다음 <표 III-1-1> 과 같다²⁶⁾. 소득계층에 따라 육아품목 지출 통계와 소비지출 등을 살펴보면 계층에 따른 지출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 소비지출 항목 중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월 평균 지출비용과 품목별 가중치 즉 월 평균 지출비중을 제시하면 다음 <표 III-1-3> 와 같다.

<표 III-1-3> 소득계층별 육아품목지출 기초통계

단위: 원

| 품목 | 하층 | | 중층 | | 상층 | | 하층 | 중층 | 상층 |
|-----|----|--------|-----|---------|----|---------|---------------|--------|-------|
|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 | |
| 분유 | 8 | 86,463 | 75 | 108,079 | 9 | 139,789 | 102.65 | 114.83 | 57.89 |
| 기저귀 | 17 | 60,471 | 151 | 70,091 | 13 | 52,794 | 152.56 | 149.93 | 31.58 |

자료: 2012 서울지역 육아생계비 조사 결과(최윤경 외, 2012).

26) 통상 기준의 가구소득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하기에는 2012년 조사(N=450)의 해당계층 사례 수가 적어, 본 고에서 산출한 가구소득 수준별 구분은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또는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음. (하층: 월 소득 230만원 미만, 상층: 월 소득 580만원 이상으로 분류함)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필수재로 구분할 수 있는 분유, 기저귀의 지출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비 지출 자료를 이용한 양육부담 비교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하층을 대상으로 발달시기별로 자녀가 갓 태어난 12개월 미만의 신생아기에 꼭 필요한 육아필수재 품목 위주의 지원이 양육부담 완화의 효과가 큰 설계로 판단되며, 유아기 자녀 대상으로는 교육·보육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저소득 영유아가구는 총 600사례로, 그 중 0세아 자녀를 둔 가구는 187사례이다. 본 사업이 저소득 0세아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0세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상대적으로 과표집하였다.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설계됨을 고려하여, 응답된 가구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 소득구간을 분석변인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유아가구가 6.8%, 최저생계비 120% 이하 26.0%로 나타나, 법정 저소득/차상위층에 해당하는 빈곤가족은 32.8%로 표집되었다²⁷⁾.

전체적으로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해당하는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부록 4 참조). 그 밖에 읍면지역 약 10%, 다문화가족 2.7%, 한부모가족 2.7%, 조손가족 0.2%, 의료급여 1.6%의 취약가족 유형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응답가구 평균 6만2천원으로 나타났다(2만원 이하 5.8%, 3~4만원 20.8%, 5~6만원 36.2%, 7~9만원 25.0%, 10만원 이상 12.2% 모름 16.7%).²⁸⁾

27) 조사대상 가구가 법정 지원층(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이 아닌, 가구소득 응답에 기초한 포괄적·잠재적 저소득층임. 법정 저소득 가구를 대표하는데 제한이 있음.

28)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한 부과체계를 가짐.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53,962원, 지역가입자 32,555원이며,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65,399원, 지역가입자 51,141원으로, 이에 기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됨(보건복지부 자료, 2015).

〈표 III-1-4〉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 항목 구분 | 저소득 영유아가구(전체) | | 저소득 0세아 가구 | |
|---------------------|---------------|-------|------------|-------|
| | % | 사례수 | % | 사례수 |
| | 100.0 | (600) | 100.0 | (187) |
| 자녀연령 | | | | |
| 만0세 | 31.2 | (187) | 100.0 | (187) |
| 만1세 | 18.3 | (110) | 0.5 | (1) |
| 만2세 | 18.3 | (110) | 5.3 | (10) |
| 만3세 | 21.3 | (128) | 9.6 | (18) |
| 만4세 | 19.8 | (119) | 4.3 | (8) |
| 만5세 | 21.3 | (128) | 4.8 | (9) |
| 월가구소득 | | | | |
| 150만원 이하 | 6.5 | (39) | 8.0 | (15) |
| 151~180만원 | 22.7 | (136) | 20.9 | (39) |
| 181~200만원 | 28.8 | (173) | 29.9 | (56) |
| 201~230만원 | 29.3 | (176) | 30.5 | (57) |
| 231만원 이상 | 12.7 | (76) | 10.7 | (20) |
| 지원계층 ²⁹⁾ | | | | |
| 100% 이하 | 6.8 | (41) | 7.0 | (13) |
| 120% 이하 | 26.0 | (156) | 20.3 | (38) |
| 130% 이하 | 5.2 | (31) | 3.2 | (6) |
| 150% 이하 | 42.3 | (254) | 44.4 | (83) |
| 180% 이하 | 19.7 | (118) | 25.1 | (47) |
| 지역규모 | | | | |
| 대도시 | 50.0 | (300) | 50.8 | (95) |
| 중소도시 | 39.7 | (238) | 38.0 | (71) |
| 읍면지역 | 10.3 | (62) | 11.2 | (21) |
| 지역 | | | | |
| 서울/경인 | 28.0 | (168) | 28.3 | (53) |
| 부산/울산/경남 | 20.3 | (122) | 19.3 | (36) |
| 대구/경북 | 13.0 | (78) | 12.8 | (24) |
| 대전/충청 | 19.3 | (116) | 18.2 | (34) |
| 광주/전라 | 19.3 | (116) | 21.4 | (40) |
| 가구원수 | | | | |
| 2명 | 1.5 | (9) | 1.1 | (2) |
| 3명 | 51.3 | (308) | 66.3 | (124) |
| 4명 | 36.2 | (217) | 23.5 | (44) |
| 5명 이상 | 11.0 | (66) | 9.1 | (17) |
| 모 취업여부 | | | | |
| 취업모 | 12.4 | (74) | 4.8 | (9) |
| 비취업모 | 87.6 | (525) | 95.2 | (178) |

나) 월 평균 가구소득 및 양육비용

본 설문조사 응답에 기초한 잠정 저소득 영유아가구 600사례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만원, 월평균 가계지출 16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는 월평균 가구소득 144만원, 0세아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만원으로 응답되었으며, 자녀연령이 어린 젊은 가구일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다.

〈표 III-1-5〉 저소득 영유아가구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 구분 | 150만원 이하 | 151~180만원 | 181~200만원 | 201~250만원 | 계(수) | 평균 |
|-----------------|--------------|-------------|-------------|-------------|-------------------|------------|
| 월평균 가구소득 | 6.5 | 22.7 | 28.8 | 42.0 | 100.0(600) | 201 |
| 최저생계비 | | | | | | |
| 100% 이하 | 68.3 | 19.5 | 12.2 | 0 | 100.0(41) | 144 |
| 120% 이하 | 6.4 | 27.6 | 47.4 | 18.6 | 100.0(156) | 191 |
| 130% 이하 | 3.2 | 51.6 | 0.0 | 45.2 | 100.0(31) | 200 |
| 150% 이하 | 0 | 24.4 | 37.0 | 38.6 | 100.0(254) | 205 |
| 180% 이하 | 0 | 5.9 | 0 | 94.1 | 100.0(118) | 225 |
| 자녀연령 | | | | | | |
| 0세아 | 8.0 | 20.9 | 29.9 | 41.2 | 100.0(187) | 199 |
| 1세아 | 8.2 | 18.2 | 26.4 | 47.3 | 100.0(110) | 203 |
| 2세아 | 4.5 | 17.3 | 34.5 | 43.6 | 100.0(110) | 203 |
| 3세아 | 6.3 | 18.8 | 30.5 | 44.5 | 100.0(128) | 203 |
| 4세아 | 5.9 | 22.7 | 32.8 | 38.6 | 100.0(119) | 201 |
| 5세아 이상 | 7.8 | 24.2 | 24.2 | 43.8 | 100.0(128) | 202 |
| 월평균 소비지출 | 43.5a | 25.3 | 22.2 | 9.0 | | 166 |
| 최저생계비 | | | | | | |
| 100% 이하 | 68.3 | 22.0 | 7.3 | 2.4 | 100.0(41) | 140 |
| 120% 이하 | 45.5 | 25.6 | 23.7 | 5.1 | 100.0(156) | 164 |
| 130% 이하 | 38.7 | 22.6 | 12.9 | 25.9 | 100.0(31) | 172 |
| 150% 이하 | 43.3 | 25.2 | 22.4 | 9.1 | 100.0(254) | 166 |
| 180% 이하 | 33.9 | 27.1 | 27.1 | 11.7 | 100.0(118) | 173 |
| 자녀연령 | | | | | | |
| 0세아 | 50.3 | 24.1 | 18.7 | 6.9 | 100.0(187) | 159 |
| 1세아 | 43.6 | 20.0 | 26.4 | 10.0 | 100.0(110) | 169 |
| 2세아 | 34.5 | 27.3 | 27.3 | 10.9 | 100.0(110) | 170 |

29) 본 조사에서 활용한 '지원계층' 변인은 조사참여 가구가 응답한 월 평균 가구소득 자료에 근거함. 가구원 수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구간(예: 3인가구 최저생계비 100% 월 1,359,688원,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1,668,329원)에 대입, 전환한 결과로 실제 가구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의 최저생계비 지원 계층과 다를 수 있음.

| 구분 | 150만원 이하 | 151~180만원 | 181~200만원 | 201~250만원 | 계(수) | 평균 |
|--------|----------|-----------|-----------|-----------|------------|-----|
| 3세아 | 36.7 | 32.0 | 21.9 | 9.3 | 100.0(128) | 169 |
| 4세아 | 34.5 | 26.1 | 29.4 | 10.1 | 100.0(119) | 172 |
| 5세아 이상 | 46.9 | 21.9 | 21.9 | 9.3 | 100.0(128) | 168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2015년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월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³⁰⁾의 저소득 영유아가구에서 영유아자녀 고유의 육아품목(상품,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자녀양육비 전체 지출은 월 평균 약 45만2천원, 이 중 취학전 영유아자녀 대상의 양육비 지출은 월 평균 약 38만 9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양육비 지출이 가구 평균 소비지출 166만원의 각 27.2%, 23.4% 수준이다.

저소득가구내에서도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연령이 많아질수록 월 평균 상시적으로 구매 소비하는 양육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즉 영아가구에 비해 유아가구의 월 평균 비용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세아 가구의 경우, 매월 구매하는 소비재 외에, 자녀의 출산으로 지출하게 되는 내구재, 서비스재의 구입 비용이 큼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최윤경 외, 2012,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무상 보육·교육의 육아지원 확대로,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고 유아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영아가구 대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6〉 저소득 영유아가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용

| 구분 | 단위: %(명), 만원 | | | | 계(수) | 평균 |
|------------------|--------------|-------------|-------------|-------------|-------------------|--------------|
| | 20만원 이하 | 21~40만원 | 41~60만원 | 61만원 이상 | | |
| 모든 자녀 양육비 | 10.0 | 45.3 | 30.0 | 14.7 | 100.0(600) | 45.15 |
| 영유아자녀 양육비 | 14.8 | 53.5 | 23.7 | 8.0 | 100.0(600) | 38.86 |
| 최저생계비 | | | | | | |
| 100% 이하 | 17.1 | 48.8 | 24.4 | 9.8 | 100.0(41) | 40.88 |
| 120% 이하 | 14.1 | 46.8 | 28.8 | 10.3 | 100.0(156) | 40.99 |
| 130% 이하 | 22.6 | 54.8 | 12.9 | 9.7 | 100.0(31) | 37.26 |
| 150% 이하 | 15.0 | 53.1 | 23.2 | 8.7 | 100.0(254) | 39.20 |
| 180% 이하 | 12.7 | 64.4 | 20.3 | 2.5 | 100.0(118) | 35.02 |
| 월가구소득 | | | | | | |
| 150만원 이하 | 25.6 | 51.3 | 20.5 | 2.6 | 100.0(39) | 34.18 |

30) 전국 가구소득 평균 50% 이하 기준과 유사

| 구분 | 20만원 이하 | 21~40만원 | 41~60만원 | 61만원 이상 | 계(수) | 평균 |
|---------------------|---------|---------|---------|---------|------------|-------------|
| 151~180만원 | 19.1 | 61.8 | 14.7 | 4.4 | 100.0(136) | 34.09 |
| 181~200만원 | 12.7 | 49.1 | 29.5 | 8.7 | 100.0(173) | 41.40 |
| 201~230만원 | 11.9 | 55.7 | 22.2 | 10.2 | 100.0(176) | 39.64 |
| 231만원 이상 | 13.2 | 44.7 | 31.6 | 10.5 | 100.0(76) | 42.20 |
| X ² (df) | | | | | | 24.91(12)* |
| 기준아동(첫째아)연령 | | | | | | |
| 만0세 | 21.3 | 64.0 | 12.0 | 2.7 | 100.0(150) | 32.30 |
| 만1세 | 14.7 | 54.7 | 21.3 | 9.3 | 100.0(75) | 39.33 |
| 만2세 | 12.0 | 56.0 | 25.3 | 6.7 | 100.0(75) | 38.35 |
| 만3세 | 17.0 | 44.0 | 31.0 | 8.0 | 100.0(100) | 40.81 |
| 만4세 | 9.0 | 51.0 | 30.0 | 10.0 | 100.0(100) | 43.09 |
| 만5세 이상 | 11.0 | 47.0 | 28.0 | 14.0 | 100.0(100) | 42.54 |
| X ² (df) | | | | | | 38.39(15)** |
| 영유아가구 | | | | | | |
| 영아(만0~2세) | 18.8 | 62.1 | 15.4 | 3.7 | 100.0(272) | 33.94 |
| 유아(만3~5세) | 11.6 | 46.3 | 30.5 | 11.6 | 100.0(328) | 42.94 |
| X ² (df) | | | | | | 37.93(3)***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나. 육아필수재 지출 패턴 분석

저소득 영유아가구 또는 0세아 가구의 분유와 조제분유에 대한 구입여부, 구매채널, 구매가격과 빈도 등 지출 패턴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매율

육아필수재로 간주되는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해 지난 한 달 기준으로 실제 구매한 적이 있는지 저소득 0세아 가구를 대상으로 구매율을 조사한 결과, 기저귀 100%, 분유 69.0%로 육아필수재로서의 긴요도가 저소득 0세아 가구의 경우, 분유에 비해 기저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유수유의 조제분유 대체율이 천 기저귀의 1회용 기저귀 대체율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분유의 구매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분유 구매율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III-1-7〉 지난 한 달 평균 기저귀·분유 구입여부 - 0세아 가구

단위: %(명)

| 구분 | 구입/이용 | 비구입/비이용 | 계(수) |
|-----|-------|---------|------------|
| 기저귀 | 100.0 | - | 100.0(187) |
| 분유 | 69.0 | 31.0 | 100.0(187)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1-8〉 하위특성별 분유 구입여부 - 0세아 가구

| 구분 | 구입/이용 | 비구입/비이용 | 계(수) |
|---------------------|-------|---------|------------|
| 분유 (0세) | 69.0 | 31.0 | 100.0(187) |
| 지원계층 | | | |
| 100%이하 | 69.2 | 30.8 | 100.0(13) |
| 120%이하 | 63.2 | 36.8 | 100.0(38) |
| 130%이하 | 50.0 | 50.0 | 100.0(6) |
| 150%이하 | 67.5 | 32.5 | 100.0(83) |
| 180%이하 | 78.7 | 21.3 | 100.0(47) |
| X ² (df) | | 3.79(4) | |
| 월가구소득 | | | |
| 150만원 이하 | 53.3 | 46.7 | 100.0(15) |
| 151~180만원 | 61.5 | 38.5 | 100.0(39) |
| 181~200만원 | 69.6 | 30.4 | 100.0(56) |
| 201~230만원 | 71.9 | 28.1 | 100.0(57) |
| 231만원 이상 | 85.0 | 15.0 | 100.0(20) |
| X ² (df) | | 5.37(4)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2) 구입채널

2015 KICCE 육아물가조사를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영유아가구 전 계층의 육아품목에 대한 주 구입처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구매비율이 기저귀(89.5%), 분유(74.9%)로 매년 인터넷을 이용한 육아품목의 구매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최윤경 외, 2015).

〈표 III-1-9〉 기저귀·분유 구입채널 - 저소득 영유아가구/0세아가구

단위: %

| 5월 구입 기준 | 대형 마트 | 백화점 | 소형 마트 | 재래 시장 | 인터넷 /온라인 | 직구 공구 | 박람회 | 전문 매장 |
|---------------------------|----------|-----|----------|----------|-------------|----------|-----|----------|
| 영유아가구(전체) (N=800) | | | | | | | | |
| 2014년 | | | | | | | | |
| 기저귀 | 107 | 05 | 06 | 02 | 864 | 07 | 05 | 03 |
| 분유 | 295 | 07 | 12 | - | 592 | 65 | 07 | 17 |
| 2015년 | | | | | | | | |
| 기저귀 | 74 | 02 | 08 | 02 | 895 | 04 | 02 | 02 |
| 분유 | 162 | - | 13 | - | 749 | 45 | - | 13 |
| 영유아가구(저소득) (N=386) | | | | | | | | |
| 2015년 | | | | | | | | |
| 기저귀(1순위) | 244 | - | 16 | - | 741 | - | - | - |
| 기저귀(1+2순위) | 837 | 08 | 117 | 21 | 878 | - | 03 | 05 |
| 분유(1순위) | 372 | - | 14 | - | 614 | - | - | - |
| 분유(1+2순위) | 879 | 14 | 159 | 054 | 812 | 05 | - | 05 |
| 0세아가구(저소득) (N=184) | | | | | | | | |
| 2015년 | | | | | | | | |
| 기저귀(1순위) | 228 | - | 05 | - | 766 | - | - | - |
| 기저귀(1+2순위) | 848 | 11 | 125 | 11 | 902 | - | - | 05 |
| 분유(1순위) | 356 | - | 07 | - | 637 | - | - | - |
| 분유(1+2순위) | 867 | 07 | 156 | - | 815 | 07 | - | 07 |

주: 기타 - 아울렛, 아나바다 장터, 보세매장, 벼룩시장
 자료: 영유아가구(전체) - 최윤경 외(2015, 미발간).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
 최윤경 외(2014)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
 영유아가구(저소득), 0세아가구(저소득) - 본 연구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조사 결과.
 두 조사의 표본과 질문 형식의 차이로 동일 조건의 응답 결과는 아님.

본 연구에서 월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의 저소득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한다고 응답한 사례를 골라, 구입처를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게 한 결과, 2014-2015 영유아가구 전 계층 조사결과(최윤경 외, 2014, 2015)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영유아가구와 0세아 가구에서 두 품목 모두 온라인 구매 비율이 대체로 오프라인 구매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저귀 온라인 구매율이 분유의 온라인 구매율 보다 높는데, 이는 분유가 보관기간이 짧은 식료품의 특성을 갖고있어 공산품인 기저귀만큼 온라인을 통한 다량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소득 0세아 가구의 온라인 구매율이 영유아가구 전체 보다 좀 더 높았다. 지원설계 시 온·오프라인 구매가 모두 원활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3) 구입비용 및 사용량

가) 기저귀

조사대상 가구 중, 기저귀를 사용하는 가구(N=277)를 대상으로 월평균 기저귀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 7만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저귀 사용 자녀의 1일 평균 사용량은 7개로 조사되었다.

한편, 첫째아 0세아 가구(N=146)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저귀 월 평균 구입비용이 8만4천원이며, 1일 평균 사용량은 약 8개로 조사되었다.

〈표 III-1-10〉 영유아 자녀 월 평균 기저귀 구입비용

단위: %(명), 만원

| 구분 | 5만원 이하 | 6~10만원 | 11만원 이상 | 계(수) | 평균 |
|-----|--------|--------|---------|------------|------|
| 전체 | | | | | 7.80 |
| 첫째 | 29.6 | 56.0 | 14.4 | 100.0(277) | 8.01 |
| 둘째 | 33.6 | 54.1 | 12.3 | 100.0(122) | 7.71 |
| 셋째 | 42.9 | 35.7 | 21.4 | 100.0(14) | 7.29 |
| 첫째아 | | | | | |
| 0세 | 22.6 | 62.3 | 15.1 | 100.0(146) | 8.43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1-11〉 영유아 자녀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

단위: %(명), 개

| 구분 | 3개 이하 | 4~6개 | 7~9개 | 10개 이상 | 계(수) | 평균 |
|-----|-------|------|------|--------|------------|------|
| 전체 | | | | | | 7.00 |
| 첫째 | 10.8 | 40.8 | 25.6 | 22.7 | 100.0(277) | 6.81 |
| 둘째 | 15.6 | 37.7 | 25.4 | 21.3 | 100.0(122) | 6.54 |
| 셋째 | - | 28.6 | 21.4 | 50.0 | 100.0(14) | 8.57 |
| 첫째아 | | | | | | |
| 0세 | 1.4 | 29.5 | 32.9 | 36.3 | 100.0(146) | 8.15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하위특성별로 살펴보면, 기준이 되는 첫째 영유아자녀 1인당 월평균 기저귀 구입비용이 월 평균 8만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0세아 가구에서는 월 평균 8만4천원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기저귀 구입비용이 컸다. 한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저귀 구입 비용 지출이 적어 월가구 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에서 6만5천원으로 응답되었다. 아동의 연령이 만 2세 이후 유아기(만3~5세)에 접어들면서 기저

귀를 구입하는 대상아동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0세아 가구의 기저귀 구입비용이 다른 연령에 비해 큰 가운데, 이용가구 내에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기저귀 지출비용이 적은 것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양육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0세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평균 수준의 기저귀 구입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II-1-12〉 첫째 영유아 자녀 월평균 기저귀 구입비용

단위: %(명), 만원

| 구분 | 5만원 이하 | 6~10만원 | 11만원 이상 | 계(수) | 평균 |
|---------------------|--------|--------|------------------------|------------|------|
| 전체 | 29.6 | 56.0 | 14.4 | 100.0(277) | 8.01 |
| 월가구소득 | | | | | |
| 150만원 이하 | 33.3 | 66.7 | 0.0 | 100.0(21) | 6.52 |
| 151~180만원 | 19.7 | 65.2 | 15.2 | 100.0(66) | 8.24 |
| 181~200만원 | 34.6 | 49.4 | 16.0 | 100.0(81) | 7.98 |
| 201~230만원 | 30.3 | 56.6 | 13.2 | 100.0(76) | 8.08 |
| 231만원 이상 | 33.3 | 45.5 | 21.2 | 100.0(33) | 8.42 |
| X ² (df) | | | 10.17(8) | | |
| 기준아동(첫째아)연령 | | | | | |
| 만0세 | 22.6 | 62.3 | 15.1 | 100.0(146) | 8.43 |
| 만1세 | 28.6 | 58.7 | 12.7 | 100.0(63) | 8.19 |
| 만2세 | 43.5 | 43.5 | 13.0 | 100.0(46) | 6.83 |
| 만3세 | 41.2 | 41.2 | 17.6 | 100.0(17) | 7.71 |
| 만4세 | 75.0 | 0.0 | 25.0 | 100.0(4) | 6.00 |
| 만5세 이상 | 100.0 | 0.0 | 0.0 | 100.0(1) | 3.00 |
| X ² (df) | | | 17.36(10) ⁺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첫째 영유아자녀 1인당 하루 기저귀 사용량은 평균 6.8개로 약 7개로 조사된 가운데,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서는 하루 평균 7개, 첫째아 0세 가구에서는 하루 평균 8.15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0세아 가구 내에서도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하루 기저귀 사용량이 적은 패턴을 보인다.

또한 연령별 기저귀 사용량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저귀 지원대상 연령의 범위를 이용기간 전체로 확대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연령에 따른 기저귀 이용량의 감소를 반영하여 지원액을 차감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지원사업의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저귀 사용량이 가장 많은 0세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며, 동시에 기저귀 지원이 만 2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

요는 없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III-1-13〉 첫째 영유아 자녀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

단위: %(명), 개

| 구분 | 3개 이하 | 4~6개 | 7~9개 | 10개 이상 | 계(수) | 평균 |
|---------------------|-------|------|---------------------------|--------|------------|------|
| 전체 | 10.8 | 40.8 | 25.6 | 22.7 | 100.0(277) | 6.81 |
| 지원계층2 | | | | | | |
| 100% 이하 | 13.3 | 46.7 | 20.0 | 20.0 | 100.0(15) | 7.07 |
| 120% 이하 | 15.4 | 43.6 | 17.9 | 23.1 | 100.0(39) | 6.49 |
| 130% 이하 | 20.0 | 26.7 | 26.7 | 26.7 | 100.0(15) | 6.60 |
| 150% 이하 | 8.5 | 40.0 | 30.0 | 21.5 | 100.0(130) | 6.95 |
| 180% 이하 | 10.3 | 42.3 | 23.1 | 24.4 | 100.0(78) | 6.73 |
| X ² (df) | | | 6.28(12) | | | |
| 기준아동(첫째아)연령 | | | | | | |
| 만0세 | 1.4 | 29.5 | 32.9 | 36.3 | 100.0(146) | 8.15 |
| 만1세 | 4.8 | 58.7 | 25.4 | 11.1 | 100.0(63) | 6.16 |
| 만2세 | 26.1 | 60.9 | 10.9 | 2.2 | 100.0(46) | 4.80 |
| 만3세 | 52.9 | 29.4 | 11.8 | 5.9 | 100.0(17) | 3.94 |
| 만4세 | 75.0 | 0.0 | 0.0 | 25.0 | 100.0(4) | 4.75 |
| 만5세 이상 | 100.0 | 0.0 | 0.0 | 0.0 | 100.0(1) | 1.00 |
| X ² (df) | | | 127.10(15) ^{***} |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나) 조제분유

저소득 영유아가구 중 조제분유를 구매하는 가구(N=141)를 대상으로 월 평균 분유 구입 비용을 조사한 결과 1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유를 먹는 자녀가 분유 1통(800g 기준)을 먹는데 걸리는 평균 일수는 8일로 조사되었다. 0세아의 경우, 분유 한 통을 먹는데 걸리는 일수가 평균 8.74일로 나타나, 모유수유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4〉 영유아 자녀 월 평균 조제분유 구입비용

단위: %(명), 만원

| 구분 | 5만원 이하 | 6~10만원 | 11만원 이상 | 계(수) | 평균 |
|-----|--------|--------|---------|------------|-------|
| 전체 | | | | | 10.00 |
| 첫째 | 17.7 | 51.8 | 30.5 | 100.0(141) | 10.08 |
| 둘째 | 17.5 | 52.6 | 29.8 | 100.0(57) | 10.49 |
| 셋째 | - | 85.7 | 14.3 | 100.0(7) | 10.00 |
| 첫째아 | | | | | |

| 구분 | 5만원 이하 | 6~10만원 | 11만원 이상 | 계(수) | 평균 |
|----|--------|--------|---------|------------|-------|
| 0세 | 16.3 | 53.8 | 29.8 | 100.0(104) | 10.11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1-15〉 영유아 자녀 분유 한통 먹는데 걸리는 일수

| 구분 | 단위: %(명), 일 | | | | 계(수) | 평균 |
|-----|-------------|------|------|--------|------------|------|
| | 3일 이하 | 4~6일 | 7~9일 | 10일 이상 | | |
| 전체 | | | | | | 8.00 |
| 첫째 | 1.4 | 24.8 | 32.6 | 41.1 | 100.0(141) | 9.01 |
| 둘째 | 1.8 | 29.8 | 26.3 | 42.1 | 100.0(57) | 9.14 |
| 셋째 | 14.3 | 28.6 | - | 57.1 | 100.0(7) | 7.29 |
| 첫째아 | | | | | | |
| 0세 | 1.0 | 23.1 | 36.5 | 39.4 | 100.0(104) | 8.74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첫째 영유아자녀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분유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가구 전체에서 10만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첫째아가 0세아 가구에서도 10만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월가구 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분유 비용 지출이 적어 월 8만8천원으로 응답되었다. 전체 영유아가구와 0세아가구 평균 월 10만원 정도가 분유 비용으로 지출되는데 비해 저소득 가구의 분유 구입 비용이 적은 것은, 양육비 부담의 경제적 어려움이 모유수유의 비율을 높이고 동시에 분유 구매율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분유 지원이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저소득 0세아 가구에서 모유수유가 적정 수준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분유 품목 구매를 지원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득수준별 구매패턴과 모유수유의 양육과정을 고려하여 분유 지원에 대해 신중한 설계가 요구된다 하겠다.

〈표 III-1-16〉 첫째 영유아 자녀 월 평균 조제분유 구입비용

| 구분 | 단위: %(명), 만원 | | | | 평균 |
|-----------|--------------|--------|---------|------------|-------|
| | 5만원 이하 | 6~10만원 | 11만원 이상 | 계(수) | |
| 전체 | 17.7 | 51.8 | 30.5 | 100.0(141) | 10.08 |
| 월가구소득 | | | | | |
| 150만원 이하 | 36.4 | 45.5 | 18.2 | 100.0(11) | 8.82 |
| 151~180만원 | 20.6 | 38.2 | 41.2 | 100.0(34) | 10.76 |
| 181~200만원 | 13.5 | 56.8 | 29.7 | 100.0(37) | 9.95 |

| 구분 | 5만원 이하 | 6~10만원 | 11만원 이상 | 계(수) | 평균 |
|---------------------|---------|--------|---------|------------|-------|
| 201~230만원 | 15.9 | 56.8 | 27.3 | 100.0(44) | 9.70 |
| 231만원 이상 | 13.3 | 60.0 | 26.7 | 100.0(15) | 10.87 |
| X ² (df) | 6.85(8) | | | | |
| 기준아동(첫째아)연령 | | | | | |
| 만0세 | 14.9 | 55.4 | 29.7 | 100.0(101) | 10.03 |
| 만1세 | 19.2 | 50.0 | 30.8 | 100.0(26) | 10.88 |
| 만2세 | 33.3 | 25.0 | 41.7 | 100.0(12) | 9.33 |
| 만3세 | 50.0 | 50.0 | 0.0 | 100.0(2) | 6.50 |
| 만4세 | - | - | - | - | - |
| 만5세 이상 | - | - | - | - | - |
| X ² (df) | 6.39(6) | |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기저귀 구입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유를 구입하는 가구 수가 자녀 연령이 높아 질수록 현저하게 줄고 있으므로, 만 0세아 대상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대상임을 보여준다.

첫째 영유아자녀가 분유 한 통을 먹는데 걸리는 평균 8.74일 (약 9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0세아 1인당 8.7일, 월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15.9일로 앞서 논의한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모유수유 병행비율이 많거나, 분유 섭취량이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대체로 한 달에 평균 분유 4통을 먹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모유수유 및 이유식 비중, 소득수준 등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표 III-1-17〉 첫째 영유아 자녀 분유 한통 먹는데 걸리는 일수

| 구분 | 단위: %(명), 일 | | | | | 평균 |
|---------------------|-------------|------|------|--------|------------|-------|
| | 3일 이하 | 4~6일 | 7~9일 | 10일 이상 | 계(수) | |
| 전체 | 1.4 | 24.8 | 32.6 | 41.1 | 100.0(141) | 9.01 |
| 월가구소득 | | | | | | |
| 150만원 이하 | 0.0 | 18.2 | 18.2 | 63.6 | 100.0(11) | 15.91 |
| 151~180만원 | 2.9 | 14.7 | 41.2 | 41.2 | 100.0(34) | 8.76 |
| 181~200만원 | 0.0 | 29.7 | 37.8 | 32.4 | 100.0(37) | 7.92 |
| 201~230만원 | 2.3 | 27.3 | 25.0 | 45.5 | 100.0(44) | 8.70 |
| 231만원 이상 | 0.0 | 33.3 | 33.3 | 33.3 | 100.0(15) | 8.07 |
| X ² (df) | 9.19(12) | | | | | |
| 기준아동(첫째아)연령 | | | | | | |
| 만0세 | 1.0 | 23.8 | 37.6 | 37.6 | 100.0(101) | 8.60 |
| 만1세 | 3.8 | 23.1 | 26.9 | 46.2 | 100.0(26) | 9.62 |

| 구분 | 3일 이하 | 4~6일 | 7~9일 | 10일 이상 | 계(수) | 평균 |
|---------------------|---------|------|------|--------|------------|-------|
| 만2세 | 0.0 | 41.7 | 0.0 | 58.3 | 100.0(12) | 10.75 |
| 만3세 | 0.0 | 0.0 | 50.0 | 50.0 | 100.0(2) | 11.00 |
| 만4세 | - | - | - | - | - | - |
| 만5세 이상 | - | - | - | - | - | - |
| X ² (df) | 9.85(9) | | |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2. 저소득 영유아가구 육아지원 수혜 현황

앞서 1절에서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육아 관련 소비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2절에서는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육아지원 수혜 현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가. 육아품목 지원 수혜율

조사대상 저소득 영유아가구에게 서비스 지원이 아닌(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 기저귀 분유와 같은 육아품목을 직접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육아물품을 전체 9.3% 가 지원받은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원받은 수혜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100% 초과와 차상위계층에서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차상위계층 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표 III-2-1〉 육아물품 지원 수혜 경험

| 구분 | 현재 지원 받고 있음 | 과거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받은 적 없음 | 계(수) |
|---------------------|-------------|--------------|-----------|------------|
| 전체 | 2.3 | 7.0 | 90.7 | 100.0(600) |
| 지원계층 | | | | |
| 100% 이하 | 7.3 | 14.6 | 78.0 | 100.0(41) |
| 120% 이하 | 3.8 | 6.4 | 89.7 | 100.0(156) |
| 130% 이하 | 3.2 | 0.0 | 96.8 | 100.0(31) |
| 150% 이하 | 1.2 | 8.3 | 90.6 | 100.0(254) |
| 180% 이하 | 0.8 | 4.2 | 94.9 | 100.0(118) |
| X ² (df) | 17.19(8)* | | | |
| 월가구소득 | | | | |
| 150만원 이하 | 7.7 | 12.8 | 79.5 | 100.0(39) |

단위: %(명)

| 구분 | 현재 지원 받고 있음 | 과거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받은 적 없음 | 계(수) |
|---------------------|-------------|-----------------------|-----------|------------|
| 151~180만원 | 0.0 | 6.6 | 93.4 | 100.0(136) |
| 181~200만원 | 3.5 | 6.9 | 89.6 | 100.0(173) |
| 201~230만원 | 1.1 | 5.7 | 93.2 | 100.0(176) |
| 231만원 이상 | 3.9 | 7.9 | 88.2 | 100.0(76) |
| X ² (df) | | 14.14(8) ⁺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나. 지원받은 육아품목 종류 및 지원방식

육아물품을 지원 받은 적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받은 품목과 수, 지원처를 조사한 결과, 1~2가지를 받은 경우가 전체 약 70%로 대다수였으며, 지원처는 공공기관/단체(46.0%), 지방정부(31.5%), 민간기관/단체(12.9%)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지원 횟수는 1회성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9.2%, 66.0%), 그 다음으로 매월 지급한다(44.4%, 31.9%)는 응답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지급방식에서는 육아물품이 다수인 관계로 직접 수령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바우처 이용권, 그리고 출산축하금/양육보조금에 대한 현금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지원받은 육아물품 종류/수

| 구분 | 단위: %(명) | | | | | | 계(수) |
|-----------|----------|------|------|-----|-----|--------|-----------|
| | 1가지 | 2가지 | 3가지 | 4가지 | 5가지 | 6가지 이상 | |
| 저소득 영유아가구 | 44.6 | 25.0 | 12.5 | 5.4 | 7.1 | 5.4 | 100.0(56)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2-3〉 육아물품 지원처

| 구분 | 단위: %(명) | | | | | 계(수) |
|------------|----------|------|---------|---------|--------|------------|
|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공공기관/단체 | 민간기관/단체 | 모름/무응답 | |
| 저소득 영유아 가구 | 8.9 | 31.5 | 46.0 | 12.9 | 0.8 | 100.0(124) |
| 저소득 0세아 가구 | 8.5 | 19.1 | 55.3 | 17.0 | - | 100.0(47)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2-4〉 육아물품 지원주기/횟수

| 구분 | 단위: %(명) | | | | | | 계(수) |
|------------|----------|-----|------|-----|-----|-----|------------|
| | 1회성 | 매주 | 매월 | 분기별 | 월2회 | 매일 | |
| 저소득 영유아 가구 | 49.2 | 0.8 | 44.4 | 2.4 | 2.4 | 0.8 | 100.0(124) |
| 저소득 0세아 가구 | 66.0 | - | 31.9 | 2.1 | - | - | 100.0(47)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2-5〉 육아물품 지원방식

| 구분 | 단위: %(명) | | | |
|------------|----------|---------|---------|--------|
| | 현금 | 바우처 이용권 | 품목 직접수령 | 모름/무응답 |
| 저소득 영유아 가구 | 5.6 | 10.5 | 83.9 | 0.8 |
| 저소득 0세아 가구 | 4.3 | 12.8 | 83.0 | 2.1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2-6〉 지원받은 품목의 지원내용 - 현금액

| 구분 | 단위: %(명), 만원 | | | | | |
|------------|--------------|------|------|------|----------|-------|
| | 1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계(수) | 평균 |
| 저소득 영유아 가구 | 14.3 | 14.3 | 42.9 | 28.6 | 100.0(7) | 18.71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2-7〉 지원받은 품목의 지원내용 - 바우처 이용권 금액

| 구분 | 단위: %(명), 만원 | | | | | | |
|------------|--------------|------|------|------|--------|-----------|-------|
| | 2만원 | 10만원 | 20만원 | 25만원 | 모름/무응답 | 계(수) | 평균 |
| 저소득 영유아 가구 | 7.7 | 7.7 | 61.5 | 7.7 | 15.4 | 100.0(13) | 17.91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소수 사례에 국한되었지만, 현금 지원과 바우처 이용권의 경우 1만원 ~ 30만원까지 다양한 지원 금액이 있었으며, 출산을 최근에 경험한 0세아 가구의 금액 수준이 20~30만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영유아가구 전체의 경우 현금과 바우처 지원 금액이 평균 약 17~19만원을 받은 것으로 응답된 바 있다.

지원받은 육아품목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단일 품목으로는 '기저귀'를 지원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영유아식품/이유식 재료, 분유, 그리고 아기 옷을 비롯한 출산용품과 육아품목 지원, 출산지원금 및 축하/장려금의 현금 지원이 응답되었다.

〈표 III-2-8〉 지원받은 품목

| 구분 | 단위: %(명) | |
|--------------|-----------|------|
| | 저소득 영유아가구 | |
| | % | (수) |
| 전체 | 100.0 | (56) |
| 기저귀 | 30.4 | (17) |
| 영유아식품/이유식재료 | 30.4 | (17) |
| 우유 | 21.4 | (12) |
| 쌀 | 19.6 | (11) |
| 분유 | 17.9 | (10) |
| 출산용품/육아물품 지원 | 17.9 | (10) |

| 구분 | 저소득 영유아가구 | |
|-----------------|-----------|-----|
| | % | (수) |
| 배냇저고리/내복 | 14.3 | (8) |
| 콩 | 10.7 | (6) |
| 계란 | 10.7 | (6) |
| 물티슈 | 8.9 | (5) |
| 속싸개/아기싸개 | 7.2 | (4) |
| 목욕용품 | 5.4 | (3) |
| 꿈나무 장난감 대여 | 5.4 | (3) |
| 출산지원금/장려금 | 8.9 | (5) |
| 미역 | 3.6 | (2) |
| 인지능력향상 바우처(학습지) | 3.6 | (2) |
| 책 | 1.8 | (1) |
| 카시트 대여 | 1.8 | (1) |

주: 출산용품/육아용품: 아기띠, 베게, 가제수건, 체온계, 로션, 완구, 젓병/분유세트, 칫솔 등
영유아식품/이유식재료: 감자, 당근, 야채, 쥬스 등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앞서 2장에서 67개 지자체 중 육아품목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35개 지자체로, 약 절반은 출산축하금 등의 현금을, 약 절반 이상은 기저귀, 미역, 출산용품 등의 육아품목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지원받은 품목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에 관한 질문에서도 '기저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0세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기저귀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응답률이 더 높았다. 아기 옷/침구류를 포함하여 출산/육아 용품, 식료품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있다.

〈표 III-2-9〉 지원받은 육아 물품 중 가장 도움이 된 품목

단위: %(명)

| 구분 | 저소득 영유아가구 | |
|-----------------|-----------|------|
| | % | 수 |
| 전체 | 100.0 | (56) |
| 기저귀 | 25.0 | (14) |
| 우유 | 17.9 | (10) |
| 출산용품 | 10.7 | (6) |
| 분유 | 8.9 | (5) |
| 고운맘카드 출산지원금/장려금 | 5.4 | (3) |
| 배냇저고리 | 5.4 | (3) |
| 이유식재료/영유아식품 | 5.4 | (3) |
| 쌀 | 3.6 | (2) |
| 목욕용품 | 3.6 | (2) |

| 구분 | 저소득 영유아가구 | |
|------------|-----------|------|
| | % | 수 |
| 꿈나무 장난감 대여 | 3.6 | (2) |
| 물티슈 | 1.8 | (1) |
| 미역 | 1.8 | (1) |
| 책 | 1.8 | (1) |
| 카시트 대여 | 1.8 | (1) |
| 구몬학습지 | 1.8 | (1) |
| 없다 | 1.8 | (1) |

주: 출산용품 - 체온계, 아기싸개, 완구, 젓병/분유세트, 칫솔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1회성 지원이 다수인 가운데에서도 기저귀 지원이 가장 많은 사례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및 연계성 확보가 요구된다. 비용지원 설계에서 누적된 금액을 추후 사용하거나 다른 육아필수재 품목(예: 분유)를 구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다. 육아품목 지원의 효과 및 충분성

육아물품 지원이 양육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응답이 82.1%로 도움되지 않았다는 부정응답 17.9%보다 우세하게 많았다. 0세아 가구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 84.2%, 도움되지 않았다 15.8%로 영유아가구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았다.

〈표 III-2-10〉 육아물품 지원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단위: %(명)

| 구분 | 전혀 | | 약간 도움됨 | 매우 도움됨 | 계(수) |
|------------|--------|--------|--------|--------|-----------|
| | 도움되지않음 | 도움되지않음 | | | |
| 저소득 영유아 가구 | 5.4 | 12.5 | 60.7 | 21.4 | 100.0(56) |
| 저소득 0세아 가구 | 10.5 | 5.3 | 78.9 | 5.3 | 100.0(19)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현행 육아물품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충분하지않다 약 62%, 충분하다 7.5%로, 충분하지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하였다. 잘 모르겠다 는 응답도 30.7%로 적지 않았다.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현행 육아물품 지원이 충분하지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생계비 180%이하/월가구소득 231~250만원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육아물품 지원이 충분하

지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연령별로 0세아와 3~4세아를 둔 가구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출산 직후 신생아기 1년과 유아기 만 3~4세에 육아물품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11〉 현행 육아물품 지원의 충분 정도

| 단위: %(명) | | | | |
|---------------------|------|----------|------|------------|
| 구분 | 충분하다 | 충분하지않다 | 잘 모름 | 계(수) |
| 전체 | 7.5 | 61.8 | 30.7 | 100.0(600) |
| 지원계층2 | | | | |
| 100% 이하 | 4.9 | 68.3 | 26.8 | 100.0(41) |
| 120% 이하 | 9.6 | 55.1 | 35.3 | 100.0(156) |
| 130% 이하 | 9.7 | 51.6 | 38.7 | 100.0(31) |
| 150% 이하 | 7.5 | 63.4 | 29.1 | 100.0(254) |
| 180% 이하 | 5.1 | 67.8 | 27.1 | 100.0(118) |
| X ² (df) | | 7.73(8) | | |
| 월가구소득 | | | | |
| 150만원 이하 | 7.7 | 69.2 | 23.1 | 100.0(39) |
| 151~180만원 | 5.9 | 58.8 | 35.3 | 100.0(136) |
| 181~200만원 | 10.4 | 61.8 | 27.7 | 100.0(173) |
| 201~230만원 | 6.3 | 60.8 | 33.0 | 100.0(176) |
| 231~250만원 | 6.6 | 65.8 | 27.6 | 100.0(76) |
| X ² (df) | | 6.34(8) | | |
| 기준아동(첫째아)연령 | | | | |
| 만0세 | 6.7 | 64.0 | 29.3 | 100.0(150) |
| 만1세 | 8.0 | 54.7 | 37.3 | 100.0(75) |
| 만2세 | 9.3 | 58.7 | 32.0 | 100.0(75) |
| 만3세 | 6.0 | 67.0 | 27.0 | 100.0(100) |
| 만4세 | 6.0 | 65.0 | 29.0 | 100.0(100) |
| 만5세 이상 | 10.0 | 58.0 | 32.0 | 100.0(100) |
| X ² (df) | | 5.43(10) | | |
| 영유아가구 | | | | |
| 영아(만0~2세) | 7.7 | 59.9 | 32.4 | 100.0(272) |
| 유아(만3~5세) | 7.3 | 63.4 | 29.3 | 100.0(328) |
| X ² (df) | | 0.79(2)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인지도 및 수혜율

저소득 0세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과 공통의 대상 범위를 포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사업의 인지도와 신청률, 적격판정률, 수혜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산후조리 방법을 조사한 결과, 건강관리사를 포함하여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전체 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0세아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이용률이 8.1%로 줄어든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사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며, 첫째아 연령이 어릴수록 즉 최근에 출산을 경험한 모일수록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정방문의 산후조리사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 선택재로서의 이용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12〉 가장 최근 산후조리 방법

단위: %(명)

| 구분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사 | 부모님, 남편, 지자체 산후도우미 | 가족 혼자서 산후도우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사 | 계(수) |
|---------------------|------------|-------|--------------------|--------------|-------|--------------|------------|
| 저소득 영유아가구 | 40.2 | 8.5 | 44.5 | 6.0 | 0.2 | 0.2 | 100.0(600) |
| 지원계층 | | | | | | | |
| 100% 이하 | 19.5 | 7.3 | 63.4 | 9.8 | 0.0 | 0.0 | 100.0(41) |
| 120% 이하 | 35.3 | 12.2 | 46.8 | 5.1 | 0.0 | 0.0 | 100.0(156) |
| 130% 이하 | 22.6 | 3.2 | 67.7 | 3.2 | 0.0 | 0.0 | 100.0(31) |
| 150% 이하 | 46.9 | 8.3 | 39.0 | 4.7 | 0.4 | 0.4 | 100.0(254) |
| 180% 이하 | 44.1 | 5.9 | 40.7 | 9.3 | 0.0 | 0.0 | 100.0(118) |
| X ² (df) | 37.49(24)* | | | | | | |
| 월가구소득 | | | | | | | |
| 150만원 이하 | 28.2 | 5.1 | 59.0 | 7.7 | 0.0 | 0.0 | 100.0(39) |
| 151~180만원 | 29.4 | 8.8 | 52.2 | 8.8 | 0.0 | 0.0 | 100.0(136) |
| 181~200만원 | 51.4 | 8.1 | 35.8 | 2.9 | 0.6 | 0.6 | 100.0(173) |
| 201~230만원 | 36.9 | 9.1 | 46.6 | 6.8 | 0.0 | 0.0 | 100.0(176) |
| 231만원 이상 | 47.4 | 9.2 | 38.2 | 5.3 | 0.0 | 0.0 | 100.0(76) |
| X ² (df) | 31.09(24) | | | | | | |
| 가슴아동(첫째아)연령 | | | | | | | |
| 만0세 | 52.0 | 5.3 | 37.3 | 5.3 | 0.0 | 0.0 | 100.0(150) |
| 만1세 | 44.0 | 12.0 | 36.0 | 6.7 | 0.0 | 0.0 | 100.0(75) |
| 만2세 | 38.7 | 8.0 | 44.0 | 5.3 | 0.0 | 1.3 | 100.0(75) |
| 만3세 | 38.0 | 8.0 | 45.0 | 8.0 | 1.0 | 0.0 | 100.0(100) |
| 만4세 | 31.0 | 9.0 | 55.0 | 5.0 | 0.0 | 0.0 | 100.0(100) |
| 만5세 이상 | 32.0 | 11.0 | 51.0 | 6.0 | 0.0 | 0.0 | 100.0(100) |
| X ² (df) | 42.86(30)* | | | | | | |
| 저소득 0세아가구 | 49.2 | 7.0 | 38.5 | 4.3 | - | - | 100.0(187) |
| 지원계층 | | | | | | | |
| 100%이하 | 15.4 | 7.7 | 69.2 | 7.7 | - | - | 100.0(13) |

| 구분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사 | 부모님, 남편, 지자체 산후도우미 | 가족 혼자서 산후도우미 | 산후도우미 |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사 | 계(수) |
|---------------------|------------------------|-------|--------------------|--------------|-------|--------------|------------|
| 120%이하 | 39.5 | 13.2 | 42.1 | 2.6 | - | 2.6 | 100.0(38) |
| 130%이하 | 33.3 | 0.0 | 66.7 | 0.0 | - | 0.0 | 100.0(6) |
| 150%이하 | 57.8 | 7.2 | 32.5 | 1.2 | - | 1.2 | 100.0(83) |
| 180%이하 | 53.2 | 2.1 | 34.0 | 10.6 | - | 0.0 | 100.0(47) |
| X ² (df) | 23.86(16) ⁺ | | | |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사업은 전국 평균 가구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지도는 57.0%, 인지하고 있는 대상중 신청률 38.9%, 신청자 중 적격판정률 72.9%, 이 중 실제 이용률 90.7%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걸러지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가구 전체에 비해 사업 당사자인 0세아 가구의 인지도와 실제 이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진행 비율

단위: %(명)

| 구분 | 응답 | |
|-----------|---------------------|-------------------|
| | 전체 영유아가구 (N=600) | 0세아 가구 (N=187) |
| 인지도 | | |
| -알고있었음 | 57.0 | 65.2 |
| 신청률 | | |
| -신청한 적 있음 | 38.9 | 45.1 |
| 적격 판정률 | | |
| -적격판정받음 | 72.9 | 76.4 |
| 이용률 | | |
| -실제 이용함 | 90.7 | 90.5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지원이 육아필수재 기저귀·분유 품목 지원과 동일한 특성을 갖지 않으나, 동일한 대상을 지원하는 유사 바우처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 초기의 인지도, 신청 및 적격 판정의 과정, 실제 이용률의 설계에 참조 가능한 부분이 있다. 사업 설계에서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신청 및 판정 절차의 체계화, 대상 규모 파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3. 육아지원정책 수요 및 육아품목 지원에 대한 의견

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필요성

기저귀·조제분유 지출이 자녀양육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기저귀 96.3%, 분유 87.0%로 높게 나타났다.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기저귀 90.0%, 분유 83.8%로 높게 나타났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출이 (전혀+거의) 부담되지 않는다 기저귀 분유 각각 3.7%, 13.0%로 나타났으며, 국가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0%, 16.2%로 나타나 저소득가구내에서도 기저귀 분유 현물지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약 10% 이상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1〉 기저귀·분유 지출이 자녀양육에 부담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 전혀 부담되지 않음 | 거의 부담되지 않음 | 약간 부담됨 | 매우 부담됨 | 계(수) |
|-------|------------|------------|--------|--------|------------|
| 영유아가구 | | | | | |
| 기저귀 | 1.7 | 2.0 | 40.8 | 55.5 | 100.0(600) |
| 분유 | 6.8 | 6.2 | 34.3 | 52.7 | 100.0(600) |
| 0세아가구 | | | | | |
| 기저귀 | 1.6 | 2.1 | 41.2 | 55.1 | 100.0(187) |
| 분유 | 8.0 | 9.6 | 34.2 | 48.1 | 100.0(187)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3-2〉 기저귀·분유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 필요함 | 필요하지 않음 | 계(수) |
|-----|------|---------|------------|
| 기저귀 | 90.0 | 10.0 | 100.0(600) |
| 분유 | 83.8 | 16.2 | 100.0(600)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0세아 대상으로 생후 12개월간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바우처카드’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 배달 또는 수령하는 방식에 대한 수요도

약 10% 이상 응답되어, 직접 수령 및 배달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3〉 기저귀·조제분유 적정 지원방식

단위: %(명)

| 구분 | 현금지급 | 바우처카드 지급 | 현물 자택수취 | 현물 특정지원 처에서 수령 | 구입시 할인 | 모름/ 무응답 | 계(수) |
|-------|------|-------------|------------|-------------------|-----------|------------|------------|
| 영유아가구 | | | | | | | |
| 기저귀 | 65.2 | 24.2 | 8.5 | 2.0 | 0.2 | - | 100.0(600) |
| 조제분유 | 61.7 | 27.5 | 7.3 | 2.8 | 0.2 | 0.5 | 100.0(600) |
| 0세아가구 | | | | | | | |
| 기저귀 | 71.7 | 16.6 | 10.2 | 1.6 | - | - | 100.0(187) |
| 조제분유 | 66.8 | 21.4 | 9.1 | 2.1 | - | 0.5 | 100.0(187)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에 대해, 자녀 월령 24개월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후 36개월까지, 12개월까지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매월 주기로 지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분기별 지급에 대한 의견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기저귀·조제분유 적정 지원기간

단위: %(명)

| 구분 | 생후6개월까지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모름/ 무응답 | 계(수) |
|-------|---------|------|------|------|------------|------------|
| 영유아가구 | | | | | | |
| 기저귀 | 4.0 | 19.0 | 43.3 | 33.7 | - | 100.0(600) |
| 조제분유 | 5.3 | 42.0 | 30.2 | 22.0 | 0.5 | 100.0(600) |
| 0세아가구 | | | | | | |
| 기저귀 | 3.7 | 22.5 | 40.6 | 33.2 | - | 100.0(187) |
| 조제분유 | 7.5 | 41.7 | 28.3 | 21.9 | 0.5 | 100.0(187)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3-5〉 기저귀·조제분유 적정 지원주기

단위: %(명)

| 구분 | 생후 1달 이내 1회 | 매 주 | 매 월 | 매 분기 | 매 6개월 마다 | 1년분 한꺼번에 | 모름/ 무응답 | 계(수) |
|-------|----------------|-----|------|------|-------------|-------------|------------|------------|
| 영유아가구 | | | | | | | | |
| 기저귀 | 5.2 | 4.3 | 74.8 | 10.2 | 4.2 | 1.3 | - | 100.0(600) |
| 조제분유 | 5.0 | 8.7 | 68.7 | 12.2 | 3.5 | 1.7 | 0.3 | 100.0(600) |
| 0세아가구 | | | | | | | | |
| 기저귀 | 6.4 | 2.7 | 74.9 | 11.2 | 4.3 | 0.5 | - | 100.0(187) |
| 조제분유 | 5.3 | 5.9 | 70.6 | 13.4 | 3.7 | 0.5 | 0.5 | 100.0(187)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기저귀·조제분유 중 한 가지만 지원할 경우, 기저귀 지원에 대한 선호가 분유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았다.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저귀 지원 선호가 더 많았으며, 분유에 대한 지원 의견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대상 육아필수재 지원에서 기저귀 품목이 가장 실효성이 높은 품목임을 보여준다.

〈표 III-3-6〉 기저귀/분유 중 한 가지 물품 지원 시, 지원받고 싶은 물품

단위: %(명)

| 구분 | 기저귀 | 조제분유 | 계(수) |
|---------------------|------|----------|------------|
| 전체 | 77.0 | 23.0 | 100.0(600) |
| 지원계층 | | | |
| 100% 이하 | 80.5 | 19.5 | 100.0(41) |
| 120% 이하 | 78.8 | 21.2 | 100.0(156) |
| 130% 이하 | 87.1 | 12.9 | 100.0(31) |
| 150% 이하 | 78.7 | 21.3 | 100.0(254) |
| 180% 이하 | 66.9 | 33.1 | 100.0(118) |
| X ² (df) | | 9.53(4)* | |
| 영유아가구 | | | |
| 영아(만0~2세) | 80.1 | 19.9 | 100.0(272) |
| 유아(만3~5세) | 74.4 | 25.6 | 100.0(328) |
| X ² (df) | | 2.78(1)*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실제 한번이라도 천 기저귀 사용 경험은 약 28%로 낮게 나타난 가운데, 기저귀 지원 시, 1회용과 천 기저귀간의 조합에 대한 조사한 결과, 천기저귀 혼합사용에 대한 의견이 전체 3.3%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1회용 기저귀 지원을 선호하였다. 천 기저귀 지원 시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하였다. 모유수유 장려와 달리, 천 기저귀 병행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3-7〉 천 기저귀 사용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 사용해본 적 없음 | 사용해본 경험 있으나 현재 사용 안함 | 현재 사용 중임 | 계(수) |
|-------|-----------|----------------------|----------|------------|
| 영유아가구 | 72.0 | 27.5 | 0.5 | 100.0(600)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3-8〉 희망하는 기저귀 지원 종류

단위: %(명)

| 구분 | 천 기저귀만 | 일회용 기저귀만 | 천기저귀+일회용 | 계(수) |
|-------|--------|----------|----------|------------|
| 영유아가구 | 0.5 | 96.7 | 2.8 | 100.0(600)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3-9〉 천 기저귀 지원 시, 사용 의향 여부

단위: %

| 구분 | 사용함 | 사용하지 않음 | 계(수) |
|-------|------|---------|------------|
| 영유아가구 | 11.3 | 88.7 | 100.0(600)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3-10〉 천 기저귀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 불편하여 사용 어렵다 | 일회용과 병행사용 | 적극 장려 | 수거 세탁 후 다시 배달 | 물 값이 더 나간다 | 모름/무응답 | 계(수) |
|-------|----------------|--------------|-------|------------------|---------------|--------|------------|
| 영유아가구 | 81.5 | 14.8 | 2.7 | 0.2 | 0.2 | 0.7 | 100.0(600)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모유수유 경험을 조사한 결과, 과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약 87%의 가구에서 모유수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유수유를 전혀 한 적이 없는 비율은 14.2%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92.3%), 그리고 0세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90.6%)에서 모유수유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저소득 0세아 가구 대상 분유 지원의 요건을 의학적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모 부재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3-11〉 모유수유 경험 여부(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현재 모유수유 중 | 과거 모유수유 함 | 모유수유 한 적 없음 |
|-----------|-----------|-----------|-------------|
| 전체 | 18.5 | 68.5 | 14.2 |
| 월가구소득 | | | |
| 150만원 이하 | 25.6 | 66.7 | 7.7 |
| 151~180만원 | 18.4 | 69.1 | 14.0 |
| 181~200만원 | 15.6 | 69.4 | 15.0 |
| 201~230만원 | 19.9 | 65.9 | 17.0 |
| 231만원 이상 | 18.4 | 72.4 | 9.2 |

기준아동(첫째아)연령

| 구분 | 현재 모유수유 중 | 과거 모유수유 함 | 모유수유 한 적 없음 |
|--------|-----------|-----------|-------------|
| 만0세 | 49.3 | 41.3 | 9.3 |
| 만1세 | 20.0 | 62.7 | 17.3 |
| 만2세 | 4.0 | 77.3 | 20.0 |
| 만3세 | 9.0 | 87.0 | 8.0 |
| 만4세 | 5.0 | 80.0 | 16.0 |
| 만5세 이상 | 5.0 | 77.0 | 19.0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대상에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모유가 생산되지 않아서/모유량이 적어서, 그리고 약 복용과 질병때문이라는 기능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모유수유를 하고 싶지 않아서의 개인적인 선호의 이유는 거의 응답되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유수유가 어려운 비율이 약 7.7~9.3%로 나타난다.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유량이 생산되지 않아서/적어서의 응답이 많은 것은, 실제 신체적·의학적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비율이라기 보다 출산 이후 시기적으로 때를 놓치거나 모유수유를 하기 어려운 상황, 모의 특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서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모유수유 경험이 약 86%인 점을 고려할 때, 본 분유 지원 사업은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는 교육 및 캠페인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대상 선정의 타당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3-12〉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 모유가 생산되지 않아서 | 모유량이 적어서 | 약 복용/질병때문 | 취업 등으로 모유수유가 여의치 않음 | 젖몸살이 심해서 | 아기가 양수 먹고 태어나서 병원에 있었음 | 하고 싶지 않아서 | 계(수) |
|-------|--------------|----------|-----------|---------------------|----------|------------------------|-----------|-----------|
| 영유아가구 | | | | | | | | |
| 1순위 | 51.8 | 31.8 | 9.4 | 4.7 | 1.2 | 1.2 | - | 100.0(85) |
| 2순위 | 18.1 | 50.0 | 20.8 | 4.2 | - | - | 6.9 | 100.0(72) |
| 1+2순위 | 67.1 | 74.1 | 27.1 | 8.2 | 1.2 | 1.2 | 5.9 | - |
| 0세아가구 | | | | | | | | |
| 1순위 | 52.9 | 41.2 | - | 5.9 | - | - | - | 100.0(17) |
| 2순위 | 16.7 | 33.3 | 16.7 | 8.3 | - | - | 25.0 | 100.0(12) |
| 1+2순위 | 67.1 | 74.1 | 27.1 | 8.2 | 1.2 | 1.2 | 5.9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로, 불편하여 사용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8.7% (7.0%) 로 나타났으며, 어려워도 병행이용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로 91.3% (93.1%)로 나타났다.

〈표 III-3-13〉 모유수유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 너무 불편하여 사용이 매우 어렵다 | 어렵지만, 장점이 있으므로 분유와 병행 | 적극 장려, 조제분유 사용량 줄이기 | 계(수) |
|-------|-----------------------|--------------------------|------------------------|------------|
| 영유아가구 | 8.7 | 53.8 | 37.5 | 100.0(600) |
| 0세아가구 | 7.0 | 57.8 | 35.3 | 100.0(187)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다. 영유아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육아지원 수요 파악

저소득 영유아가구에서 현재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특히 자녀양육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순위 중복응답을 기준으로) '생활비/생계비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다.

일하지 못함(실업)과 주거비 상승의 응답과 합쳐지면 1순위 응답 기준 46.7% (중복응답기준 약 97.7%) 그 비중이 더욱 크다.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비 부족'과 '육아자체의 힘들/어려움', 네 번째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이 응답되었다. 생활/생계비의 부족에 기저귀·분유 비용을 포함하여 자녀 양육비의 부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3-14〉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단위: %(명)

| 구분 | 저소득 영유아가구 | | | 저소득 0세아가구 | | |
|-----------------------|------------|------------|-------|------------|------------|-------|
|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 ① 건강·영양상의 문제 | 8.5 | 6.3 | 14.7 | 11.8 | 7.7 | 19.3 |
| ② 사회심리적 정서(우울감, 불안 등) | 4.7 | 7.6 | 12.2 | 3.7 | 10.4 | 13.9 |
| ③ 생활비/생계비의 부족 | 28.2 | 25.3 | 53.0 | 23.5 | 25.8 | 48.7 |
| ④ 자녀 교육비의 부족 | 16.3 | 20.2 | 36.2 | 10.7 | 11.0 | 21.4 |
| ⑤ 육아로 인한 힘들/어려움 | 22.2 | 12.4 | 34.3 | 26.2 | 17.0 | 42.8 |
| ⑥ 일하지 못함/실업 | 4.5 | 11.9 | 16.2 | 5.3 | 9.9 | 15.0 |
| ⑦ 주거비 상승/주거 불안 | 14.0 | 14.7 | 28.5 | 16.0 | 14.8 | 30.5 |
| ⑧ 기타 | - | 0.2 | 0.2 | - | - | - |
| 없음 | 1.7 | 1.5 | 3.2 | 2.7 | 3.3 | 5.9 |
| 계(수) | 100.0(600) | 100.0(590) | - | 100.0(187) | 100.0(182)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0세아 가구의 경우, 자녀연령이 어림으로 인해 '생활비/생계비 부족', '육아의 힘들/어려움', '주거비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의 순으로 응답되었고, '자녀 교육비 부족'은 '건강·영양상의 문제'와 유사하게 4~5순위로 응답되었다. 한편 건강·영양상의 문제와 우울감과 불안 등 사회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육아자체의 힘들과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영유아 가구보다 0세아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육아 관련 심리적·물리적 지원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영유아가구와 0세아가구에서 공통적으로 현재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대비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건강·영양 지원', '생활비/생계비 지원'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대한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가장 크게 체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양플러스 등 건강·영양·의료 위주의 영유아 지원체계에 대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15〉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부분

단위: %(명)

| 구분 | 저소득 영유아가구 | | | 저소득 0세아가구 | | |
|-----------------------|------------|------------|-------|------------|------------|-------|
|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 ① 건강·영양상의 문제 | 15.3 | 11.2 | 23.2 | 18.2 | 12.3 | 26.7 |
| ② 사회심리적 정서(우울감, 불안 등) | 3.8 | 8.8 | 10.0 | 2.1 | 8.5 | 8.0 |
| ③ 생활비/생계비의 부족 | 13.0 | 11.2 | 20.8 | 13.4 | 13.1 | 22.5 |
| ④ 자녀 교육비의 부족 | 26.5 | 18.9 | 39.7 | 26.7 | 16.9 | 38.5 |
| ⑤ 육아로 인한 힘들/어려움 | 5.5 | 10.0 | 12.5 | 5.9 | 6.2 | 10.2 |
| ⑥ 일하지 못함/실업 | 2.5 | 8.1 | 8.2 | 2.1 | 9.2 | 8.6 |
| ⑦ 주거비 상승/주거 불안 | 2.5 | 9.3 | 9.0 | 1.1 | 10.0 | 8.0 |
| ⑧ 기타 | 0.7 | 0.2 | 0.8 | - | - | - |
| 없음 | 30.2 | 22.2 | 45.7 | 30.5 | 23.8 | 47.1 |
| 계(수) | 100.0(600) | 100.0(419) | | 100.0(187) | 100.0(130)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저소득 영유아가구에서 자녀양육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의 육체적 피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육아 자체의 어려움(3순위), 육아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상황(4순위), 그리고 일하는 경우 양육시간과 여력의 부족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5순위)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0세아 가구에서도 동일한 응답 순위를 보이는 가운데, 육아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육아자체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률이 다소 많았다.

〈표 III-3-16〉 영유아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단위: %(명)

| 구분 | 저소득 영유아가구 | | | 저소득 0세아가구 | | |
|--|------------|------------|-------|------------|------------|-------|
|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 ① 육체적 피로 | 24.5 | 17.4 | 41.8 | 30.5 | 20.5 | 50.8 |
| ② 사회심리적 정서(우울감 또는 고립감) | 5.5 | 7.4 | 12.8 | 3.2 | 8.1 | 11.2 |
| ③ 경제적 부담 | 38.0 | 21.8 | 59.7 | 34.2 | 20.5 | 54.5 |
| ④ 육아(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일) 자체의 어려움 | 14.7 | 16.1 | 30.7 | 17.1 | 18.9 | 35.8 |
| 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보내는 등) 아이 교육을 많이 못 시키는 것 | 4.2 | 7.9 | 12.0 | 1.6 | 3.2 | 4.8 |
| ⑥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시간/여력의 부족) | 5.0 | 12.7 | 17.7 | 4.8 | 11.4 | 16.0 |
| ⑦ 육아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상황 | 7.7 | 14.9 | 22.5 | 7.5 | 16.2 | 23.5 |
| ⑧ 기타 | - | 0.2 | 0.2 | - | - | - |
| 없음 | 0.5 | 1.7 | 2.2 | 1.1 | 1.1 | 2.1 |
| 계(수) | 100.0(600) | 100.0(597) | - | 100.0(187) | 100.0(185)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저소득 영유아가구에서 자녀양육 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대비 현재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육아자체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아이 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대한 종일제 지원의 정책적 효과가 반영된 응답으로 나타났다.

〈표 III-3-17〉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부분

단위: %(명)

| 구분 | 저소득 영유아가구 | | | 저소득 0세아가구 | | |
|--|-----------|----------|-------|-----------|----------|-------|
|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 ① 육체적 피로 | 6.2 | 5.7 | 9.5 | 5.3 | 5.6 | 8.6 |
| ② 사회심리적 정서(우울감 또는 고립감) | 3.8 | 10.5 | 10.0 | 5.3 | 13.9 | 13.4 |
| ③ 경제적 부담 | 24.0 | 12.2 | 31.2 | 21.4 | 14.8 | 29.9 |
| ④ 육아(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일) 자체의 어려움 | 7.5 | 15.1 | 16.3 | 9.1 | 11.1 | 15.5 |
| 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보내는 등) 아이 교육을 많이 못 시키는 것 | 7.0 | 11.1 | 13.5 | 7.5 | 10.2 | 13.4 |
| ⑥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시간/여력의 부족) | 4.0 | 12.8 | 11.5 | 3.7 | 11.1 | 10.2 |
| ⑦ 육아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상황 | 5.5 | 9.4 | 11.0 | 5.3 | 9.3 | 10.7 |
| ⑧ 기타 | 0.7 | 0.9 | 1.2 | - | 0.9 | 0.5 |
| 없음 | 41.3 | 22.4 | 54.5 | 42.2 | 23.1 | 55.6 |
| 계(수) | 100(600) | 100(352) | - | 100(187) | 100(108)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표 III-3-18〉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 가장 지원이 안되는 부분

단위: %(명)

| 구분 | 저소득 영유아가구 | | | 저소득 0세아가구 | | |
|--|------------|------------|-------|------------|------------|-------|
|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 ① 육체적 피로 | 12.0 | 10.5 | 22.2 | 13.4 | 9.8 | 23.0 |
| ② 사회심리적 정서(우울감 또는 고립감) | 10.7 | 11.1 | 21.3 | 11.8 | 12.0 | 23.5 |
| ③ 경제적 부담 | 29.2 | 12.4 | 41.2 | 28.9 | 12.6 | 41.2 |
| ④ 육아(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일) 자체의 어려움 | 9.2 | 11.9 | 20.7 | 9.1 | 13.1 | 21.9 |
| 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보내는 등) 아이 교육을 많이 못 시키는 것 | 6.2 | 11.2 | 17.0 | 5.3 | 9.3 | 14.4 |
| ⑥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시간/여력의 부족) | 14.0 | 14.5 | 28.0 | 15.0 | 16.4 | 31.0 |
| ⑦ 육아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상황 | 15.0 | 23.8 | 38.0 | 14.4 | 25.1 | 39.0 |
| ⑧ 기타 | 0.3 | - | 0.3 | - | - | - |
| 없음 | 3.5 | 4.5 | 7.8 | 2.1 | 1.6 | 3.7 |
| 계(수) | 100.0(600) | 100.0(579) | | 100.0(187) | 100.0(183)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한편, 자녀양육 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대비 현재 가장 지원이 안되는 부분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육아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상황'과 일하는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가장 컸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녀양육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표 III-3-19〉 자녀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경우, 감소된 부담만큼 지출이 예상되는 분야

단위: %(명)

| 구분 | 저소득 영유아가구 | | | 저소득 0세아가구 | | |
|--------------------------|-----------|------|-------|-----------|------|-------|
|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 ① 가족 식비 | 11.8 | 7.0 | 18.8 | 11.8 | 8.6 | 20.3 |
| ② 가족 의료비 | 3.5 | 4.0 | 7.5 | 3.2 | 2.2 | 5.3 |
| ③ 생활비 전반 | 37.3 | 20.0 | 57.2 | 41.7 | 19.4 | 61.0 |
| ④ 자녀 교육비 | 13.7 | 19.1 | 32.7 | 9.1 | 17.7 | 26.7 |
| ⑤ 자녀 돌봄비용 | 3.0 | 7.2 | 10.2 | 2.7 | 9.1 | 11.8 |
| ⑥ 자녀 육아용품 구입 등 육아비 지출 전반 | 9.3 | 15.3 | 24.5 | 13.9 | 16.1 | 29.9 |
| ⑦ 저축 | 9.8 | 13.9 | 23.7 | 7.0 | 14.5 | 21.4 |
| ⑧ 대출/빚 갚기 | 10.8 | 11.6 | 22.3 | 10.2 | 10.8 | 20.9 |
| ⑨ 기타(아이들 문화비용) | - | 0.2 | 0.2 | - | - |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육아지원이 확대될 경우, 감소한 양육비용 부담이 어떠한 부분으로 지출될지 질문한 결과, '생활비'로 쓰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비', 육아품목 구입의 '양육비 지출'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저축'과 '대출/빚갚기'가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설계가 단기적으로는 품목 제한을 통해 실제 기저귀와 분유 구입비용에 사용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자녀양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생활비 전반에 대한 지출로 전이될 것이라는 응답에 근거할 때, 생활비에는 가구원 공통비용으로서의 자녀 양육비도 포함되어있고 생활비 지출을 통해 양육부담 완화라는 상위목표의 달성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품목 제한을 완화하여 다른 품목의 생활비 지출로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소득 영유아가구의 가처분소득의 향상이 간접적으로 소비 지출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아동수당 도입여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품목제한의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II-3-20〉 현행 영유아자녀 육아지원에서 추가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단위: %(명)

| 구분 | 저소득 영유아가구 | | | 저소득 0세아가구 | | |
|---------------------|-----------|----------|-------|-----------|----------|-------|
|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1순위 | 2순위 | 1+2순위 |
| ① 육아 멘토링 및 상담·교육 지원 | 16.8 | 12.4 | 29.2 | 13.9 | 15.5 | 29.4 |
| ② 건강·영양·의료 지원 | 23.2 | 24.7 | 47.8 | 24.6 | 27.3 | 51.9 |
| ③ 육아공동체 모임 및 품앗이 지원 | 8.3 | 13.0 | 21.3 | 9.6 | 12.8 | 22.5 |
| ④ 문화행사/체험 지원 | 4.5 | 12.7 | 17.2 | 1.6 | 7.0 | 8.6 |
| ⑤ 양육비 지원 | 42.0 | 21.9 | 63.8 | 44.9 | 23.0 | 67.9 |
| ⑥ 긴급상황 돌봄지원체계 | 5.2 | 15.4 | 20.5 | 5.3 | 14.4 | 19.8 |
| 계(수) | 100(600) | 100(599) | | 100(187) | 100(187) | |

자료: 2015 저소득 영유아가구 대상 본 조사 결과.

현행 육아지원 설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양육비 지원이 가장 많이 응답된 가운데, 건강·영양·의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대상 육아멘토링 및 부모교육과 육아상담의 지원, 그리고 영유아부모 육아공동체 모임 및 품앗이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마. 영아 어머니 면담조사 결과

저소득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현재 양육현황과 육아비 지출, 육아필수재 지원에 대한 의견과 기저귀/분유 사용현황 등 0세아 자녀 양육환경이 어떠한지에 총 2회의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저소득 영아 어머니의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과 욕구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다양한 양육 현황 및 양육비 지원 수혜

저소득 가구의 범주내에서도 양육환경에 있어 혼자 키우며 휴직중인 어머니도 있고, 어린이집에 0세 자녀를 맡기거나, 주변 가족들의 도움으로 육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어머니도 있었다. 어머니들 대부분 지자체로부터의 출산축하금 및 양육수당 등을 다양한 주기와 금액으로 지원 받은 경험이 있었다.

“휴직 1년째인 저는 첫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양육수당은 의식주 해결하는 데에 보탬이 되는 수준이고, 구로구로부터 출산축하금 1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A 0세아 어머니)

“첫째아이가 0세이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어요. 아이에게 한 달에 총 60~70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계지출의 30% 정도예요. 저는 양육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몰랐으며,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B 0세아 어머니)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어요. 36개월, 8개월된 아이가 있지만, 어머니가 집앞에 사시고, 큰 동생들 및 남편이 육아를 잘 도와주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가져보려고 해요. 둘째아까지 해서 양육수당은 30~50만원 정도 받고있습니다. 인천시청으로부터 출산축하금을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3만원정도 받았는데, 들어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둘째아이의 경우 30만원까지 준다고 들었어요.”(C 0세아 어머니)

“저는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있으며, 큰아이가 5살, 둘째가 3살, 막내가 이제 14개월이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7명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첫째아이와 둘째아이는 0세일 때, 1달에 보통 31만원 정도 쓴 걸로 기억합니다. 양육수당 형태로 15만원을 받고 있고, 성남시에서 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D1세아 어머니)

2)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현황

조제분유는 1달 소비량이 모유수유를 하면 5-6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만원까지 하고 있으며, 기저귀의 경우 천기저귀를 사용하면 가구당 월 10만원에서부터 자녀사가 많은 경우는 20만원까지 소비하고 있다. 구입처는 대형마트 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셜커머스 형태의 최저가 구매사이트를 이용하고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기저귀 같은 경우, 특히 구매주기가 긴 편인데 대량구매를 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1달 단위 이상인 경우가 있다.

“한 달 분유값은 모유수유와 함께 하기 때문에 5-6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 5개월 이후 종이기저귀를 사용하고 있고, 천기저귀도 사용하고 있지만 한 달에 10~20만원 가까이 기저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A 0세아 어머니)

“분유는 재료만 제공하는 제품(맘0유)를 한달 10만원정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기저귀는 1달 단위로 구입하지는 않고, 1팩 50개 정도를 4팩씩 대량구입 하며, 3팩은 집에서 1팩은 어린이집에 보내야합니다. 소셜 커머스를 통해 10-15만원어치를 구입하여 1달 이상씩 사용합니다.”(B 0세아 어머니)

“분유는 신생아가 처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을 이용하게 됩니다. 둘째아이가 얼마전에 돌이 지났는데, 기저귀와 분유를 포함해서 아이에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30만원 이내예요. 0마트나 대형마트는 너무 비싸서 소셜커머스를 비교하여 대량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C 0세아 어머니)

“아이가 워낙 잘 먹다보니, 분유는 한달에 6-7통을 먹어서 약 20만원, 기저귀는 7만원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D 1세아 어머니)

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현금, 차등지원 선호

첫째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둘째아이 이상을 기르는 어머니들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자체보다는 교육비 성격의 현금지원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였으며, 현물지원이라 할지라도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넷에서 최저가 기저귀 구입은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직접구매를 하고 있는

데, 바우처 이용시 사용처가 제한이 될 것 같네요. 분유 제품의 선택은 산후조리원에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아이가 길들여지기 때문에, 거의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조리원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다양한 제품군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A 0세아 어머니)

“내년에 둘째아이를 낳을 예정이라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B 0세아 어머니)

“두 아이를 키우고 돌아보니, 분유와 기저귀 지원정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오히려 앞으로 늘어나는 아이들 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보육비용보다 교육비용이 더 많은 부담을 주죠. 지원을 받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형태로 지원받는 것이 사용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저귀와 분유지원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C 0세아 어머니)

“기저귀와 분유지원은 현금이 가장 좋으며,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등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인데, 왜냐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D 1세아 어머니)

현행 지원체계 내에서 사각지대와 부적절한 지원 사례를 경험한 내담자의 경우, 예산의 누수를 염려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바라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기저귀 분유와 같은 필수소비재의 부담은 유아기 교육비 부담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필수재 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기대감은 큰 편이며, 다양한 요구와 차등지원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IV. 저소득 영유아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방안

1. 사업 목표 및 특성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발전한 보육료·유아학비 중심의 지원 설계로, 저출산 원인으로 파악된 양육부담 완화의 1차적 목표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의 목적을 갖는다. 앞서 살펴본 가계 양육부담이 소득수준과 발달시기별로 다른 계층/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신생아기 첫 1년의 시기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지원사업의 목표를 첫째, 저출산 완화의 상위 목적을 위해 영유아가구의 가계 양육부담 완화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논의한 가계 소득효과에 의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아 자녀수가 적은 저소득 가구(통계청, 2010)를 대상으로 육아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도를 갖는다 하겠다.

그러나 육아지원정책이 양육부담 완화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그 정책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김은설·문성혁 외, 2014),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영유아와 영유아가구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구체적 목표로 가계 양육부담 완화를 통해 부모에게 '양육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나아가 생애전반에 걸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토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본 사업의 목표를 둘째, '저소득층 양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Healthy Start와 같이 현물지원과 함께 부모교육과 자녀양육 지원을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 내용(심리정서적 지지 포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및 영유아가구 대상 건강·영양·의료 지원과 아동발달 조기 중재사업, 교육복지사업, 그리고 취약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연계하여 이루어 지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지역 중심의 지원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가구 대상 육아지원정책은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

등 비용지원 중심으로 소득계층에 상관없는 보편적 지원과 기존의 취약유형별 아동복지사업으로 설계되어있다. 따라서 저소득 0세아 가구에 대한 육아필수재 지원은 현 육아지원 체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의 보강과 저소득 0세아의 생애 초기 건강한 양육환경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유의한 사업목표를 갖는다. 따라서 셋째, 보편지원 체계 내 선별지원의 보강을 통한 저소득층 양육지원 효과의 증대가 또 다른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간 중복성을 최소화 하고, 보편-선별 지원 간의 연계성을 통한 효과성 제고와 본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과 같은 육아지원 정책이 출산력 제고를 위한 양육부담 완화와 여성취업률의 성과 달성을 사업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양육의 과정이 양질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내용과 질, 환경 중심의 과정적 설계 및 성과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신규로 진입하는 본 사업의 경우, 개별가정의 육아품목 구입비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육아필수재의 공유 대여 사업과 연계·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모유수유와 천기저귀 병행 사용과 같은 영유아가구 대상 양육 문화의 형성과, 취약계층 고유의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하여 전문화 된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마련과 함께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2. 사업 대상 및 규모

육아지원 설계에서 대상의 선정과 규모는 수혜자가 누구까지인가의 '포괄성'과 '접근성'의 이슈를 갖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한 저소득 0세아 대상의 기준과 규모는 1차적으로 기존 연구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중위소득 기준 60% 이하) 0세아를 대상으로 지원함을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 0세아 규모가 연간 출생아 수의 약 1/3 수준으로 그 대상 범위가 넓어, 사업 시행 초기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해가는 설계가 타당하다 하겠다.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대상 규모를 살펴보면, 첫째, 이삼식 외(2013) 연구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까지 지원할 경우 143,386명(연간 출생아수 대비 29.6%), 최저생계비 130% 이하 대상 105,940명(21.9%), 최저생계비 120% 이하 87,453명(18.1%)을 지원 대상 규모로 제시하였다(표 IV-2-1 참조).

둘째, 한성민 외(2014) 연구에서는 동일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할 경우 1회용 기저귀 156,299명, 조제분유 7,815명으로 유사한 규모로 산출하였다.

2개 선행연구 모두 건강보험료 자료를 최저생계비 100%~160% 수준의 월 소득에 상응하도록 역 환산한 후, 미가입·피부양자 비율, 부부가구 비율, 맞벌이가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0세 가구를 산정하였다.

〈표 IV-2-1〉 기저귀·분유 지원대상 규모 기존 산출결과

단위: 가구, 명, %

| 구분 | 2013 선행연구 ¹⁾ | | | 2014 예타검증 ²⁾ |
|-------------------|-------------------------|----------------|-----------------|--|
| | 영아 가구수 | 0세아 수 | 비율 ^주 | 0세아 수 |
| 소득기준 | | | | |
| 최저생계비 160% | 159,334 | 164,018 | 33.9% | |
| 최저생계비 150% | 139,219 | 143,386 | 29.6% | 164,114 |
| 최저생계비 140% | 121,476 | 125,047 | 25.8% | |
| 최저생계비 130% | 102,914 | 105,940 | 21.9% | |
| 최저생계비 120% | 84,955 | 87,453 | 18.1% | |
| 산출 고려 요인 | 다태아비율 적용, 모유수유 불가 | | | 미가입/피부양자, 부부(한부모 제외), 맞벌이, 다태아, 모유수유 불가 |

주: 2012년도 출생아수 484,300명 기준

자료: 1) 이삼식·이현주·최효진·이지혜·기재량·임지영·유재인·박지연·이소영·송리라(2013).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방안 연구. 81p, 113p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한성민·조민혜·유한욱·박태경·김익모(2014).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133p. 보건복지부·한국개발연구원

본 연구 역시 사업추진 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건강보험료에 기초하여 환산된 소득자료에 기초하여 대상규모를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이삼식 외, 2013; 한성민 외, 2014) 에서 논의한대로 공급자 관점의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부담경감, 수혜의 신속성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자료에 기초한

대상 선정의 제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한 소득/자산 평가 및 대상자 선정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해당 가입자와 가구의 소득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공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즉 건강보험 가입 또는 납부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한성민 외, 2014, 129p), 건강보험 자료 추출 과정에서 미가입·미납부의 정보 불충분으로 인한 제외 비율³¹⁾이 존재하므로(임승지 외, 2012, 부록 그림 1 참조) 건강보험 가입 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추정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자발적 소득신고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적게 기재될 가능성이 있고, 소득 외 재산수준에 의해서도 보험료가 결정되는 복잡한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액과 소득간에 1:1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한성민 외, 2014, 8p).

둘째, 건강보험 가입자에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최저생계비 100% 이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대상규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0세아 저소득층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부가구 비율, 맞벌이가구 비율 등의 지원대상 규모 추정에 사용된 파라미터 값들이 저소득층 0세 가구에 대한 값이 아닌 전체 인구에 대한 파라미터 값들을 전제하고 있다. 저소득층 0세 가구 특성에 대한 통계 자료의 한계에 따른 것이거나 저소득층 0세 가구의 특성이 아닌 전체 인구의 파라미터 값을 전제하는 것은 지원대상 규모 추정에 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0세아 및 영유아가구 대상의 통계치를 적용하도록 한다.

넷째, 분유 지원 대상의 경우, 질병과 약물 복용 등으로 의학적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비율(5%)로 파악하였으나, 실제 모 부재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비율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산정에서는 어머니가 없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한부모 부자가족과 조손가족, 시설입소아동을 고려하여 5% + α (모 부재) 비율을 추가하여 산출하였다.

다섯째,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 급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되므로, 기존의 최저생계비 소득

31) 건강보험 DB에서 누락되어 산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비율을 전체 가구의 10.2% 로 봄(임승지 외, 2012).

구간과 신규 적용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함께 참조하였다(부록 4 참조).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고려하여 저소득 0세아 지원대상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규모 산정(1안)

본 연구에서 1안은 기존 두 개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0세아를 피부양자로 포함하고 있는 가입자 수 통계를 활용하였다.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 기간 중 출생아를 포함하고 있는 가입자 372,386사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생계비 100~120% 수준의 월소득에 상응하는 보험료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다음 <표 IV-2-2> 와 같다. 선행연구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 등의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다³²⁾.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규모를 산정하고자 한다.

<표 IV-2-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0세아 포함 가입자 수

단위: 명

| 최저생계비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00% 이하 | 35,377 | 10,210 | 3,591 |
| 100% 초과 110% 이하 | 44,270 | 14,675 | |
| 110% 초과 120% 이하 | 54,082 | 18,718 | |

주: 구간별 누적 가입자수

자료: 건강보험공단 DB 자료(2015년 4월 기준). 부록2 참조

우선, 2015년 4월 기준의 건강보험 가입자 DB에서 추출한 <표 IV-2-2> 를 기준으로 이삼식 외(2013)의 규모 산정 방법과 한성식 외(2014)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산정 방식의 변인을 고려하여 규모를 파악하였다. 첫 번째가 건강보험가입자 수 전체(직장+지역)에 데이터 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라면, 두 번째는 다양한 외생 변수³³⁾를 고려하여 규모를 추정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두 가지 방식

32) 이재민, 의사상자 및 유족, 18세미만 국내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그밖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

을 적용하여 산출한 본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는 다음 <표 IV-2-3> 와 같다.

<표 IV-2-3> 선행연구 방식의 지원 대상 규모

| 최저생계비 | 다태아 비율만 차감 | | | 미가입, 부부/맞벌이, 다태아 비율 모두 적용 ¹ | | |
|--------------|------------|-------|--------|--|-------|--------|
| | 기저귀 | 조제분유 | 합계 | 기저귀 | 조제분유 | 합계 |
| 100% 이하 | 47,091 | 2,355 | 49,446 | 51,268 | 2,563 | 53,831 |
| 100%초과110%이하 | 60,890 | 3,045 | 63,935 | 66,116 | 3,306 | 69,422 |
| 110%초과120%이하 | 75,202 | 3,760 | 78,962 | 81,587 | 4,079 | 85,666 |

주: 다태아 비율은 2013년 기준의 3.3%를 적용함.

자료: 건강보험공단 DB 자료(2015년 4월 기준).

한성민 외(2014)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고려하여 직장가입자를 한부모 가구에 속한 경우, 부부가구에 속하면서 혼자만 가입한 경우,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로 세분화하여 추정하였다. 결국 이 산식은 직장가입자 수를 직장가입가구에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을 곱한 것과 같은데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구 여부와 직장가입 여부가 서로 독립 사건일 때 가능한 것으로 규모 산정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구 비율을 고려하되 전체 직장가입자에서 맞벌이 규모를 차감하고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여 다태아 비율과 건강보험 미가입·미납부 비율을 적용하였다.

[지원 대상 규모 추정 산식]

$$z = (1 + \beta) [(1 + \gamma) \{ (1 - \alpha)x + y \} + w]$$

x : 직장가입자, y : 지역가입자, w : 의료수급자, z : 지원대상

α : 맞벌이 가구 비율(0.085), β : 다태아 비율(0.033) γ : 미가입 비율(0.14)

맞벌이 가구 비율은 기존 2014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비율(8.5%)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태아 비율은 2013년 기준 3.3%, 건강보험 미가입·미납부자비율은 금번 건강보험 납부자 자료(372,368명)에서 동기간 출생아 수(437,900명) 대비 반

33) 미가입·피부양자 비율 20%, 한부모 비율 9.5%, 맞벌이가구 비율 8.5%, 다태아 비율 3.3% 적용함.

영되지 않은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대상을 제외한 후 미가입·미납부로 추정되는 정보불충분 제외 비율 14.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표 IV-2-4).

그 결과, 기존 방식을 적용한 규모 대비 다소 증가한 대상자 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동기간 출생아 수 437,900명 대비 누적비율 각 12.3%, 15.7%, 19.2%에 해당하는 0세아 수로, 새로 적용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빈곤율(11.2%)³⁴⁾ 등 관련지표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IV-2-4〉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지원대상 산정결과: 1만

| 최저생계비 | 기저귀 | 조제분유 | 합계 |
|-----------------|--------|-------|--------|
| 100% 이하 | 53,853 | 3,714 | 57,567 |
| 100% 초과 110% 이하 | 68,693 | 4,456 | 73,149 |
| 110% 초과 120% 이하 | 84,027 | 5,222 | 89,249 |

주: 1) 조제분유 지원 규모는 '항암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산모의 비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함. 추가적으로 2015년 2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중 만 0~2세 포함 가구 중 부자 한부모가구와 2012년 아동복지시설 현 원 통계를 활용하여 0세아를 추정한 후 조제분유 지원대상 규모에 포함함.

2) 비율은 동 기간 연간 출생아 수 437,900명 대비임.

3) 조제분유대상아수=기저귀*5%+부자한부모가족(사통망자료)+시설아동수(통계청자료)

이외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체계에 들어와 있더라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취약계층 유형으로 조손가구와 부자 한부모 가구, 시설아동, 입양아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가 연령별로 제시되지 않아 0세에 대한 비율을 파악하기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과제의 지원대상 산정 방식에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 취약계층 유형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각주 29 참조) 기저귀 지원대상 규모에는 별도의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조제분유 지원대상 규모에는 모의 부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부자 한부모가족과 아동복지시설의 0세아를 추가로 고려하여 대상 규모를 파악하였다³⁵⁾.

34) 시장소득에 근거한 중위소득 50% 이하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11.2% (통계청, 2014)

한국의 아동빈곤율 13.4% (유니세프보고서)

한국의 빈곤율: 다차원적 빈곤율 약 13%, 소득빈곤율 약 16.4% (남상호, 2014).

빈곤층 범위의 상대적 기준: 소득분포의 20% 이하(Easterly, 2001), 중위소득의 50% 이하 (OECD), 김미곤 외(2014) 재인용. 그 외 임승지 외 연구결과(2013) 참조

35) '조손가구'의 경우 정확한 0세아 규모 추정이 어렵고, 조손가구 유형은 의료급여 가구유형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지원계층에 중복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분유 지원규모 산정에서 제외함.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사업 자료에 따른 규모 산정(2안)

앞서 살펴본 건강보험료 자료에 기초한 1안의 규모 추정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가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건보료 자료에 기반한 규모추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안으로 동일 사업 대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사업의 자료에 기초하여 규모 추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대상의 모수가 되는 출산가구의 해당 정책 인지도와 사업 신청률, 그리고 관련 부서의 신청에 대한 적합 판정율과 실제 집행률 등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체 모수 대비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여지를 갖고 있다 (건보료에 근거한 소득 판정도 포함됨). 즉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인지와 참여율이 전체 모수에 비해 낮음으로 인해 실제 대상아 수 대비 과소추정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본 연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최대한 이를 보정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2안은 기존 사업 중 지원대상이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규모를 파악하였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지원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는 총 246,704가구로 나타났다(표 IV-2-5 참조).

〈표 IV-2-5〉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월별 판정 대상자 현황

단위: 가구

| 사업월 | 월별 신청 가구수 | 누적 가구수 |
|---------|-----------|----------------|
| 2014/02 | 20,463 | |
| 2014/03 | 20,481 | 40,944 |
| 2014/04 | 21,152 | 62,096 |
| 2014/05 | 21,607 | 83,703 |
| 2014/06 | 21,537 | 105,240 |
| 2014/07 | 20,721 | 125,961 |
| 2014/08 | 21,083 | 147,044 |
| 2014/09 | 21,252 | 168,296 |
| 2014/10 | 20,345 | 188,641 |
| 2014/11 | 19,891 | 208,532 |
| 2014/12 | 19,054 | 227,586 |
| 2015/01 | 19,118 | 246,704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내부자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사업주기가 해당년

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로 가장 최근의 사업주기인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사업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의 월별 건강보험 납부액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적합 판정자의 소득 분포는 다음 <표 IV-2-6> 과 같다.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의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자료는 사업 지원 신청 당시의 정보를 행복e음(가구원수, 보험료)에 연계하여 추출하고, 2014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생계비 구간별 적합 판정자 분포와 이 중 실제 사업 이용자 분포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대한 정보는 없어 직장+지역가입의 혼합 소득기준으로 추정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적합 판정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100% 이하 판정 가구는 30,101 가구이고 이중 실제 사업을 이용한 가구는 23,444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최저생계비 150%까지의 적합 판정 대상 가구는 60,824 가구이고 150%를 초과하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전체 판정 대상 가구는 82,145 가구, 이중 실제 사업은 63,647 가구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적합 판정자의 소득 분포

| 최저생계비 | 적합판정가구 | | 실제이용가구 | |
|-----------------|--------|---------------|--------|---------------|
| | 구간별 | 누적빈도 | 구간별 | 누적빈도 |
| 100% 이하 | 30,101 | 30,101 | 23,444 | 23,444 |
| 100% 초과 110% 이하 | 5,718 | 35,819 | 4,342 | 27,786 |
| 110% 초과 120% 이하 | 6,514 | 42,333 | 5,048 | 32,834 |
| 120% 초과 130% 이하 | 6,943 | 49,276 | 5,372 | 38,206 |
| 130% 초과 140% 이하 | 6,399 | 55,675 | 5,014 | 43,220 |
| 140% 초과 150% 이하 | 5,149 | 60,824 | 4,012 | 47,232 |
| 150% 초과 | 21,321 | 82,145 | 16,415 | 63,647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내부자료 분석 결과.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은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2주) 이용권으로, 기저귀·분유와 같이 보편적으로 양육에 꼭 필요한 육아필수재가 아닌 개인 기호에 따라 이용여부가 나뉘는 선택적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산후조리가 가능한 경우, 이 바우처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적격판정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누락의 가능성이 있어, 이용 가구 기준이 아닌 사업적합판정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 영유아 가구에게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의 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본 사업의 지원대상 규모 산정의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다.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 가구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600명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략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IV-2-6> 결과에 다태아 비율을 적용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모르는 비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³⁶⁾ 지원대상 규모를 <표 IV-2-7> 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 IV-2-7> 지원대상 규모 산정결과: 2안

| 단위: 명 | | | |
|-----------------|----------------|-------|----------|
| 최저생계비 | 기저귀 | 조제분유 | 합계(누적빈도) |
| 100% 이하 | 51,824(11.9%) | 3,612 | 55,436 |
| 100% 초과 110% 이하 | 61,668(14.2%) | 4,104 | 65,772 |
| 110% 초과 120% 이하 | 72,883(16.7%) | 4,665 | 77,548 |
| 120% 초과 130% 이하 | 84,837(19.5%) | 5,263 | 90,100 |
| 130% 초과 140% 이하 | 95,854(22.0%) | 5,814 | 101,668 |
| 140% 초과 150% 이하 | 104,719(24.0%) | 6,257 | 110,976 |

주: 비율은 동 기간 연간 출생아 수 435,700명 대비임.

가용한 건강보험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사업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산출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의 저소득 0세아 수는 다음과 같다.

<표 IV-2-8> 저소득 0세아 수 및 추정치

| 단위: 명 | | | | |
|-------|-----------------|---------|----------------|------------------------|
| 구분 | 활용자료 | 중위소득 대비 | (1안) 건강보험자료 활용 | (2안)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자료 활용 |
| | 100% 이하 | 40% | 57,567 | 55,436 |
| | 100% 초과 110% 이하 | | 73,149 | 65,772 |
| | 110% 초과 120% 이하 | 50% | 89,249 | 77,548 |
| | 120% 초과 130% 이하 | | | 90,100 |
| | 130% 초과 140% 이하 | | | 101,668 |
| | 140% 초과 150% 이하 | 60% | | 110,976 |

주: 구간별 누적빈도임.

36) 전체 사업대상 규모를 1로 할 때 <표 IV-2-6>의 실제 이용가구를 사업대상 규모 중 60% 정도가 이용하였음을 간주하여, 사업대상 규모는 실제이용가구를 0.6으로 나눠 사업인지를 적용하고 다태아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된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만 0세아 수는 57,567명으로,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신청 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한 대상아 수도 55,436명보다 좀 더 많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0세아 수는 89,249명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신청자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는 77,548명으로 건보자료를 활용한 대상규모가 더 많다. 2안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자 및 적격판정자 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시, 본 연구조사에서 파악한 사업 인지도와 실제 이용률의 차감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³⁷⁾. 그 결과 실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추정할 때, 가용한 2안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서비스 신청자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는 110,976명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적을수록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서비스 신청 및 이용률이 더 높은 바우처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안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 사업보다 1안의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대상 규모의 추정을 타당한 것으로 간주, 1안을 근거로 소요예산을 추계하였다. 동일 지원대상을 갖는 두 사업간 규모의 비교를 통해 상호 대상규모 파악의 타당도를 점검하고 사업 신청과 대상 선정 등 일련의 수행 과정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지원 단가

지원단가는 3장 영유아가구 육아비 지출패턴 분석에서 살펴본대로, 수요자 관점의 월평균 기저귀, 분유 구입에 드는 가계지출비용과 공급자 관점에서 대표 브랜드 품목을 선정하여 그 시장가격에 월평균 이용량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가. 공급자 관점의 시장가격

먼저 공급자 관점의 시장가격에 근거한 지원단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본 사업의 지원 단가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선행연구에서 정한 가격수준이 있으

³⁷⁾ 본 설문조사 결과 저소득 0세아가구(N=187)의 65.2% 사업인지를 고려하여 반영

나³⁸⁾, 1~2년 전의 시장가격과 구매패턴에 기초한 것으로 앞으로의 사업진행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적정 기준가격과 지원금액의 산정을 위해 그 간의 영유아가구의 구매패턴과 유통채널의 변화, 시장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여 2015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한다.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지출의 기저에는, (육아지원의 주 대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포함하여)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육아 필수 품목의 수가 너무 많고 각 품목의 시장가격이 상당히 비싸며 매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물가구조의 특성이 존재한다(최윤경 외, 2013, 2014). 따라서 2015년 5월 기준의 기저귀, 분유 시장가격 조사와 2015년 영유아가구의 해당품목 월 지출비용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 단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2015 본 연구 조사 결과

영유아가구의 대표적인 육아 품목군 위주의 육아물가조사 설계가 아닌, 본 연구기간 동안(2015년 6월) 시장에 출시된 다양한 단계별 제품라인을 모두 고려하여 자체 조사한 기저귀·조제분유 시장가격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두 품목의 가격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품목과 조사가격 수집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V-3-1〉 기저귀·조제분유 시장가격 조사 개요

| 구분 | 설명 |
|------|---|
| 조사대상 | 브랜드별 각 제품 기저귀 21개, 조제분유 32개의 정상가격 및 각 제품의 쇼핑물 최저가 5개, 최고가 5개 판매가격 기저귀 판매가격 표본수 273개, 조제분유 판매가격 표본수 269개 |
| 조사기준 | 〈오프라인〉 -정상가격: 정상가격 미제공시, 직영홈페이지 판매(맞춤)가격 이용 〈온라인〉 -쇼핑물가격: 무료배송 가격 기준 (무료배송 제품이 없을 경우, 일부 배송비 포함 가격 이용) |

자료: 2015. 6 시장조사자료

38) 월 평균 온라인 구입 비용: 기저귀 6만8천원, 분유 11만 5천원
월 평균 오프라인 구입 비용: 기저귀 7만5천원, 분유 14만원

〈표 IV-3-2〉 기저귀 단계별 제품 및 기준

| 조사구분 | 시장 브랜드별 기저귀 단계 | | | |
|------|----------------|-------------------------|-----|---------|
| | 하키스 | | 보습이 | |
| 1단계 | 0단계 | 갓 태어난 아기 | 신생아 | ~4.5kg |
| | 1단계 | 한달무렵까지 | | |
| 2단계 | 2단계 | 한달무렵부터 | 소형 | 4-7kg |
| 3단계 | 3단계 | 기거나 잡고 일어서려는 아기(8-11kg) | 중형 | 7-11kg |
| 4단계 | 4단계 | 걷기 시작하는 아기(10-14kg) | 대형 | 10-14kg |
| 제외 | 5단계 | 아장아장 걷는 아기(13-18kg) | 특대형 | 13kg이상 |
| | 6단계 | 잘 뛰고 활동적인 아기(17kg이상) | | |

자료: 2015. 6 시장조사자료

〈표 IV-3-3〉 분유 단계별 제품 및 기준

| 조사구분 | 시장 브랜드별 조제분유 단계 | | | |
|------|-----------------|----------|------|----------|
| | 일동후디스, 남양, 매일유업 | | 파스퇴르 | |
| 1단계 | 1단계 | ~100일 | 스타트 | ~3개월 |
| 2단계 | 2단계 | 100일~6개월 | 1단계 | ~6개월 |
| 3단계 | 3단계 | 6개월~12개월 | 2단계 | 7개월~12개월 |

자료: 2015. 6 시장조사자료

가) 기저귀 가격 (개당)

우선, '기저귀'의 월령별 제품에 대한 가격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령별 4단계 제품라인을 모두 고려하여 21개 가격데이터를 산술평균한 결과, 기저귀 개당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406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4〉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오프라인 가격 기준)

| 기저귀 개당 | 평균가격 | 표준오차 | 최저가 | 단위: 개당 원 |
|----------------------|--------------|-------|-------|----------|
| | | | | 표본수 |
| 〈1단계: 아동몸무게 ~4.5kg〉 | 322.7 | 43.9 | 268.9 | 4 |
| 〈2단계: 아동몸무게 4~7kg〉 | 317.4 | 104.3 | 188.1 | 4 |
| 〈3단계: 아동몸무게 7~11kg〉 | 399.8 | 106.5 | 239.4 | 5 |
| 〈4단계: 아동몸무게 10~14kg〉 | 495.0 | 133.1 | 292.6 | 8 |
| 전체 | 405.7 | 128.5 | 188.1 | 21 |

자료: 2015. 6 시장조사자료

〈표 IV-3-5〉 기저귀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각 5개 제품 정보(오프라인 가격 기준)

단위: 원

| 연번 | 브랜드명 | 제품명 | 팩당 갯수 | 오프라 인가격 (팩당) | 오프라 인가격 (개당) | 오프라인 가격 출처 | 참고 | | |
|--------------------|------|----------------|----------|--------------------|--------------------|---------------|-------------------|-------------------|-----------------|
| | | | | | | | 온라인 가격 (팩당) | 온라인 가격 (개당) | 온라인 가격 출처 |
| ①단계: 아동몸무게 ~4.5kg | | | | | | | | | |
| 1 | 보습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신생아 | 74 | 19,900 | 268.9 | 보습이 mall | 13,230 | 178.8 | 옥션 |
| 2 | 하기스 | 프리미어 1단계 | 70 | 21,700 | 310.0 | 하기스맘큐 | 16,260 | 232.3 | 옥션 |
| 3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0단계 | 70 | 23,800 | 340.0 | 하기스맘큐 | 19,060 | 272.3 | 옥션 |
| 4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1단계 | 64 | 23,800 | 371.9 | 하기스맘큐 | 17,530 | 273.9 | G마켓 |
| ②단계: 아동몸무게 4~7kg | | | | | | | | | |
| 5 | 하기스 | 보송보송 2단계 | 168 | 31,600 | 188.1 | 하기스맘큐 | 32,890 | 195.8 | G마켓 |
| 6 | 보습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소형 | 66 | 19,900 | 301.5 | 보습이 mall | 13,700 | 207.6 | G마켓 |
| 7 | 하기스 | 프리미어 2단계 | 64 | 21,700 | 339.1 | 하기스맘큐 | 14,860 | 232.2 | 옥션 |
| 8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2단계 | 54 | 23,800 | 440.7 | 하기스맘큐 | 17,530 | 324.6 | G마켓 |
| ③단계: 아동몸무게 7~11kg | | | | | | | | | |
| 9 | 하기스 | 보송보송 3단계 | 132 | 31,600 | 239.4 | 하기스맘큐 | 32,890 | 249.2 | 옥션 |
| 10 | 보습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중형 | 56 | 19,900 | 355.4 | 보습이 mall | 13,230 | 236.3 | 옥션 |
| 11 | 하기스 | 프리미어 3단계 | 72 | 30,150 | 418.8 | 하기스맘큐 | 23,290 | 323.5 | G마켓 |
| 12 | 하기스 | 매직팬티 3단계 | 48 | 23,500 | 489.6 | 하기스맘큐 | 16,020 | 333.8 | rsmall |
| 13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3단계 | 52 | 25,800 | 496.2 | 하기스맘큐 | 19,670 | 378.3 | G마켓 |
| ④단계: 아동몸무게 10~14kg | | | | | | | | | |
| 14 | 하기스 | 보송보송 4단계 | 108 | 31,600 | 292.6 | 하기스맘큐 | 32,890 | 304.5 | 옥션 |
| 15 | 보습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대형 | 48 | 19,900 | 414.6 | 보습이 mall | 13,230 | 275.6 | 옥션 |
| 16 | 하기스 | 보송보송 팬티 4단계 | 37 | 15,500 | 418.9 | 하기스맘큐 | 12,920 | 349.2 | G마켓 |
| 17 | 보습이 | 프리미엄 베이비 팬티 대형 | 34 | 14,500 | 426.5 | 보습이 mall | 8,900 | 261.8 | G마켓 |
| 18 | 하기스 | 프리미어 4단계 | 60 | 30,150 | 502.5 | 하기스맘큐 | 21,210 | 353.5 | 옥션 |
| 19 | 하기스 | 매직팬티 4단계 | 40 | 23,500 | 587.5 | 하기스맘큐 | 14,800 | 370.0 | 인터파크 |
| 20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4단계 | 42 | 25,800 | 614.3 | 하기스맘큐 | 19,670 | 468.3 | G마켓 |
| 21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팬티 4단계 | 36 | 25,300 | 702.8 | 하기스맘큐 | 20,730 | 575.8 | 인터파크 |

자료: 2015. 6 시장조사자료

‘기저귀’의 월령별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가격조사에서는, 단계별 제품라인을 모두 고려하여 201개 가격 데이터를 산술평균한 결과, 기저귀 개당 온라인 평균 가격이 34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6〉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온라인 가격 기준)

단위: 개당 원

| 온라인 개당 | 평균가격 | 표준오차 | 최저가 | 표본수 |
|--------------------|--------------|-------|-------|-----|
| ①단계: 아동몸무게 ~4.5kg | 272.4 | 53.3 | 178.8 | 40 |
| ②단계: 아동몸무게 4~7kg | 270.9 | 59.8 | 195.8 | 38 |
| ③단계: 아동몸무게 7~11kg | 331.1 | 62.2 | 236.3 | 45 |
| ④단계: 아동몸무게 10~14kg | 414.0 | 109.8 | 261.8 | 78 |
| 전체 | 340.2 | 103.3 | 178.8 | 201 |

자료: 2015. 6 시장조사자료.

〈표 IV-3-7〉 기저귀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각 5개 제품 정보(온라인 가격 기준)

단위: 원

| 연번 | 브랜드명 | 제품명 | 팩당 개수 | 온라인 가격 (팩당) | 온라인 가격 (개당) | 온라인 가격 출처 | 참고 | | |
|----------------------|------|----------------|-------|-------------|-------------|-----------|--------------|--------------|------------|
| | | | | | | | 오프라인 가격 (팩당) | 오프라인 가격 (개당) | 오프라인 가격 출처 |
| 〈1단계: 아동몸무게 ~4.5kg〉 | | | | | | | | | |
| 1 | 보솜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신생아 | 74 | 13,230 | 178.8 | 옥션 | 19,900 | 268.9 | 보솜이 mall |
| 2 | 보솜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신생아 | 74 | 13,700 | 185.1 | G마켓 | 19,900 | 268.9 | 보솜이 mall |
| 3 | 보솜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신생아 | 74 | 13,850 | 187.2 | 인터파크 | 19,900 | 268.9 | 보솜이 mall |
| 4 | 보솜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신생아 | 74 | 14,160 | 191.4 | 11번가 | 19,900 | 268.9 | 보솜이 mall |
| 5 | 보솜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신생아 | 74 | 14,290 | 193.1 | 11번가 | 19,900 | 268.9 | 보솜이 mall |
| 36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0단계 | 70 | 24,200 | 345.7 | 11번가 | 23,800 | 340.0 | 하기스맘큐 |
| 37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0단계 | 70 | 24,200 | 345.7 | G마켓 | 23,800 | 340.0 | 하기스맘큐 |
| 38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0단계 | 70 | 25,430 | 363.3 | 옥션 | 23,800 | 340.0 | 하기스맘큐 |
| 39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0단계 | 70 | 26,800 | 382.9 | 이마트몰 | 23,800 | 340.0 | 하기스맘큐 |
| 40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0단계 | 70 | 26,800 | 382.9 | SSG.COM | 23,800 | 340.0 | 하기스맘큐 |
| 〈2단계: 아동몸무게 4~7kg〉 | | | | | | | | | |
| 1 | 하기스 | 보송보송 2단계 | 168 | 32,890 | 195.8 | 옥션 | 31,600 | 188.1 | 하기스맘큐 |
| 2 | 하기스 | 보송보송 2단계 | 168 | 32,890 | 195.8 | G마켓 | 31,600 | 188.1 | 하기스맘큐 |
| 3 | 하기스 | 보송보송 2단계 | 168 | 32,900 | 195.8 | 롯데마트몰 | 31,600 | 188.1 | 하기스맘큐 |
| 4 | 하기스 | 보송보송 2단계 | 168 | 33,900 | 201.8 | GS SHOP | 31,600 | 188.1 | 하기스맘큐 |
| 5 | 보솜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소형 | 66 | 13,700 | 207.6 | G마켓 | 19,900 | 301.5 | 보솜이 mall |
| 34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2단계 | 54 | 20,180 | 373.7 | 현대Inmall | 23,800 | 440.7 | 하기스맘큐 |
| 35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2단계 | 54 | 20,350 | 376.9 | rsmall | 23,800 | 440.7 | 하기스맘큐 |
| 36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2단계 | 54 | 20,500 | 379.6 | 11번가 | 23,800 | 440.7 | 하기스맘큐 |
| 37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2단계 | 54 | 20,600 | 381.5 | G마켓 | 23,800 | 440.7 | 하기스맘큐 |
| 38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2단계 | 54 | 20,800 | 385.2 | 11번가 | 23,800 | 440.7 | 하기스맘큐 |
| 〈3단계: 아동몸무게 7~11kg〉 | | | | | | | | | |
| 1 | 보솜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중형 | 56 | 13,230 | 236.3 | 옥션 | 19,900 | 355.4 | 보솜이 mall |
| 2 | 보솜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중형 | 56 | 13,700 | 244.6 | G마켓 | 19,900 | 355.4 | 보솜이 mall |
| 3 | 보솜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중형 | 56 | 13,850 | 247.3 | 인터파크 | 19,900 | 355.4 | 보솜이 mall |
| 4 | 하기스 | 보송보송 3단계 | 132 | 32,890 | 249.2 | G마켓 | 31,600 | 239.4 | 하기스맘큐 |
| 5 | 하기스 | 보송보송 3단계 | 132 | 32,890 | 249.2 | 옥션 | 31,600 | 239.4 | 하기스맘큐 |
| 41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3단계 | 52 | 22,400 | 430.8 | 제로투세븐닷컴 | 25,800 | 496.2 | 하기스맘큐 |
| 42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3단계 | 52 | 22,400 | 430.8 | 보리보리 | 25,800 | 496.2 | 하기스맘큐 |
| 43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3단계 | 52 | 22,700 | 436.5 | 롯데닷컴 | 25,800 | 496.2 | 하기스맘큐 |
| 44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3단계 | 52 | 22,900 | 440.4 | 신세계몰 | 25,800 | 496.2 | 하기스맘큐 |
| 45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3단계 | 52 | 22,900 | 440.4 | SSG.COM | 25,800 | 496.2 | 하기스맘큐 |
| 〈4단계: 아동몸무게 10~14kg〉 | | | | | | | | | |
| 1 | 보솜이 | 프리미엄 베이비 팬티 대형 | 34 | 8,900 | 261.8 | G마켓 | 14,500 | 426.5 | 보솜이 mall |
| 2 | 보솜이 | 프리미엄 베이비 팬티 대형 | 34 | 9,200 | 270.6 | G마켓 | 14,500 | 426.5 | 보솜이 mall |
| 3 | 보솜이 | 프리미엄 천연코튼 대형 | 48 | 13,230 | 275.6 | 옥션 | 19,900 | 414.6 | 보솜이 mall |
| 4 | 보솜이 | 프리미엄 베이비 팬티 대형 | 34 | 9,400 | 276.5 | 옥션 | 14,500 | 426.5 | 보솜이 mall |
| 5 | 보솜이 | 프리미엄 베이비 팬티 대형 | 34 | 9,590 | 282.1 | Akmall | 14,500 | 426.5 | 보솜이 mall |
| 74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팬티 4단계 | 36 | 23,570 | 654.7 | G마켓 | 25,300 | 702.8 | 하기스맘큐 |
| 75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팬티 4단계 | 36 | 23,900 | 663.9 | SSG.COM | 25,300 | 702.8 | 하기스맘큐 |
| 76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팬티 4단계 | 36 | 23,900 | 663.9 | 신세계몰 | 25,300 | 702.8 | 하기스맘큐 |
| 77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팬티 4단계 | 36 | 24,000 | 666.7 | 11번가 | 25,300 | 702.8 | 하기스맘큐 |
| 78 | 하기스 | 네이처메이드 팬티 4단계 | 36 | 24,130 | 670.3 | 옥션 | 25,300 | 702.8 | 하기스맘큐 |
| 〈전체〉 | | | | | | | | | |
| 1 | 보솜이 | 프리미엄 | 74 | 13,230 | 178.8 | 옥션 | 19,900 | 268.9 | 보솜이 mall |

| 연 번 | 브랜드 명 | 제품명 | 팩당 개수 | 온라 인 가격 (팩당) | 온라인 가격 (개당) | 온라인 가격 출처 | 참고 | | |
|--------|----------|--------|----------|-----------------------|-------------------|--------------|---------------------|------------------------|---------------|
| | | | | | | | 오프라 인 가격 (팩당) | 오프 라인 가격 (개당) | 오프라인 가격 출처 |
| 2 | 보습이 | 프리미엄 | 74 | 13,700 | 185.1 | G마켓 | 19,900 | 268.9 | 보습이 mall |
| 3 | 보습이 | 프리미엄 | 74 | 13,850 | 187.2 | 인터파크 | 19,900 | 268.9 | 보습이 mall |
| 4 | 보습이 | 프리미엄 | 74 | 14,160 | 191.4 | 11번가 | 19,900 | 268.9 | 보습이 mall |
| 5 | 보습이 | 프리미엄 | 74 | 14,290 | 193.1 | 11번가 | 19,900 | 268.9 | 보습이 mall |
| 197 | 하키스 | 네이처메이드 | 36 | 23,570 | 654.7 | G마켓 | 25,300 | 702.8 | 하키스맘큐 |
| 198 | 하키스 | 네이처메이드 | 36 | 23,900 | 663.9 | 신세계몰 | 25,300 | 702.8 | 하키스맘큐 |
| 199 | 하키스 | 네이처메이드 | 36 | 23,900 | 663.9 | SSG.COM | 25,300 | 702.8 | 하키스맘큐 |
| 200 | 하키스 | 네이처메이드 | 36 | 24,000 | 666.7 | 11번가 | 25,300 | 702.8 | 하키스맘큐 |
| 201 | 하키스 | 네이처메이드 | 36 | 24,130 | 670.3 | 옥션 | 25,300 | 702.8 | 하키스맘큐 |

자료: 2015. 6 시장조사자료.

나) 분유 가격 (800g 한 통당)

‘분유’의 월령별 4단계 제품라인을 모두 고려하여 32개 가격데이터를 평균한 결과, 분유 한 통당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33,163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8〉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오프라인 가격 기준)

| 단위: 캔당 원 | | | | |
|----------|-----------------|----------|--------|-----|
| 오프라인 캔당 | 평균가격 | 표준오차 | 최저가 | 표본수 |
| 1단계 | 31,800.0 | 10,088.0 | 15,200 | 9 |
| 2단계 | 33,741.7 | 10,869.4 | 15,300 | 12 |
| 3단계 | 33,645.5 | 11,182.3 | 15,400 | 11 |
| 전체 | 33,162.5 | 10,453.4 | 15,200 | 32 |

자료: 2015. 6 시장조사자료.

〈표 IV-3-9〉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정보(오프라인 가격 기준)

| 단위: 원 | | | | | | | | | |
|--------|----------|---------------------------|---------|------------------------|--------------------------|---------------|-------------------|---------------------|--------------|
| 연 번 | 브랜드 명 | 제품명 | 캔당 g | 오프라 인 가격 (캔당) | 오프라 인 가격 (10g당) | 오프라인 가격 출처 | 참고 | | |
| | | | | | | | 온라인 가격 (캔당) | 온라인 가격 (10g당) | 온라인 가격 출처 |
| 〈1단계〉 | | | | | | | | | |
| 1 | 남양 | 아기사랑 수엑스퍼트 1단계 | 750 | 15,200 | 202.7 | 남양 물 | 18,430 | 245.7 | G마켓 |
| 2 | 남양 | 애플루트 명작 1단계 | 800 | 22,800 | 285.0 | 매알아이 | 24,500 | 306.3 | 보리보리 |
| 3 | 남양 | 임페리얼분유 XO ROYAL CLASS 1단계 | 800 | 26,900 | 336.3 | 남양 물 | 28,600 | 357.5 | G마켓 |
| 4 | 일동후디스 | 트루맘 프리미엄 1단계 | 800 | 29,800 | 372.5 | FOODS MALL | 29,800 | 372.5 | 보리보리 |
| 5 | 남양 | 애플루트 유가농 궁 1단계 | 800 | 31,800 | 397.5 | 매알아이 | 31,800 | 397.5 | 제로투세 븐닷컴 |
| 6 | 파스퇴르 | 위드맘 스타트 | 750 | 32,800 | 437.3 | 파스퇴르 | 29,400 | 392.0 | 티몬 |

| 연 번 | 브랜드 명 | 제품명 | 캔당 g | 오프라인 가격 (캔당) | 오프라인 가격 (10g당) | 오프라인 가격 출처 | 참고 | | |
|--------|----------|---------------------------|---------|--------------------|----------------------|---------------|-------------------|---------------------|--------------|
| | | | | | | | 온라인 가격 (캔당) | 온라인 가격 (10g당) | 온라인 가격 출처 |
| 7 | 남양 | 엄마로 태어나다 아이엠마더 1단계 | 800 | 36,900 | 461.3 | 남양 몰 | 36,400 | 455.0 | G마켓 |
| 8 | 일동후디스 | 트루맘 슈퍼프리미엄 쿼 1단계 | 800 | 39,800 | 497.5 | FOODS MALL | 39,800 | 497.5 | 보리보리 |
| 9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1단계 | 900 | 50,200 | 557.8 | 매일아이 | 50,200 | 557.8 | 롯데마트 몰 |
| 10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2단계 | 750 | 15,300 | 204.0 | 남양 몰 | 18,680 | 249.1 | 옥션 |
| 11 | 남양 | 애플루트 명작 2단계 | 800 | 23,100 | 288.8 | 매일아이 | 24,000 | 300.0 | 보리보리 |
| 12 | 파스퇴르 | 그랑노블 1단계 | 740 | 23,500 | 317.6 | 파스퇴르 mall | 18,140 | 245.1 | 현대Hmall |
| 13 | 남양 | 임페리얼분유 XO ROYAL CLASS 2단계 | 800 | 27,200 | 340.0 | 남양 몰 | 29,219 | 365.2 | 홈플러스 |
| 14 | 일동후디스 | 트루맘 프리미엄 2단계 | 800 | 29,800 | 372.5 | FOODS MALL | 25,980 | 324.1 | 롯데몰 |
| 15 | 남양 | 애플루트 유가농 궁 2단계 | 800 | 32,000 | 400.0 | 매일아이 | 36,200 | 452.5 | 동원몰 |
| 16 | 파스퇴르 | 위드맘 1단계 | 750 | 32,800 | 437.3 | 파스퇴르 mall | 25,840 | 344.5 | G마켓 |
| 17 | 남양 | 엄마로 태어나다 아이엠마더 2단계 | 800 | 37,200 | 465.0 | 남양 몰 | 39,820 | 497.8 | 옥션 |
| 18 | 일동후디스 | 트루맘 슈퍼프리미엄 쿼 2단계 | 800 | 39,800 | 497.5 | FOODS MALL | 37,500 | 468.8 | 11번가 |
| 19 | 파스퇴르 | 위드맘 유가농 1단계 | 750 | 45,000 | 600.0 | 파스퇴르 mall | 37,800 | 504.0 | 11번가 |
| 20 | 파스퇴르 | 위드맘 산양분유 1단계 | 750 | 49,000 | 653.3 | 파스퇴르 mall | 37,800 | 504.0 | 11번가 |
| 21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2단계 | 900 | 50,200 | 557.8 | 매일아이 | 53,400 | 593.3 | 11번가 |
| 22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3단계 | 750 | 15,400 | 205.3 | 남양 몰 | 17,880 | 238.4 | 옥션 |
| 23 | 파스퇴르 | 그랑노블 2단계 | 740 | 23,500 | 317.6 | 파스퇴르 mall | 20,300 | 274.3 | 아이베샵 |
| 24 | 남양 | 애플루트 엄마가 만든 명작 3단계 | 800 | 24,500 | 306.3 | 매일아이 | 23,200 | 290.0 | 인터파크 |
| 25 | 남양 | 임페리얼드림 XO WORLD CLASS 3단계 | 800 | 27,500 | 343.8 | 남양 몰 | 23,300 | 291.3 | 11번가 |
| 26 | 일동후디스 | 트루맘 프리미엄 3단계 | 800 | 29,800 | 372.5 | FOODS MALL | 26,820 | 335.3 | 롯데닷컴 |
| 27 | 남양 | 애플루트 원료부터 프리미엄 유가농 궁 3단계 | 800 | 32,600 | 407.5 | 매일아이 | 30,820 | 385.3 | G마켓 |
| 28 | 파스퇴르 | 위드맘 2단계 | 750 | 32,800 | 437.3 | 파스퇴르 mall | 27,490 | 366.5 | 현대Hmall |
| 29 | 일동후디스 | 트루맘 슈퍼프리미엄 쿼 3단계 | 800 | 39,800 | 497.5 | FOODS MALL | 32,880 | 410.4 | Akrmall |
| 30 | 파스퇴르 | 위드맘 유가농 2단계 | 750 | 45,000 | 600.0 | 파스퇴르 mall | 33,990 | 453.2 | 옥션 |
| 31 | 파스퇴르 | 위드맘 산양분유 2단계 | 750 | 49,000 | 653.3 | 파스퇴르 mall | 36,550 | 487.3 | G마켓 |
| 32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3단계 | 900 | 50,200 | 557.8 | 매일아이 | 39,100 | 434.4 | 동원몰 |

자료: 2015. 6 시장조사자료.

‘분유’의 월령별 4단계 제품라인을 고려하여 268개 가격데이터를 산술평균한 결과, 분유 한 통당 온라인 평균 가격이 31,145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0〉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온라인 가격 기준)

단위: 캔당 원

| 온라인 캔당 | 평균가격 | 표준오차 | 최저가 | 표본수 |
|--------|-----------------|---------|--------|-----|
| 1단계 | 31,530.0 | 8,582.9 | 15,280 | 79 |
| 2단계 | 31,222.7 | 8,342.2 | 15,380 | 98 |
| 3단계 | 30,727.7 | 8,862.8 | 15,390 | 91 |
| 전체 | 31,145.2 | 8,566.6 | 15,280 | 268 |

자료: 2015. 6 시장조사자료.

〈표 IV-3-11〉 조제분유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각 5개 제품 정보(온라인 가격 기준)

단위: 원

| 연 번 | 브랜 드명 | 제품명 | 팩당 개수 | 온라인 가격 (캔당) | 온라인 가격 (10g당) | 온라인 가격 출처 | 참고 | | |
|--------|----------|--------------------------|----------|-------------------|---------------------|--------------|---------------------|-----------------------|------------------|
| | | | | | | | 오프라 인 가격 (캔당) | 오프라 인 가격 (10g당) | 오프라인 가격 출처 |
| 〈1단계〉 | | | | | | | | | |
| 1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1단계 | 750 | 15,280 | 203.7 | 옥션 | 15,200 | 2027 | 남양 물 |
| 2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1단계 | 750 | 15,390 | 205.2 | 11번가 | 15,200 | 2027 | 남양 물 |
| 3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1단계 | 750 | 15,480 | 206.4 | G마켓 | 15,200 | 2027 | 남양 물 |
| 4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1단계 | 750 | 15,480 | 206.4 | 옥션 | 15,200 | 2027 | 남양 물 |
| 5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1단계 | 750 | 15,601 | 208.0 | 신세계물 | 15,200 | 2027 | 남양 물 |
| 75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1단계 | 900 | 50,200 | 557.8 | 이마트물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76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1단계 | 900 | 50,200 | 557.8 | 롯데마트물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77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1단계 | 900 | 50,200 | 557.8 | SSG.COM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78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1단계 | 900 | 51,880 | 576.4 | 11번가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79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1단계 | 900 | 53,400 | 593.3 | 11번가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2단계〉 | | | | | | | | | |
| 1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2단계 | 750 | 15,380 | 205.1 | 옥션 | 15,300 | 2040 | 남양 물 |
| 2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2단계 | 750 | 15,390 | 205.2 | 11번가 | 15,300 | 2040 | 남양 물 |
| 3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2단계 | 750 | 15,580 | 207.7 | G마켓 | 15,300 | 2040 | 남양 물 |
| 4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2단계 | 750 | 15,580 | 207.7 | 옥션 | 15,300 | 2040 | 남양 물 |
| 5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2단계 | 750 | 15,705 | 209.4 | 신세계물 | 15,300 | 2040 | 남양 물 |
| 94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2단계 | 900 | 50,200 | 557.8 | 롯데마트물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95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2단계 | 900 | 50,200 | 557.8 | 이마트물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96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2단계 | 900 | 50,200 | 557.8 | SSG.COM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97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2단계 | 900 | 51,880 | 576.4 | 11번가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연 번 | 브랜드 | 제품명 | 팩당 개수 | 온라인 가격 (캔당) | 온라인 가격 (10g당) | 온라인 가격 출처 | 참고 | | |
|-------|-----|------------------------------------|-------|-------------|---------------|-----------|--------------|----------------|------------|
| | | | | | | | 오프라인 가격 (캔당) | 오프라인 가격 (10g당) | 오프라인 가격 출처 |
| 98 | 남양 | 선택 2단계 애플루트 센서티브 현명한 엄마의 선택 2단계 | 900 | 53,400 | 593.3 | 11번가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3단계〉 | | | | | | | | | |
| 1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3단계 | 750 | 15,390 | 205.2 | 11번가 | 15,400 | 205.3 | 남양 물 |
| 2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3단계 | 750 | 15,480 | 206.4 | G마켓 | 15,400 | 205.3 | 남양 물 |
| 3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3단계 | 750 | 15,580 | 207.7 | G마켓 | 15,400 | 205.3 | 남양 물 |
| 4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3단계 | 750 | 15,580 | 207.7 | 옥션 | 15,400 | 205.3 | 남양 물 |
| 5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3단계 | 750 | 15,590 | 207.9 | 11번가 | 15,400 | 205.3 | 남양 물 |
| 87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3단계 | 900 | 50,200 | 557.8 | 이마트몰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88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3단계 | 900 | 50,200 | 557.8 | SSG.COM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89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3단계 | 900 | 50,200 | 557.8 | 롯데마트몰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90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3단계 | 900 | 53,400 | 593.3 | 11번가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91 | 남양 | 애플루트 센서티브 3단계 | 900 | 57,750 | 641.7 | 옥션 | 50,200 | 557.8 | 매일아이 |
| 〈전체〉 | | | | | | | | | |
| 1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1단계 | 750 | 15,280 | 203.7 | 옥션 | 15,200 | 202.7 | 남양 물 |
| 2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2단계 | 750 | 15,380 | 205.1 | 옥션 | 15,300 | 204.0 | 남양 물 |
| 3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2단계 | 750 | 15,390 | 205.2 | 11번가 | 15,300 | 204.0 | 남양 물 |
| 4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3단계 | 750 | 15,390 | 205.2 | 11번가 | 15,400 | 205.3 | 남양 물 |
| 5 | 남양 | 아기사랑 수 엑스퍼트 1단계 | 750 | 15,390 | 205.2 | 11번가 | 15,200 | 202.7 | 남양 물 |
| 164 | 남양 | 엄마로 태어나다 아이앰머더 1단계 | 800 | 34,120 | 426.5 | Akmall | 36,900 | 461.3 | 남양 물 |
| 165 | 남양 | 엄마로 태어나다 아이앰머더 2단계 | 800 | 34,380 | 429.8 | Akmall | 37,200 | 465.0 | 남양 물 |
| 166 | 후디스 | 트루맘 슈퍼프리미엄 쿼 1단계 | 800 | 34,500 | 431.3 | 옥션 | 39,800 | 497.5 | FOODS MALL |
| 167 | 남양 | 애플루트 원료부터 프리미엄 유기농 궁 3단계 | 800 | 34,720 | 434.0 | G마켓 | 32,600 | 407.5 | 매일아이 |
| 168 | 남양 | 애플루트 원료부터 프리미엄 유기농 궁 3단계 | 800 | 35,700 | 446.3 | 옥션 | 32,600 | 407.5 | 매일아이 |

자료: 2015. 6 시장조사자료.

한편, 기저귀·조제분유의 단계별 제품에 대한 이용기간이 생후 1년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월령별 이용기간을 가중평균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3-12~13〉과 같다. 앞서 살펴본 산술평균 가격 결과와 대동소이하나, 전반적으로 가중평균 단가가 근소하게 하락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6월 시장가격 조사 결과, 0세아 기저귀 개당 가중평균 가격이 오프라인 403원, 온라인 337원, 분유 한 통당 가중평균 가격이 오프라인 33,208원, 온라인 31,052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2〉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온·오프라인)

단위: 원

| 출처 | 단위 | 단계별 | 평균가격 | 표준편차 | 최저가 | 표본수 |
|------|-------|--------------------|--------------|-------|--------------|-----|
| 오프라인 | 1개 기준 | 1단계: 아동몸무게 ~4.5kg | 322.7 | 43.9 | 268.9 | 4 |
| | | 2단계: 아동몸무게 4~7kg | 317.4 | 104.3 | 188.1 | 4 |
| | | 3단계: 아동몸무게 7~11kg | 399.8 | 106.5 | 239.4 | 5 |
| | | 4단계: 아동몸무게 10~14kg | 495.0 | 133.1 | 292.6 | 8 |
| | | 전체 | 405.7 | 128.5 | 188.1 | 21 |
| | | 가중평균 | 403.4 | | 246.6 | |
| 온라인 | 1개 기준 | 1단계: 아동몸무게 ~4.5kg | 272.4 | 53.3 | 178.8 | 40 |
| | | 2단계: 아동몸무게 4~7kg | 270.9 | 59.8 | 195.8 | 38 |
| | | 3단계: 아동몸무게 7~11kg | 331.1 | 62.2 | 236.3 | 45 |
| | | 4단계: 아동몸무게 10~14kg | 414.0 | 109.8 | 261.8 | 78 |
| | | 전체 | 340.2 | 103.3 | 178.8 | 201 |
| | | 가중평균 | 336.9 | | 231.1 | |

주: 가중평균= (1단계× 1개월+2단계× 2개월+3단계× 3개월+4단계× 3개월)÷12개월

〈표 IV-3-13〉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온·오프라인)

단위: 원

| 출처 | 단위 | 단계별 | 평균가격 | 표준오차 | 최저가 | 표본수 |
|------|-------|------|-----------------|----------|-----------------|-----|
| 오프라인 | 캔당 기준 | 1단계 | 31,800.0 | 10,088.0 | 15,200 | 9 |
| | | 2단계 | 33,741.7 | 10,869.4 | 15,300 | 12 |
| | | 3단계 | 33,645.5 | 11,182.3 | 15,400 | 11 |
| | | 전체 | 33,162.5 | 10,453.4 | 15,200 | 32 |
| | | 가중평균 | 33,208.2 | | 15,325.0 | |
| 온라인 | 캔당 기준 | 1단계 | 31,530.0 | 8,582.9 | 15,280 | 79 |
| | | 2단계 | 31,222.7 | 8,342.2 | 15,380 | 98 |
| | | 3단계 | 30,727.7 | 8,862.8 | 15,390 | 91 |
| | | 전체 | 31,145.2 | 8,566.6 | 15,280 | 268 |
| | | 가중평균 | 31,052.0 | | 15,360.0 | |

주: 가중평균= (1단계× 3개월+2단계× 3개월+3단계× 6개월)÷12개월

2) KICCE 육아물가조사 결과

〈표 IV-3-14〉와 〈표 IV-3-15〉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KICCE 육아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주요 대표품목 위주의 육아물가조사 결과이다(최윤경 외, 2015 미발간). 2015년 5월 기준 조사 결과로 오프라인의 경우 대형마트, 소형마트, 백화점의 유통채널별 평균 가격이고, 온라인의 경우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여 산출한 평균가격이다³⁹⁾.

39) 자세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육아물가지수 기초 연구」(최윤경·박진아·이세원, 2013) 참조

〈표 IV-3-14〉 2015년 5월 분유 가격

| | | 단위: 원 |
|------|----------------------------------|---------------|
| | 브랜드 | 가격 |
| 오프라인 | 남양아이엠마더 1단계 800g | 36,600 |
| | 남양아이엠마더 3단계 800g | 39,188 |
| | 남양유업임페리얼드립XO ROYAL CLASS 3단계800g | 29,500 |
| | 남양유업임페리얼분유XO 3단계800g | 29,000 |
| | 남양유업아기사랑수S3단계 750g | 15,713 |
| | 매일유업애플솔루트(뉴)명작3단계800g | 26,550 |
| | 일동후디스프리미엄산양분유1단계800g | 55,300 |
| | 파스퇴르그랑노블3단계740g | 26,500 |
| | 파스퇴르위드맘3단계750g | 32,000 |
| 온라인 | 남양아기사랑수3단계 | 17,478 |
| | 남양유업임페리얼분유XO3단계800g | 25,732 |
| | 일동산양분유3단계800g | 47,233 |

자료: 2015 육아몰가지수 연구(III) (최윤경 외, 미발간, 육아정책연구소)

2015년 5월 기준의 분유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크다. 육아 품목의 경우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존재하고 프리미엄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분유의 경우 800g 한통에 최소 15,713원에서 최대 55,300원까지이다. 같은 상품이라도 오프라인 가격 보다 온라인이 가격이 더 싼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영아 가구 부모 면담결과 분유, 기저귀의 온라인 구매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육아 소비재 구입형태로 자리잡았으며, 그 추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분유’의 경우 고가-베스트-저가의 다양한 가격대를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오프라인 매장의 800g 기준 개당 평균 가격은 32,549원이었으며, 동일 제품에 대한 온라인 매장의 분유 개당 평균 가격은 28,811원으로 조사되었다. 저가상품 기준으로는 각각 17,343원, 16,934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IV-3-15〉 2015년 5월 가격대별 분유 가격 조사 결과

| | 오프라인 분유 1통 가격 | 온라인 분유 1통 가격 |
|-------|---------------|--------------|
| 전체 | 32,549 | 28,811 |
| 고가상품 | 50,519 | 40,566 |
| 베스트상품 | 28,000 | 26,843 |
| 저가상품 | 17,343 | 16,934 |

자료: 2015 육아몰가지수 연구(III) (최윤경 외, 미발간, 육아정책연구소)

기저귀 가격은 중형 사이즈를 기준으로 1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오프라인에서

1개당 최소 239원에서 최대 646원이고, 온라인에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주요 품목의 가격을 고가-베스트-저가 상품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가격대를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기저귀'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의 개당 평균 가격은 396원이었으며, 동일 제품에 대한 온라인 매장의 개당 평균 가격은 326원으로 조사되었다. 저가상품 기준으로는 각각 299원, 228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표 IV-3-16〉 2015년 5월 기저귀 가격

| | 품목 | 1개당 가격 |
|------------------------------------|---------------------------------|-------------------------|
| 오프라인 | 2015 보습이 프리미엄 천연코튼 중형-여 56개 | 239 |
| | LG 토디앙 스키니소프트42P | 321 |
| | LG 토디앙 오색황토중형46P | 343 |
| | LG 토디앙 중형남아42p | 381 |
| | 깨끗한 나라 보습이 소프트 순수 중형40p | 345 |
| | 깨끗한 나라 보습이 스키니소프트중형40p | 363 |
| | 깨끗한 나라 보습이 프리미엄천연코튼중형46p | 454 |
| | 깨끗한 나라 보습이 프리미엄천연코튼중형박스96p | 258 |
| | 엄마의 사랑을 담은 우리아기중형36p | 247 |
| | 유한킴벌리(신형) 하기스 네이처메이드4단계남아42p | 646 |
| | 유한킴벌리 하기스 보송보송남아대형40P | 513 |
| | 유한킴벌리 하기스 프리미어2단계남아64P | 335 |
| | 유한킴벌리 하기스 프리미어플러스중형남아72p | 382 |
| | 온라인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3단계 중형-남 52개 |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3단계 중형-여 52개 | | 448 |
| 보습이 소프트 순수 중형 46개 | | 215 |
| 보습이 소프트 파우더 중형 46개 | | 215 |
| 하기스 보송보송 3단계 중형-공용 60개 | | 247 |
| 하기스 프리미어 플러스 3단계 중형-공용 100개 | | 262 |
| 하기스프리미어3단계중형남72개1팩 | | 355 |
| 보습이 소프트 순수 중형 46개 | | 226 |
| 보습이 프리미엄 천연코튼 중형 46개 | | 244 |

자료: 2015 육아물가지수 연구(III) (최윤경 외, 미발간, 육아정책연구소)

〈표 IV-3-17〉 2015년 5월 가격대별 기저귀 가격 조사 결과

| | 단위: 원 | |
|-------|-------------|------------|
| | 오프라인 1개당 가격 | 온라인 1개당 가격 |
| 전체 | 396 | 326 |
| 고가상품 | 505 | 427 |
| 베스트상품 | 391 | 324 |
| 저가상품 | 299 | 228 |

주: 부록 가격데이터 참조

나. 수요자 관점의 가계지출 비용

다음으로 수요자 영유아가구의 가계지출 비용에 근거한 단가 산정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서울시 영유아가구 생계비 조사에서는 영아가구의 월평균 기저귀 구입비용이 7만원, 조제분유 구입비용이 11만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2년 영유아 가구의 생계비 조사는 소득계층 구분 없이 진행된 결과로, 본 과제에서는 2015년 현재 기준의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 저소득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육아필수재에 대한 비용 지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 가구당 기저귀 구입비용은 **7만8천원**으로 나타났고,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은 7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가구의 분유 월평균 구입비용은 **10만원**으로 조사되었고 800g 한통은 평균 8일이면 모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구의 경우, 한 달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기저귀는 210개, 분유는 4통 정도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이용 가구의 해당 품목에 대한 월평균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기저귀 약 7만8천원, 조제분유 약 1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첫째자녀가 0세아인 가구로 국한시키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 지출 비용이 각각 월 8만4천원, 10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이용 영유아가구 전체의 평균 구입비용에 비해 다소 증가한다. 반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의 월 평균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각 6만7천원, 분유 9만3천원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구입비용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표 IV-3-18〉 이용 자녀 1인당 월평균 구입비용 조사 결과

단위: 원

| | 전체 이용가구 자녀 1인당 | 전체 이용가구 첫째 0세아 1인당 | 최저생계비 100% 이하 첫째아 1인당 |
|------|-------------------|-----------------------|--------------------------|
| 기저귀 | 78,000 | 84,000 | 67,000 |
| 조제분유 | 100,000 | 100,000 | 93,000 |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임

다. 지원단가의 산출

2015년 5월 KICCE 육아물가조사와 본 과제의 월령단계별 가격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기저귀(1개)와 분유(1통) 기준 단가를 정리하면 <표 IV-3-21>와 같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유, 기저귀 월령별 상품라인을 고려한 시장가격조사 결과를 <1안>으로 하여 하위 3개(1-1, 1-2, 1-3) 안을 구성하였고, 연구소에서 실시한 대표품목 위주의 KICCE 육아물가조사 결과(최윤경·박진아·배지아, 2015 미발간)를 바탕으로 <2안>의 하위 3개(2-1, 2-2, 2-3) 안을 제시하였다.

상기한대로 <1안>에서는 영유아 발달 시기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각종 브랜드의 단계별 제품의 가격을 모두 반영하여 다양한 상품군의 월령별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월령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가격의 평균(1-1안)을 산출하였으며, 추가로 저가 제품의 평균을 산출하여 저가 평균(1-2안)과 최저가 가격(1-3안)을 제시하였다.

<2안>에서는 육아물가지수 산출을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2015년 5월 육아물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가구에서 사용이 빈번한 대표품목 브랜드를 위주로 저가-베스트-고가 상품으로 구분하고, 전체 영유아 시기에 비례하여 가장 오랜 기간 많이 사용하는 월령(3단계)의 제품 위주로 가격을 조사하였다. KICCE 육아물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영유아가구에서 사용하는 저가-베스트-고가의 브랜드 가격이 반영된 산술평균을 2-1안으로 제시하고, 저가평균 가격을 2-2안, 영유아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베스트상품 가격을 2-3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IV-3-19>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단가 산출

| 구 분 | 본 조사 결과 (월령단계별 제품 모두 반영) | | | 육아물가조사 결과 (대표품목군 위주) | | |
|----------------|-----------------------------|-------------------------------|---------------|-------------------------|------------------|-----------------------------|
| | 전체 가중평균 (1-1안) | 저가군평균 ¹⁾ (1-2안) | 최저가 (1-3안) | 전체 산술평균 (2-1안) | 저가군 평균 (2-2안) | 베스트 대표품목 1개 기준 (2-3안) |
| 분유(1통) | | | | | | |
| 오프라인 | 33,208 | 23,500 | 15,325 | 32,549 | 17,343 | 29,000 |
| 온라인 | 31,052 | 21,500 | 15,360 | 28,811 | 16,934 | 25,000 |
| 기저귀(1개) | | | | | | |
| 오프라인 | 403 | 274 | 247 | 396 | 299 | 380 |
| 온라인 | 337 | 266 | 231 | 326 | 228 | 260 |

주: 1)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단계별 저가군 제품의 평균단가에 월령별 가중치를 적용함.

그 결과, 전체 평균가격의 경우 대표품목 위주의 육아물가조사보다 전체 월령별 제품을 모두 반영한 본 연구 조사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시한 6개 기준의 단가 산출을 고려할 때, 본 조사 산출 결과에서는 저가군 평균(1-2안)이, 육아물가조사 결과에서는 베스트 대표품목 가격(2-3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3-19>와 같이 품목별 기준 가격을 산출하고 영유아 가구에서 소비하는 기저귀, 분유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사업대상인 0세아의 경우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이 8개이고, 분유 800g 한통은 평균 8일이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 달 기준(30일)으로 하여 소비량을 산출하면, 기저귀는 총 240(=8×30)개, 분유는 약 4(=30÷8)통 정도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한 달 소비량은 본 사업의 대상 연령인 0세아에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다양한 상품군의 가격을 반영하여 지원 단가를 산출하고자 한다. 기저귀 240개, 분유 4통의 한 달 소비량은 고정하여 적용하고 위의 <표 IV-3-21>의 품목에 대한 다양한 상품군의 기준 가격을 곱하여 지원단가를 산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IV-3-20>와 같다.

<1안>이 0세아의 12개월 월령단계별 제품 가격을 사용월별로 평균하여 시장 가격의 다양성을 반영한 결과라면, <2안>은 실제 가장 오랜기간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3단계 대표 브랜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후자는 이후 가격 변동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간 단가를 추적 산출하는데 용이하다.

(2-3안)의 경우 영유아가구가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는 베스트 상품의 평균 가격을 지원단가로 정함으로써 평균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전체 상품군의 가격을 대상으로 산출된 (2-1안)과 (1-1안)은 다른 지원 단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본 사업의 목표인 “경제적 양육부담의 완화를 통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조성”에 부합하는 가격기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월별 육아품목 실제 이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의 특성상, 상위수준의 지원단가를 제공하여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애초 지원 목표와 무관한 다른 생활용품 지출로 전이되거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와 소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표 IV-3-20〉 가격조사 결과에 기초한 지원단가 산정 결과

| 단가 산출 기준 | | 품목 | 오프라인 | 온라인 |
|----------|----------|------|-----------------------------|-----------------------------|
| 1-1안 | 월령별 전체 | 기저귀 | 97,000 (≒ 403원 × 240개) | 81,000 (≒337원 × 240개) |
| | | 조제분유 | 133,000 (≒ 33,200원 × 4통) | 124,000 (≒ 31,000원 × 4통) |
| 1-2안 | 월령별 저가군 | 기저귀 | 66,000 (≒274원 × 240개) | 64,000 (≒266원 × 240개) |
| | | 조제분유 | 94,000 (≒ 23,500원 × 4통) | 86,000 (≒ 21,500원 × 4통) |
| 1-3안 | 월령별 최저가 | 기저귀 | 59,000 (≒ 247원 × 240개) | 55,000 (≒231원 × 240개) |
| | | 조제분유 | 61,000 (≒ 15,300원 × 4통) | 61,000 (≒ 15,300원 × 4통) |
| 2-1안 | 대표품목 전체 | 기저귀 | 95,000 (≒ 396원 × 240개) | 78,000 (≒326원 × 240개) |
| | | 조제분유 | 130,000 (≒ 32,500원 × 4통) | 115,000 (≒ 28,800원 × 4통) |
| 2-2안 | 대표품목 저가군 | 기저귀 | 72,000 (≒ 299원 × 240개) | 55,000 (≒228원 × 240개) |
| | | 조제분유 | 69,000 (≒ 17,300원 × 4통) | 68,000 (≒ 16,900원 × 4통) |
| 2-3안 | 대표품목 베스트 | 기저귀 | 91,000 (≒ 380원 × 240개) | 62,000 (≒260원 × 240개) |
| | | 조제분유 | 120,000 (≒ 29,000원 × 4통) | 100,000 (≒ 25,000원 × 4통) |

자료: 1안-본 연구 조사결과, 2안-KICCE 육아물가조사 결과

따라서 이러한 불용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온라인 최저가 위주로 다량 구매하는 현재 영유아가구의 구매패턴을 반영하여 저가 상품군 위주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1-2안과 2-2안이다. 시장에 제공된 최저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 1-3안으로, 저가군 평균의 가격(1-2안)이 최저가와 전체 평균 가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저가상품군의 월령별 가중 평균인 (1-2안)의 경우 저가 대표상품과 최저가 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2-2안)과 (1-3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자 입장에서 상품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4. 사업(안)별 소요예산

가. 소요 예산 추계

산출한 단가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까지 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때 소요되는 기저귀와 분유 지원 예산의 총 규모를 요약하면 다음 <표 IV-4-1>과 같다.

다양한 단가 산정 산식(본 연구 산식, 2014 예비타당도 연구 산식⁴⁰)과 기준자료(건강보험료 자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사업 자료)의 차이를 고려하여, (안)별로 예산 규모에 차이가 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단가 및 산식에 따라 예산규모에 차이가 나는데, 최저생계비 100%까지 본 사업을 시행할 때 소요되는 총 예산은 연간 최소 357억원에서 최대 686억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 규모를 최저생계비 110%까지 확대하면 최소 461억원에서 최대 871억원, 최저생계비 120%까지 확대 시행하면 최소 568억원에서 최대 1,06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산식과 2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소요예산을 추계, 검토한 결과,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2015 건강보험료 자료에 기초하여 KICCE 산식을 적용한 예산 추계를 우선으로 제안한다.

1-2안의 월령단계별 저가군 온라인 평균가격의 단가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식을 적용하여 소요예산을 추계하면, 최저생계비 100%까지 지원할 경우 사업예산은 총 452억원이고,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10%, 120%로 확대할 경우 소요예산도 점차 늘어 각 574억, 699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대상아 수를 추가 반영하고, 건강보험 미가입률을 직장+지역 건강보험 대상아 수 전체에 반영한 차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추정된 KICCE 방식의 예산 소요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비슷한 가운데서도 좀 더 많음을 알 수 있

40) 출처: 한성민 외, 2014.

$$z = (1 + \delta) \left(\frac{1 + \alpha}{1 + \beta\gamma} x + y \right)$$

직장가입자($x = 108,987$), 지역가입자($y = 30,304$),

미가입·피부양자 비율($\alpha = 0.2$), 부부가구 비율($\beta = 0.905$),

맞벌이가구비율($\gamma = 0.085$), 다태아 비율($\delta = 0.03$)

다. 그러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 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실제로 건강관리사 바우처 이용이 더 많은 특성이 반영되어, 지원대상의 최저생계비 구간이 120%까지 확대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소요예산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

<표 IV-4-1> 지원대상 산정방식 및 지원단가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⁴¹⁾

단위: 억원

| 구분 |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 구매처 | 지원 단가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K I C C E 방 식 | 100% 이하 | 온라인 | 579 | 452 | 383 | 555 | 386 | 445 | 487 | 436 | 476 |
| | | 오프라인 | 686 | 468 | 408 | 672 | 496 | 642 | 486 | 486 | 476 |
| | 110%이하 | 온라인 | 734 | 574 | 486 | 704 | 490 | 565 | 617 | 551 | 603 |
| | | 오프라인 | 871 | 594 | 519 | 853 | 630 | 814 | 615 | 615 | 603 |
| | 120%이하 | 온라인 | 894 | 699 | 593 | 859 | 597 | 688 | 751 | 670 | 734 |
| | | 오프라인 | 1061 | 724 | 633 | 1039 | 769 | 993 | 747 | 747 | 734 |
| 예 비 타 당 성 방 식 | 100% 이하 | 온라인 | 536 | 420 | 357 | 515 | 359 | 412 | 511 | 454 | 438 |
| | | 오프라인 | 638 | 435 | 382 | 624 | 464 | 597 | 504 | 504 | 438 |
| | 110%이하 | 온라인 | 692 | 542 | 461 | 664 | 463 | 532 | 659 | 585 | 565 |
| | | 오프라인 | 822 | 561 | 492 | 805 | 599 | 770 | 651 | 651 | 565 |
| | 120%이하 | 온라인 | 854 | 669 | 568 | 820 | 572 | 656 | 813 | 722 | 698 |
| | | 오프라인 | 1015 | 692 | 607 | 994 | 739 | 950 | 803 | 803 | 698 |
| 산 모 신 생 아 도 우 미 | 100% 이하 | 온라인 | 557 | 435 | 368 | 535 | 372 | 429 | 528 | 473 | 458 |
| | | 오프라인 | 661 | 451 | 393 | 647 | 478 | 618 | 527 | 527 | 458 |
| | 110%이하 | 온라인 | 660 | 516 | 437 | 634 | 440 | 508 | 626 | 560 | 543 |
| | | 오프라인 | 783 | 535 | 467 | 767 | 567 | 733 | 624 | 624 | 543 |
| | 120%이하 | 온라인 | 778 | 608 | 515 | 747 | 519 | 598 | 738 | 659 | 638 |
| | | 오프라인 | 923 | 630 | 550 | 904 | 668 | 863 | 734 | 734 | 638 |

주: ①: 지원단가 1-1안 (기저귀 81, 97. 분유 124, 133)
 ②: 지원단가 1-2안 (기저귀 64, 66. 분유 86, 94)
 ③: 지원단가 1-3안 (기저귀 55, 59. 분유 61, 61)
 ④: 지원단가 2-1안 (기저귀 78, 95. 분유 115, 130)
 ⑤: 지원단가 2-2안 (기저귀 55, 72. 분유 68, 69)
 ⑥: 지원단가 2-3안 (기저귀 62, 91. 분유 100, 120)
 ⑦: 지원단가_가구당 월평균 구입 비용 (기저귀 78, 분유 100)
 ⑧: 지원단가_14년 단가 (기저귀 68, 75. 분유 115, 140)
 ⑨: 지원단가_15년 단가 (기저귀 65, 분유 125)

본 사업의 시범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간(2015. 10~12)의 소요예산을 산정하면 <표 IV-4-2>과 같다. 연간 예산 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원단가 ②안(1-2안: 기저귀 월 6만4천원, 분유 월 8만6천원 지원)를 기준으로 KICCE 산식을 적

41) 예산 산출 상세 내역은 부록 5 참조

용하여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을 산정한 결과, 최저생계비 100%이하까지 0세아를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는 3개월에 약 113억원, 110%이하 구간에서는 약 144억원, 120%이하 대상으로는 3개월에 약 175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2015년 확보된 사업예산(50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사업체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0세아 대상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48:52 비율로 사업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를 고려한 방안이다.

〈표 IV-4-2〉 지원대상 산정방식 및 지원단가(안)별 시범사업 소요예산

단위: 억원

| 구분 |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 구매처 | 지원 단가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K I C C E 방 식 | 100% 이하 | 온라인 | 145 | 113 | 96 | 139 | 97 | 111 | 122 | 109 | 119 |
| | | 오프라인 | 172 | 117 | 102 | 168 | 124 | 161 | 122 | 122 | 119 |
| | 110%이하 | 온라인 | 184 | 144 | 122 | 176 | 123 | 141 | 154 | 138 | 151 |
| | | 오프라인 | 218 | 149 | 130 | 213 | 158 | 204 | 154 | 154 | 151 |
| | 120%이하 | 온라인 | 224 | 175 | 148 | 215 | 149 | 172 | 188 | 168 | 184 |
| | | 오프라인 | 265 | 181 | 158 | 260 | 192 | 248 | 188 | 187 | 184 |
| 예 비 타 당 성 방 식 | 100% 이하 | 온라인 | 134 | 105 | 89 | 129 | 90 | 103 | 128 | 114 | 110 |
| | | 오프라인 | 160 | 109 | 96 | 156 | 116 | 149 | 128 | 126 | 110 |
| | 110%이하 | 온라인 | 173 | 136 | 115 | 166 | 116 | 133 | 165 | 146 | 141 |
| | | 오프라인 | 206 | 140 | 123 | 201 | 150 | 193 | 165 | 163 | 141 |
| | 120%이하 | 온라인 | 214 | 167 | 142 | 205 | 143 | 164 | 203 | 181 | 175 |
| | | 오프라인 | 254 | 173 | 152 | 249 | 185 | 238 | 203 | 201 | 175 |
| 산 모 신 생 아 도 우 미 | 100% 이하 | 온라인 | 139 | 109 | 92 | 134 | 93 | 107 | 132 | 118 | 115 |
| | | 오프라인 | 165 | 113 | 98 | 162 | 120 | 155 | 132 | 132 | 115 |
| | 110%이하 | 온라인 | 165 | 129 | 109 | 159 | 110 | 127 | 157 | 140 | 136 |
| | | 오프라인 | 196 | 134 | 117 | 192 | 142 | 183 | 157 | 156 | 136 |
| | 120%이하 | 온라인 | 195 | 152 | 129 | 187 | 130 | 150 | 185 | 165 | 160 |
| | | 오프라인 | 231 | 158 | 138 | 226 | 167 | 216 | 185 | 184 | 160 |

주: 2015년 하반기 3개월간 진행되는 시범사업 소요예산 추정결과임(시범사업 소요예산 = 연간 소요예산/4).

- ①: 지원단가 1-1안 (기저귀 81, 97. 분유 124, 133)
- ②: 지원단가 1-2안 (기저귀 64, 66. 분유 86, 94)
- ③: 지원단가 1-3안 (기저귀 55, 59. 분유 61, 61)
- ④: 지원단가 2-1안 (기저귀 78, 95. 분유 115, 130)
- ⑤: 지원단가 2-2안 (기저귀 55, 72. 분유 68, 69)
- ⑥: 지원단가 2-3안 (기저귀 62, 91. 분유 100, 120)
- ⑦: 지원단가_가구당 월평균 구입 비용 (기저귀 78, 분유 100)
- ⑧: 지원단가_14년 단가 (기저귀 68, 75. 분유 115, 140)
- ⑨: 지원단가_15년 단가 (기저귀 65, 분유 125)

5.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 전략

저소득 0세아 가구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현물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사업 목표의 타당성을 점검,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내용을 구체화 하며, 사업대상의 규모와 지원단가와 이에 대한 향후 단계적 확대 방안과 예산 추계를 제시하였다. 2015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책정된 예산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 초기 실행계획안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중장기적으로 본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업 방향에 대해 고려하였다.

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의 설정

사업 시행의 성패와 정책의 평가, 즉 효과성 달성 방안은 사업 목표의 설정과 이의 실현, 즉 성과목표의 달성에 있다. 영유아가구가 처한 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최소화 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적절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성과목표의 제시가 중요하다.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검토되어 예비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이삼식 외, 2013, 한성민 외, 2014). 이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타당도 분석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과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보다 확장된 제언을 효과성 제고 및 달성의 실제 수행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저소득 0세아 가구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현물 지원 사업의 목적은, 현재 가속화되는 초 저출산의 기조를 완화하고, 임신·출산·양육에 경제적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통해 육아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은 다음의 성과목표를 필요로 한다.

첫째, 유치원·어린이집 서비스 이용 중심의 지원체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육아필수 소비재 품목에 대한 지원을 보강함으로써, 출산 양육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보육·교육의 기관 서비스 이용 위주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육아지원 설계의 외연을 품목지원으로 현물지원체계로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체계 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선별적 지원의 도입은 현행 육아지원의 틀을 전환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둘째,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비롯된 영유아 가구 및 부모 대상 육아지원

정책의 특성을, 누리과정의 도입과 함께 영유아 대상의 정책으로 그 무게중심을 이동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수혜자로서 부모 지원과 영유아 지원 간의 균형을 잡고자 하며, 이는 비용지원 설계에 머무르지않고 수반되는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연계 등 내용설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즉 미래 인적자원인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생애초기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소비재 지원을 시발점으로 하여, 기존의 영아 의료·건강·영양 및 부모교육과 육아상담 및 멘토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내실화 하는 사업내용과 성과목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로써 셋째, 중앙정부의 육아지원정책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양육지원사업이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호 사업효과를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Top-down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그치지않고, 지역 중심의 저출산대책 및 양육지원 사업과 함께 구동될 수 있도록 지역별 통합지원모형을 마련한다.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1) 사업대상 및 지원수준 - 단계적 확대 방안

시범사업 기간을 제외한 본사업 시행은 우선 1단계 대상규모와 지원단가를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큰 계층인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957천원) 가구에 대해 최소 적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즉 최저생계비 120% 이하 0세아 대상으로 온라인 기저귀 구입비용(예: 월 5만5천원 또는 6만4천원)을 지원단가로 하여 시작하여, 이후 지원품목별 지원단가와와의 조합을 통해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 1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분유 지원 대상을 모유수유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5%+α 만을 상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나, 실제 양육의 과정에서 모유수유와 분유의 이용이 병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OECD 자료에서도 주요 국가 모유수유 평균 비율이 출산 후 최초 3개월 기준 약 47% 임을 고려할 때, 분유 지원 대상의 산정은 실효성이 적은 규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저소득 영유아가구 육아필수재 기저귀 지원 사업'으로 명

명하여 진행하면서 점차 예외 대상에 대한 분유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초기 진행에 혼란을 없애고 지원내용과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품목 및 지원 대상(소득수준, 월령) 및 지원 수준의 단계적 확대는 첫째, 단기적으로 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최빈곤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육아필수품목을 현물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초기 시행안을 마련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상대적 빈곤으로의 개념 수정, 확대된 저소득층 개념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대상아동의 소득수준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셋째, 본 사업은 저소득층 양육부담 완화 외에, 출산력 제고의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상위 목표를 가지므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저귀·조제분유의 육아필수재를 지원하는 전략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넷째, 한부모/조손,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중복취약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가족 유형의 경우 소득수준을 고려하되 중복취약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상향조정된 지원단가를 제공하는 설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섯째, 자녀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아동수당의 현금지원의 도입과 모두 보편적으로 지원을 받되 그 안에서 소득수준별·발달단계(월령)별로 차등지원이 보다 정교화 되는 방향을 고려한 안이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단계를 제외한, 2016년 1단계 사업 착수 시점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준하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법정 빈곤/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저귀 온라인 구매가격 월 6만4천원에서 지원을 시작하는 안을 고려한다.

그 다음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0세아와 모 부재의 취약계층 유형(부자 한부모가족, 시설아동 포함) 대상의 조제분유 온라인 비용(월 8만6천원)을 포함하도록 단계화 하는 것이 가능하며, 2단계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애초 사업계획에서 목표한 최저생계비 150%(중위소득 60%이하)로 저소득 계층의 범위를 적용하여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도록 한다.

3단계에서는 최저생계비 180% 이하(중위소득 60% 이하)로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지원대상 내에서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지원수준을 차등설계하는 안을 고려한다. 덧붙여 소득 층위에 의한 빈곤 외에 한부모, 조손 등 취약가족 유형에 근거한 취약 요건을 추가로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소득과 자산 기준 외에 취약요건에 의한 지원범위와 개념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단 기존의 가족 특성별로 유형화된 사업(예: 한부모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과의 중복성·연계성을 적극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IV-5-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중장기 로드맵

| 구분 | 1단계 (본 사업 착수) 2016 | 2단계 (중위소득 60% 저소득으로 확대) 2017~2018 | 3단계 (중위소득 70% 이상으로 확대) 2019~2020 | 4단계 (대상아동 만24개월로 확대) -아동수당 도입대비 2021~ |
|------|--|--|---|---|
| 지원대상 | 12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 | 12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이하까지 | 12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 중 최저생계비 180% 이하까지 |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까지 확대 |
| 지원방식 | -균등지원 | -차등지원 (소득수준, 자녀수) | -차등지원 (소득수준, 자녀수, 취약유형) | -보편지원 설계 내 차등지원의 정교화 (소득수준, 자녀수, 취약유형) |
| 지원단가 | 월 지원 단가 기저귀 64,000원 조제분유86,000원 | 전년 단가유지 (물가상승분 고려) | 시장조사 후 지원단가* 사용량 재산출 | 전년 단가유지 (물가상승분 고려)또는 가구당 평균양육비용 |

4단계에서는 대상아동의 범위를 소득수준 외에 아동이 해당품목을 이용하는 실제 월령을 고려하여, 기저귀와 분유를 이용하는 발달단계 전체로 지원기간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로써 저소득 0세아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만 1~2세 영아기로 확대함으로써, 영아기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이로써 만 3~5세 유아기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위주의 지원과 대비되어, 가정내양육을 지원하는 육아필수재에 대한 저소득층 선별 지원 사업으로서의 차별화된 특성을 갖출 수 있다. 단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기저귀와 분유의 사용이 줄어들고 여기에 개인차도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동일 지원수준 내에서도 지원 품목과 바우처 이용 방법의 다양화 설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사업의 단계별 추진 이전 시범사업 기간(2015. 10-12)에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최저 생계비 100%이하까지의 0세아만을 대상으로 기저귀를 우선 지원하여 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도록 한다.

〈표 IV-5-2〉 단계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계(안)

| 단계 | 소득수준 | 자녀수 | 지원금액 | 추가지원 (취약가족유형) |
|----|------------------------------------|---------|-----------------------------|-----------------------------|
| 1 | 최저생계비 120%이하 (중위소득 50%) | 첫째자녀 | 지원단가 전액지원 ⁴²⁾ | - |
| | | 둘째자녀 | | |
| | | 셋째자녀 이후 | | |
| 2 | 최저생계비 150%이하 (중위소득 60%) | 첫째자녀 | 지원단가 전액지원 | - |
| | | 둘째자녀 | | |
| | | 셋째자녀 이후 | | |
| 3 | 최저생계비 151~180% 이하 (중위소득 72%) | 첫째자녀 | 지원단가의 65% | 중복취약 시 지원액의 일정비율 추가지원 |
| | | 둘째자녀 | 지원단가의 80% | |
| | | 셋째자녀 이후 | 지원단가 전액지원 | |
| 4 | 최저생계비 181~200% 이하 (중위소득 80%) | 첫째자녀 | 지원단가의 55% | 중복취약 시 지원액의 일정비율 추가지원 |
| | | 둘째자녀 | 지원단가의 70% | |
| | | 셋째자녀 이후 | 지원단가 전액지원 | |

이후 지원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 구매패턴 비율과 비용을 포괄하여 영아 '가구' 단위의 월평균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으로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고려 가능하다. 아동수별 지원에서 가구 단위로 전환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지원단가는 상승하지만 가구 단위 지급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측면에서는 재정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월 사용량을 상향 조정하여, 현행 1일 8개, 한 달 4통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지원품목을 분유 외에 이용률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식'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육아필수재 품목을 확대하는 안도 가능할 것이다. 4단계까지 지원대상의 연령과 지원액 수준이 확대될 경우, 이는 향후 영유아 대상 지원 설계를 아동수당 위주의 현금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 대상과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수준, 그리고 영유아가구 대상 지원 설계 전반을 고려하여 지원 요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설계가 가능하며, 필요하다.

42) 1단계에서 생후 6개월부터는 모유수유에서부터 이유가 시작되고 모유수유 비율이 20%대로 떨어지므로, 이 시점부터 분유 지원을 부분 지원으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을 바우처로 담아 부모가 분유와 기저귀 중에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지원 금액을 온라인 기저귀 구매가 + 부분 분유 지원(약3만원~4만5천원 가정)로 상정하여, 약 10만원의 바우처 지원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착수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



[그림 IV-5-1] 보편지원 내 차등지원설계로 단계적 확대 방안

2) 사업내용

앞서 논의한대로, 사업내용은 ①기저귀·조제분유 구매권 제공의 경제적 비용 지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②증장기적으로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및 육아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관련사업과의 통합적 지원체계의 마련 및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수반에 있다.

일례로 2013년부터 지자체별로 각 지역여건에 맞게 구성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내용은 없다(이정림, 2015). 영양, 비만 등 13개 사업영역 중에, 영유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만이 저소득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통해 저소득, 특히 기초생활수급 영유아의 영양 및 영양관리상태, 병원 이용률, 응급실이용률, 탄수화물/당분 과다섭취 및 비타민 부족, 건강관련 낮은 지식수준 등이 보고된 바 있고(이정림, 2015), 영유아 보육·교육 사업에 비해 다른 육아지원 내용이 예산비중 및 인프라 면에서 절대적으로 적으므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시작을 임신·출산·양육 시기의 건강·영양 증진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 육아지원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제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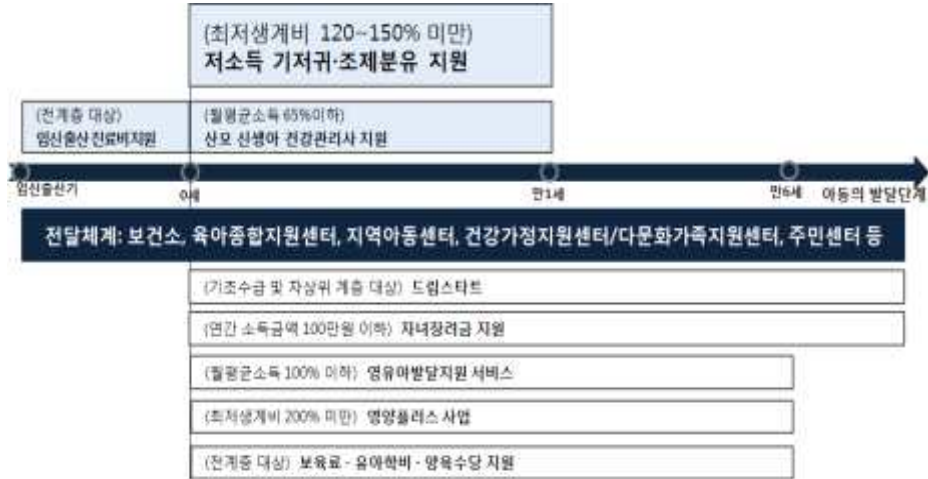
이로써 분기별로 0세아의 발달월령에 맞는 부모교육과 육아상담 및 육아멘토링의 부모 양육역량 강화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을 대상으로는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 이미 갖추어져 있는 사업을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이 출생 이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림 IV-5-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효과성 달성을 위한 연계·통합 전략(1) - 내용·목표 연계

또한 미국의 Head Start와 영국의 Sure Start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육아공동체의 지원과 특화된 조기중재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보육 과정이 연계되어, 육아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와 부모 참여를 통한 공동체 발전방안이 연동되고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도록 한다. 무엇보다 영유아 생애초기 투자로 미래 인적자원의 역량이 제고되고 이후 학업지속 및 비행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의 감소(Heckman, 2008)라는 정책적 효과를 갖도록 한다.

따라서, 본 사업의 내용은 현행 건강·의료·영양 및 부모교육과 육아상담 및 멘토링의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구성하고 대상 선정 기준과 범위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5-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효과성 달성을 위한 연계·통합 전략(2) - 발달단계별 지속성 확보

이를 위해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발달단계별로 지원사업간 연계가 요구되며, 지원방식과 내용에 다양성이 보강되도록 한다. 우선 출산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임신·출산지원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 카드)와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임신출산기부터 생애 첫 1년 이내 육아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설계를 통해 출산 직후 육아지원정책의 인지도와 수혜율(수급률), 나아가 정책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담당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업내용을 이어주는 체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한다.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영아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경제적 부담 외에 임신·출산·양육 자체의 어려움과 육아상담 및 멘토링의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 관련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고립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과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 및 육아지원사업이 연동되어, 정책 대상이자 사업 수요자인 영아 가구와 아동 자신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과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내에 이러한 연계 통합기능을 탑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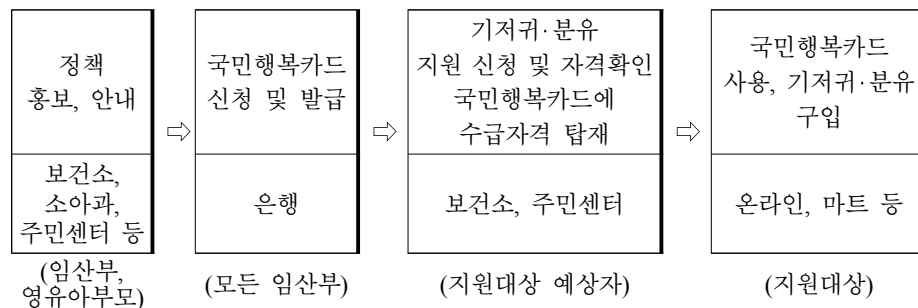
이는 본 사업의 목적인 양육부담 완화와 건강한 양육환경 제공에 부합하며,

시간제/전일제 근로를 하고자 하는 저소득 양육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의 양육 지원에도 유의한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다. 전달 방식

1) 원칙: 전자바우처 방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전달수단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계획되어 있다(한성민 외, 2014: 118). 이에, 모든 임산부가 발급받는 고운맘 카드에 기저귀·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추가기능을 탑재하여 출산 전·후 본 사업의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고운맘카드로 해당 현물을 지원액 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상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 그런데, 고운맘 카드를 통해 지원되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비롯해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던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2015년 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지원되므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2015).

출처: 한성민 외(2014). 118p 수정보완

[그림 IV-5-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흐름도

2) 지원 신청 및 판정 절차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 카드)의 신청 발급은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및 자격 확인의 과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는데(한성민 외, 2014), 여기에 정책 안내와 홍보 및 교육의 단계를 제도화 하고, 신청 및 자격확인의 서비스를 보건소와 주민센터로 연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부모에게 실제이용 및 접근성이 높은 기관으로 '주민센터', '보건소' 및 '소아과병원', '도서관'으로 나타남에 따라(이운진 외, 2014), 주요 사업간 연계성이 확보되고, 수요자 부모에게는 관련 사업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접점이 넓어지는 효과를 갖는다. 나아가 주요 정책포털(예: 보육료 결제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 관련사업을 조망하고 온라인 신청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부처에서 계획 중인 행복카드 지원서비스 통합 구축과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행정적으로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여부 선정 과정에서 현행 건강보험료 자료 외에, 행복e음 자료를 연계하여 대상자의 소득+자산 요건을 검토하는 체계가 장기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의 현행 소득과 자산 조사를 병행하여 신청 시점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수혜자의 만족도 체감을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착수의 과정 내에 설계하여 이후 사업효과의 평가와 만족도 체감 데이터의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까지는 임신·출산의료비로 이용할 경우 자동 차감되며, 일반 신용카드처럼 다른 물품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등 기존 유사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활용해 전자바우처로 이용하게 할 경우, 지원액의 사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 안이 필요하다.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의 경우 월별 이용 한도액 없이 인당 지원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료·유아학비를 결제하는 '아이행복카드'의 경우 월별로 보육료·유아학비를 결제 하면서 전체 총액에서 지원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의 월별 한도가 정해져 있는 방식에 해당한다.

본 사업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확정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공지, 1) 일정 기간(매월, 분기 등)을 단위로 일정 금액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2) 지원 총액 내에서 특정 기간 단위별 한도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기저귀나 조제분유의 경우 대량 구매를 통해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품목으로 월별로 지원하더라도 구매는 분기별 또는 연간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지출 가능한 방식을 취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3) 예외 적용: 배송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방식의 예외 적용도 필요할 수 있다. 도서·벽지, 농산어촌 중 일부 오지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구매가 도시 지역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구매 가능 품목이 도시지역보다 제한되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인터넷 활용도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구매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 초기에는 어렵더라도, 사업이 안정화되는 시점에는 구매 및 물품 수령 관련 구체적인 반응과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체계와 전달방식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도서·벽지, 농산어촌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부서에서 저렴하게 일괄 구매하여 관내 해당가구에 현물 형태로 제공하거나 택배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용할 수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지원방식에 대해 대부분 카드(바우처) 방식을 선호하였지만, 본 조사 결과 현물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 10%로 나타났다(표 III-3-3 참조), 거주지별로 읍면부 거주자의 경우 현물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52.4%로 높아(이삼식 외, 2013: 137) 거주지별로 현물 직접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전달체계 구성 시 주의점

현금지원만큼은 아니더라도 특정 물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부정사용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일반 소매점과 결탁하여 전산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한 것으로 하고 다른 물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단,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적어도 만 12개월 미만의 0세아에게 있어서 필수재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 지원 바우처 서비스에 비해서는 이러한 오용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사업 목표 및 내용을 벗어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지원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확보
- 전자바우처 오용방지 기술 적용: 구매품목 제한

1) 대상 선정의 적정성 확보

특정 품목이 필수적으로 사용될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이러한 지원 품목 오용 방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종이기저귀의 경우 편리성으로 인해 천기저귀에 비해 매우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달에 약 5~6만원 지원으로는 크게 오용될 소지는 적다. 또한 지원 내용에 종이기저귀 뿐 아니라 천기저귀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천기저귀 사용 희망자에게는 천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종이기저귀와 천기저귀의 병행 이용의 경우, 기저귀 구입비용이 줄어들므로 다른 육아필수재 품목으로의 확대 적용은 사업 시행에 따라 적절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기저귀 이용 희망률이 모유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으므로, 기저귀 지원은 '육아필수재'로 소득 기준에 의거하여 적정 대상자가 선정된다면 오용의 가능성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닐 것이다.

한편 본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질병이나 입원 등으로 의학적으로 모유수유가 곤란한 경우, 조손가정, 부자가정 등 모 부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모유량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모 부재의 경우는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나, 사업 시행 초기에는 지원자에게 혼란이 예상되므로 분유 지원 가능 대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요구된다.

'모유량이 불충분한 경우'는 대상자 확인 및 선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사업 초기에는 '의학적으로 모유수유가 곤란한 경우'와 '모 부재 취약 가구 유형'으로 한정하여 시행한 후 '모유량이 불충분한 경우'까지 점차 확대하여 가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타당한 근거 기준이 마련되어야 모유량 부족에 대한 분유 지원이 가능할 것이므로, 기준 마련이 요구됨과 동시에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전자 바우처 오용 방지 기술 적용: 구매 품목 제한

전자 바우처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를 지원할 경우, 지원 금액 내에서 해당 품목 구매로 제한될 수 있도록 구매품목의 제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 바우처가 일반 신용카드 형태로 사용될 경우,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다른 상품과 함께 구매하더라도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액이 확인되어 지원금액 총액

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액 만큼을 삭감할 수 있어야 한다.

비금융카드 형태로 지원되어 해당 품목만 매달 일정액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나(예: 일본 미카사시 해외사례 참조), 비금융카드로 지원될 경우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하여 편리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한정되는 단점이 있다. 구매처 제한이 따르는 방식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방식이 온라인 저가로 대량구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2013년의 선행 연구(이삼식 외, 2013: 144)에서도 생후 15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의 종이기저귀 구입경로가 온라인인 경우 58%로 가장 많았으며, 본 조사결과에서도 저소득 0세아 가구의 온라인 구매율(1+2순위 중복응답 기준, 표 III-1-9 참조)이 기저귀 90.2%, 분유 81.5%로 상당히 높으므로 온라인 구매 이용이 가능하고 구매처 제한이 최소화되는 설계가 필요하다. 읍면부의 경우 특히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구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금융카드로 온라인 이용이 제한될 경우 쇼핑물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의 불편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단 사업시행 초기 비금융카드의 도입이 필요할 경우, 소비자·판매자 간의 결탁에 의한 오용이 일어나지 않을 공신력 있는 매장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다양한 브랜드를 갖추어 지원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 비금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의 접근성 확보와 매장에서 해당 품목 브랜드의 다양성 정도가 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라.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앞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단기 실행방안과 중장기 추진방향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방향

먼저 원활한 사업 수행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첫째, 정책 인지도와 사업 참여율 즉 저소득·취약계층으로서의 사업대상의 포괄성과 사업대상의 실제 수급률을 높이는 전략이 제도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상 가짓수에 비해 실제 수혜율과 이용률에서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수급률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의 수혜율에 준하여

9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책 홍보와 안내, 교육적인 부분이 고려된 사업설계가 요구된다. 즉 신청과 판정, 지원수혜의 전달체계가 다양한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공유, 확산될 필요가 있다(그림 IV-41 참조).

구체적으로 사업 홍보 단계에서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신청·지급 시, 출생 신고 시, 그리고 신생아 예방접종 시 보건소와 소아과, 주민센터, 그리고 다수의 영유아부모가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결제 포털(아이사랑포털)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정보공시사이트를 통해 정책 시행을 안내하도록 한다. 특히 사업 시행과 함께 정책인지도와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출산가구 대상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행복카드 수령 시 해당 사업 안내를 받았음을 사전 의무사항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 구체적으로 건강·영양 증진사업 및 지자체 저출산 방안, 중앙 부처별 육아지원정책 및 아동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와 통합지원 설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복지 및 출산/육아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의 저출산정책 및 보육 지원 사업, 교육부의 누리과정 등 교육정책, 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 및 아이돌봄과 육아품앗이 사업 등, 동일한 사업대상을 두고 다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달체계만 하여도 전국 인프라를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시군구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및 육아지원, 교육·보육 네트워크,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체를 구비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과 프로그램 면에서도 민간에서 실시하는 위스타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갖추고 있다.

동일시기 동일 사업대상의 관련 사업과의 통합 및 연계하여, 본 사업의 착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영유아가구 지원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대표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임신출산진료비지원-산모신생아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사업과 연계하여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합적으로 안내,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혜자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월령별로 지속되는 지원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건강보험료 자료에 근거한 소득수준의 파악이 저소득 0세아 가구의 취

약계층 모수를 100% 파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 가족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를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에 근거한 대상 파악에 잠재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안을 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시설입소아동을 기타 예외지원 대상자⁴³⁾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나아가 입양가족, 다문화 및 외국인근로자가족, 북한이탈가족, 청소년미혼가족의 0세아까지 포함하여, 임신·출산·양육기에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족 유형을 규정하고 소득수준 이외에 양육지원 요구도가 높은 취약가구 지원으로 사업대상을 확장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으나, 그 이전에 본 사업대상에 대한 적격판정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판정기준(예: 저소득층 자산기준 비중의 완화)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건보료에 잡히지 않는 비율이 약 14%로 나타나므로(부록2 참조), 현재 주민센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지원대상의 소득/자산/부양자 조사에 근거하여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과 연동하여, 건보료 기준 외에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양육과정에 결손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취약환경의 영아가구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례'발굴을 할당하여 지원대상의 범주를 건강보험체계의 소득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에만 한정시키지 않도록 한다.

넷째, 앞서 논의한대로 사업대상과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 및 지속 시행 여부를 중간 점검 할 수 있는 정책평가의 과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재정효율성과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 중장기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예산배정의 지속과 확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을 제도화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합당한 경우, 마련된 단계적 확대 로드맵에 부합하는 예산책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대상자 선정 및 시행 초기에 해당사업 수혜의 만족도 조사에 응하도록 응답체계를 갖추어 사업 효과분석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섯째, 본 사업 수행을 통해 소득수준 및 발달단계에 따른 차등지원 및 사

43) 기타 예외지원대상자는 지방비 지원으로 되어있음(보건복지부, 2014 사업안내서)

업내용 연령별(월령별) 차별화의 설계를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 가구의 0세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되,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체계내의 주요 대상이 되므로, 먼저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를 시범사업의 우선적인 사업대상자로 하여 시행한 후, 2016년 본사업을 착수한 후에는 최저생계비 100~150% 이하 차상위 및 차차상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40~60% 구간)에 대한 지원으로 범위의 확대를 설계한다. 양육지원이 필요한 취약가구의 영유아자녀 양육은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다른 요구와 내용을 가지므로, 이를 반영한 차등지원과 차별화 된 사업내용을 구성하여 사업 목적의 달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 수혜의 범위와 포괄성을 넓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저귀 지원의 경우, 특정시점 부모교육과 육아상담 바우처의 발생,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와 아동의 성장발달 모니터링이 연계되도록 구성하며, 모 부재 분유 지원 대상자의 경우 육아멘토링 및 육아공동체 네트워크를 안내하도록 한다.

여섯째, 사업수혜율 제고 및 홍보 강화, 교육 제공에서 나아가, 임신·출산 시기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해 조기 개입하여 본 사업의 지원대상을 신청주의가 아닌 해당 대상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출생 시점, 병원과 지역주민센터의 출생신고 시점, 보건소/소아과 예방접종 등 출산 직후 생애 초기의 발달월령별 주요 시점과 지원정책의 접촉점에서 0세아의 지원계층의 모수를 파악하여 신청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사업대상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일곱째, 본 사업과 같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양육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과 예산매칭으로 초기 시행을 하되, 중기 이후에는 지자체 별로 고유한 사업설계(현물바우처와 현금지원, 서비스 연계 등)와 차별화 된 지원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행정단위의 중심을 지방정부로 이동하도록 한다.

2) 단기 실행안

2016년 1단계에서부터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 방식은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출산 가구가 자녀 출산 후 출생 신고서를 직접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출생신고시스템 및 보육료·교육비·양육수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신청 후, 건강보험료 자료에 근거하여 적격판정을 내린 뒤 최저생계비 120% 이하 해당 가구에 바우처 카드를 송부한다.

기저귀의 경우, 온라인 다량구매의 패턴이 빠른 속도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므로, 국내 다양한 기저귀 품목에 대한 온라인 결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당품목의 등록과 이에 대한 결제시스템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외직구가 보편화 되고 있으므로, 해외 사이트를 통한 구매결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전히 분유와 기저귀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적지 않으므로, 오프라인 구매만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구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매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경우 마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와 담당 사회복지사가 구매대행을 통해 수령하도록 하거나, 배송을 요청한 경우 배달비용에 대한 자부담설계를 통해 택배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모 부재로 주 양육자가 아버지이거나, 조부모, 시설보육교사 등인 경우, 지원 금액이 해당 아동의 품목 지원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직접 수령의 택배서비스를 마련한다.

이러한 대면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접촉 기회를 통해, 기저귀·분유 지원이 단순히 양육비 부담완화의 비용지원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0세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설계로 자리잡도록 한다. 생애초기 아동이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가정의 양육환경 방문 및 지원 서비스와 양육상담, 부모교육 멘토링의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도록 통합서비스 내용을 구축한다.

본 육아필수재 구입비용의 지원은 현금성 양육수당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저귀·분유의 경우 할인된 가격에 다량 구매하는 패턴이 보편적이므로, 지출 금액은 매월 지출하지 않아도 누적된 지원금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육아용품의 지원 및 가족 지원 등으로 기저귀보다 분유가 필요한 시기 또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제한된 금액 내에서 분유 구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편적인 구매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판 이유식제품에 대한 구매로 전환 가능하도록 품목 확대를 고려한다.

시행 초기, 해당 월에 출생한 신생아에서부터 사업시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

도록 구축하되, 시행 첫 달 만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저소득 0세아에게 해당 월과 분기 3개월에 해당하는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청시점과 지급기간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생후 1~3개월 만 월령기간 이내에 언제든 1번 신청하면 1분기 3개월치 비용을, 생후 4~6개월 만 월령기간 내에 한번 신청하면 2분기 3개월치 비용을, 생후 7~9개월 만 월령기간 내에 신청하면 3분기 3개월치 비용을, 10~12개월 기간내에 신청하면 4분기 3개월치 비용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사업시행에 대한 홍보 및 신청기간에 지원자격이 발생하는 아동의 생년월일을 명기하여, 만 12개월이 경과한 아동이 신청하는 혼선이 없도록 홍보단계의 신청자격 확인 설정이 필요하다. 즉 2015년 10월 1일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2015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2014년 9월 30일 출생아까지 신청자격이 발생함을 안내하도록 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이 경과하여 종료되더라도, 지역사회아동복지사업 및 육아지원서비스(아이돌봄, 보육·교육, 양육수당 등)와 연계되고 네트워크가 지속되어 기존사업에서 단절되지 않고 지원체계 내에 머물수 있도록 하며, 지원 수혜에 대한 책무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 모델을 가동한다.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급여보장실(2015).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 안내(Q&A 및 참조자료).
- 고승연(2014).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희망 자녀수는 2.11 명, 합계출산율은 1.18 명. VIP Report, 557, 1-28.
- 국세청(2015).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자녀장려금 첫 지급을 위해 253만 저소득 가구에게 신청 안내. 보도자료(2015. 4. 28).
- 김미정·이혜자(2014). 마을중심 육아용품 공유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미곤·여유진·김성아(2014). 2014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설·이정림·최윤경·도남희·문성혁·이동하(2014).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출산 결정요인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남상호(2014). 우리나라 다차원적 빈곤의 현황과 과제. Issue & Focus, 224,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a). 201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b). 2014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c). 2014년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d).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5a). 2015년도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5b).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5.c). 201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5d).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
참고자료(2015. 1. 15)
- 보건복지부(2015e).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
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이세원·신윤정(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
구소.
- 서문희·최혜선(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 II. 육아
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2015).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5a). 201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
가족부.
- 유니세프(2014). 금융위기속 어린이. 국제연합(UN)산하 유니세프(UNICEF)
- 유한옥·조창익(2014).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효과정 예측에
대한 일 고찰: 소득이전효과인가? 화폐환상인가? 여성경제연구 11(2)
pp.101-123.
- 유해미·김문정(2013).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삼식·이현주·최효진·이지혜·기재량·임지영·유재언·박지연·이소영·송리라(2013).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
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진·조혜주(2014).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
구소
- 이정림·민정원·조혜주(2014).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신·수유부의 건강과 영양 지
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임승지·김승희·백종환·김나영(2013). 저소득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
책 개선방안.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장명림·이윤진·이정림·이미화·전혜정·민현숙·박수연·이세원·김주연·정주희·송윤정 (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육아정책연구소.
- 전국 시도 및 교육청(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정민자·김영주·박초아·이진숙·홍금자·박무성·이영주(2006). 가정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 최윤경(2013). 육아 지출 현황 어떠한가. 육아정책Brief 14호.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김소아·김진경·송신영(2014). 생애초기 돌봄 및 보육·교육 기관 이용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 2014 심층분석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박진아·배지아(2015, 미발간 진행중).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박진아·이세원(2013). KICCE 육아물가지수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박진아·최종화(2014).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유혜미·김성숙·송신영(2012). 영유아 양육 물가 현황과 지수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0).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보고서.
-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결과. 통계청.
- 한경님(2010).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부담비용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99-318.
- 한성민·조민혜·유한욱·박태경·김익모(2014).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한국개발연구원.
- COI(2012). Delivering a Healty Start for pregnant women, new mums, babies and young children-A guide for health professionals. London: COI.
- Diaper Bank(2010). Agency Manual. New Haven: The Diaper Bank.
- Easterly, W. (2001). The middle class consensu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6(4), 317-335.

- Heckman, J. J. (2008). Schools, skills, and synapses. *Economic inquiry*, 46(3), 289-324. (Cunha, F., Heckman, J. J., Lochner, L., & Masterov, D. V. (2006).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1, 697-812.
- Havnes, T., & Mogstad, M. (2011). No child left behind: Subsidized child care and children's long-run outcome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97-129.
- Laroque, G., & Salanié, B. (2014). Identifying the response of fertility to financial incentive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9(2), 314-332.
- Lee, B. J., & Mackey-Bilaver, L. (2007). Effects of WIC and Food Stamp Program participation on child outcom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9(4), 501-517.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2). Child care structure - process - outcom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aregiving quality on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sychological Science*, 13, 199-206.
- Pooler, J., & Gleason, S. (2011). Decrease in WIC Benefit Use among Pregnant Women After Revisions to the Food Package.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and Behavior*, 43(4), S29-S30.
- Whaley, S. E., Koleilat, M., Whaley, M., Gomez, J., Meehan, K., & Saluja, K. (2012). Impact of policy changes on infant feeding decisions among low-income women participating in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12), 2269-2273.

<홈페이지>

(국외사례)

www.city.hachioji.tokyo.jp/fukushi/1099/001103.html

www.city.mikasa.hokkaido.jp/hotnews/detail_sp/00001129.html

www.fns.usad.gov/wic

www.childrenscentres.info/resources

www.acf.hhs.gov/programs/ohs

www.healthystart.nhs.uk/

[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social_development/policy_manual
/programs/content/early_childhood_initiatives.html](http://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social_development/policy_manual/programs/content/early_childhood_initiatives.html)

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

www.realnappiesforlondon.org.uk/

OECD Family Database(2015)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_index_04.jsp?vi
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_index_04.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

<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

동방사회복지회

<http://www.eastern.or.kr/main/publish/view.jsp?menuID=001002>

양천구 여성희망드림광

[http://female.yangcheon.go.kr/woman/birth/birth02/birth02_01/birth02_01_01/
birth02_01_01.jsp](http://female.yangcheon.go.kr/woman/birth/birth02/birth02_01/birth02_01_01/birth02_01_01.jsp)

정부-지역별 지원정책 분류 <http://momplus.mw.go.kr/main.do>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2015. 4.30 인출)

(기사)

<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

“핀란드 아기들은 왜 상자에서 잠잘까?” 아시아 경제 2013. 6. 5일자 기사.

부록

1. 저소득 영유아가구 설문지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사업 자료 분석
4. 최저생계비-소득구간 환산 기준
5.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단가별 소요예산

부록 1. 저소득 영유아가구 설문지

영유아가구 육아필수재 지원 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2015년 연구과제인 영유아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영아 및 유아 자녀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과 육아필수재(기저귀, 분유 등) 지원 방식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조사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 02-398-7760)

2.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출 및 기저귀·조제분유 이용/구매 현황

문4. 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드는 월 평균 총 지출비용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원

문5. 그 중 취학전 영유아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드는 지출비용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원

5-1. 이를 월 가계지출(앞의 문1) 가계소비지출금액 참조) 대비 비중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_____ % 정도입니까?
 월 가계지출총액 중 _____ %

※ 가족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비, 공과금 등은 제외하고, 영유아자녀 고유하게 사용하는 일체의 비용을 대략으로 말씀해주시시오.

문6. 영유아 자녀 중 '첫째(만 _____ 세)'에게 드는 월 평균 총 지출비용은 대략 얼마쯤입니까?

※ 자녀 연령별 1인당 지출비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오니, 해당 영유아자녀에 드는 지출비용을 검토해 응답해 주십시오.

영유아자녀 중 기준아동 '첫째' (만 _____ 세) 월 평균 _____ 원

문7. 영아 자녀 1인의 기저귀 구입비용 및 사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로 사용하는 상품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저귀를 사용하는 귀 닥의 모든 자녀에 대해 각각 응답해주시고, 해당 연령의 자녀가 있으나,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여부에 체크해주세요.

| 해당자녀 연령 | 사용 여부 | 주 사용품목 특성 (브랜드, 용량(갯수), 상세특징 등) | 월 평균 지출 금액 | 1일 평균 사용량 |
|--|---|---------------------------------------|---------------------------------------|----------------------------------|
| | | 예: 하gis 프리미엄 중형남아 팬티형 72개 | | |
| <input type="checkbox"/> 생후 12개월미만 |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사용하지않음 | | 월 평균 구입 비용 원 | 1일 평균 _____ 개 사용 |
| <input type="checkbox"/> 생후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사용하지않음 | | 원 | _____ 개 |
| <input type="checkbox"/> 생후 24개월이상 ~ 36개월미만 |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사용하지않음 | | 원 | _____ 개 |
| <input type="checkbox"/> 생후 36개월이상~ |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사용하지않음 | | 원 | _____ 개 |
| 비용 총계 | | | 가구당 1회용기저귀 월 평균 구입 비용 총 _____ 원 | 1회용기저귀사용 영유아자녀수: _____ 총 명 |

문8. 기저귀, 분유 등 육아관련 물품은 주로 어디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데 모두 체크해주시고, 가장 많이 구입하는 순서대로 1~2순위 번호를 써 넣어주세요

| | |
|----------------------------|--|
| 1회용 기저귀 구입처 | <input type="checkbox"/> ___ ① 대형마트 <input type="checkbox"/> ___ ② 백화점 <input type="checkbox"/> ___ ③ 소형마트 <input type="checkbox"/> ___ ④ 재래시장 <input type="checkbox"/> ___ ④ 인터넷/온라인(□국내, □해외) (주 구매처 명: _____) <input type="checkbox"/> ___ ⑤ 직구/공구(□직구, □공구) (주 구매처 명: _____) <input type="checkbox"/> ___ ⑥ 박람회 <input type="checkbox"/> ___ ⑦ 전문브랜드 매장 <input type="checkbox"/> ___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 조제분유 구입처 | <input type="checkbox"/> ___ ① 대형마트 <input type="checkbox"/> ___ ② 백화점 <input type="checkbox"/> ___ ③ 소형마트 <input type="checkbox"/> ___ ④ 재래시장 <input type="checkbox"/> ___ ④ 인터넷/온라인(□국내, □해외) (주 구매처 명: _____) <input type="checkbox"/> ___ ⑤ 직구/공구(□직구, □공구) (주 구매처 명: _____) <input type="checkbox"/> ___ ⑥ 박람회 <input type="checkbox"/> ___ ⑦ 전문브랜드 매장 <input type="checkbox"/> ___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 일반 육아용품 구입처 | <input type="checkbox"/> ___ ① 대형마트 <input type="checkbox"/> ___ ② 백화점 <input type="checkbox"/> ___ ③ 소형마트 <input type="checkbox"/> ___ ④ 재래시장 <input type="checkbox"/> ___ ④ 인터넷/온라인(□국내, □해외) (주 구매처 명: _____) <input type="checkbox"/> ___ ⑤ 직구/공구(□직구, □공구) (주 구매처 명: _____) <input type="checkbox"/> ___ ⑥ 박람회 <input type="checkbox"/> ___ ⑦ 전문브랜드 매장 <input type="checkbox"/> ___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문 9. 영아 자녀 1인의 조제분유 구입비용 및 사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로 사용하는 상품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조제분유를 먹는 귀댁의 모든 자녀에 대해 각각 응답해주시고, 해당 연령의 자녀가 있으나, 조제분유를 먹지 않는 경우, 사용여부에 체크해주세요.

| | 사용 여부 | 주 사용품목 특성 (브랜드, 용량(갯수), 포장, 상세특징 등) 예) 남양유업 ○○○ 3단계 800g | 월 평균 지출 금액 | 800g 분유 한통을 먹는데 걸리는 일수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생후 12개월미만 |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사용하지않음 | | 월 평균 구입비용 원 | 800g 한통에 일 사용 |
| <input type="checkbox"/> 생후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사용하지않음 | | 원 | 일 |
| <input type="checkbox"/> 생후 24개월이상 ~ 36개월미만 |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사용하지않음 | | 원 | 일 |
| <input type="checkbox"/> 생후 36개월이 상~ |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사용하지않음 | | 원 | 일 |
| 비용 총계 | | | 가구당 조제분유 월 평균 구입 비용 총 원 | 조제분유 이용 영유아자녀수: 총 명 |

문10. 귀하는 천 기저귀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사용해본 적 없음.
- ② 사용해본 경험 있으나 현재는 사용 안 함.
- ③ 현재 사용 중임.
- ④ 기타()

문11. 천 기저귀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1회용 기저귀와 어떻게 병행 사용하셨습니까?

- ① 아주조금 사용: 천기저귀를 일정기간동안만 조금 사용함
- ② 약간 사용함:(1회용기저귀보다는 적지만 천기저귀를 일정기간 이상 병행하였음.
- ③ 다소 많이 함: 1회용기저귀보다 천 기저귀를 더 많이 사용함.
- ④ 대부분 함: 거의 천기저귀 위주로 사용함.

문12. 귀하가 천 기저귀를 사용하신 경험에 비추어 천기저귀 사용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음중 골라주십시오.

- ① 천기저귀는 너무 불편하여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
- ② 천기저귀 사용이 불편하지만, 장점이 있으므로 일회용 기저귀와 병행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천기저귀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가능한 한 일회용 기저귀 사용을 상당부분 줄여야 한다
- ④ 기타의견(적어주십시오:)

문13. 자녀에게 모유수유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현재 생후 ()개월째 모유수유 중.
- ② 과거 생후 ()개월까지 모유수유 함
- ③ 모유수유 한 적 없음

문14.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기간 동안),
조제분유 사용을 모유수유와 어떻게 병행 하셨습니까?

- ① 아주조금 함: 모유수유를 일정기간동안만 조금 하였음 ② 약간 함:(조제분유보다는 적지만 모유수유를 일정기간 이상 병행하였음.
- ③ 다소 많이 함: 조제분유보다 모유수유를 더 많이 하였음. ④ 대부분 함: 거의 모유수유 위주로 하였음

문14-1. (모유수유 경험이 없 경우),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순위로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모유가 생산되지않아서 ② 모유량이 적어서
- ③ 모유가 나왔으나, 약 복용,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적합하지 않아서 ④ 취업 등으로 모유수유가 여의치 않아서
- ⑤ 모유수유를 하고 싶지 않아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15. 귀하는 모유수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다음 중 골라주시시오.

- ① 모유수유는 너무 불편하여 사용이 매우 어렵다
- ② 모유수유는 어렵지만, 장점이 있으므로 분유와 병행하는 것이 좋다
- ③ 모유수유를 적극 장려하여, 가능한 한 조제분유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④ 기타의견(적어주시시오: _____)

3.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6. 기저귀·조제분유를 국가수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저귀: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거의 필요하지 않음 ③ 약간 필요함 ④ 매우 필요함
- 분유: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거의 필요하지 않음 ③ 약간 필요함 ④ 매우 필요함

문17. 기저귀·조제분유가 자녀양육에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기저귀: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거의 부담되지 않음 ③ 약간 부담됨 ④ 많이 부담됨
- 분유: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거의 부담되지 않음 ③ 약간 부담됨 ④ 많이 부담됨

문18. 천 기저귀를 지원한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네,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② 아니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1. (사용할 의향이 있을 경우) 희망하는 지원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천 기저귀만 ② 천기저귀 + 일회용 기저귀 ④ 기타(_____)

문19. 기저귀와 조제분유 중 한 가지 물품만 지원가능하다면,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게 좋겠습니까?

- ① 기저귀 ② 조제분유

문20. 귀 가정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을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지원방법을 각각 선택해주세요.

| | 보기 | 기저귀 | 조제분유 |
|------|--|-----|------|
| 지원방식 | ① 현금 지급 ② 바우처 지급 ③ 현물 자택 수취 ④ 현물 특정지원처에서 수령 | | |
| 지원기간 | ① 생후 12개월까지 ② 생후 24개월까지 ③ 생후 36개월까지 | | |
| 지원주기 | ① 생후 1달 이내 1회 ② 매 주 ③ 매 월 ④ 매 분기 | | |

①현금지급은 대상가구 계좌로 현금 입금, ②‘바우처’란 해당 품목을 자유로이 구매/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이나 이용권으로 보통 카드나 상품권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③ ‘ 기저귀, 조제분유를 직접 집으로 배송 받음’, ④ ‘주민센터/특정매장’ 등에서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급’ 등 입니다.

문21 동일물품의 제품의 가지 수(종류)가 몇 개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가지이여도 상관없음. ② 2가지 이상 선택 가능하기를 바람.
 ③ 3가지 이상 선택 가능하기를 바람. ④ 4가지 이상 선택 가능하기를 바람.

문22. 귀 가정의 육아물품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십니까? 혹은 지원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지원받고있음 (☞ 문항 6-1) ② 지원받은적 있음 ③ 지원받은적 없음

22-1. 지원기관은 어떠한 곳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 ① 지자체 ② 사회복지시설 ③ 비영리 단체 ④ 기타()

22-2. 지원받은 육아물품이 몇 가지 입니까?

- ① 1가지 육아물품 ② 2-3가지 육아물품 ③ 4가지 이상 육아물품

22-3. 지원받는 물품 중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있습니까?

- ① 기저귀만 포함 ② 조제분유만 포함 ③ 기저귀, 조제분유 모두 포함
 ④ 기저귀, 조제분유 모두 미포함

22-4 그러면 (기저귀, 분유가 아닌) 그 지원 물품은 무엇입니까? _____

22-5.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어떠합니까/어떠했습니까?

- ① 현금 지급 ② 바우처 지급 ③ 현물 자택 수취 ④ 현물 지원처 수취
 ⑤ 기타()

22-6. 지원기간 및 주기는 어떠합니까?

- ① 1년 단위 지원 ② 6개월 단위 지원 ③ 월 단위 지원
 ④ 1회성 지원 ⑤ 기타()

22-7 (모든 응답자) 현행 육아물품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네, 충분합니다. ② 아니요, 불충분합니다. ③ 잘 모름

22-8 (육아물품 지원 경험자의 경우) 육아물품 지원이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네, 도움이 됩니다. ② 아니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2-9. 육아 물품 지원 외에, 함께 제공된 서비스나 지원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2-10. 물품 외에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다? _____

1순위:

2순위:

문27-1. 현행 육아지원이 위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동일보기) 1, 2순위로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문27-2. 현행 육아지원이 위의 어떤 부분을 가장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동일보기) 1, 2순위로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문28. 만일 육아지원이 확대되어 자녀양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면, 감소된 부담은 귀하의 가계 어떤 부분으로 지출되리라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로 응답해주세요.

- ① 가족 식비 ② 가족 의료비 ③ 생활비 전반 ④ 자녀 교육비 ⑤ 자녀 돌봄비용
- ⑥ 자녀 육아품목 구입 등 육아비 지출 전반 ⑦저축 ⑧대출/빚 갚기
- ⑨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0) 특별히 없음

1순위:

2순위:

문29. 다음은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 항 목 | 전혀 아님 | 약간 아님 | 보통 | 다소 그러 함 | 매우 그러 함 | 비해 당 /모 름 |
|---|----------|----------|----|---------------|---------------|--------------------|
| | 1 | 2 | 3 | 4 | 5 | |
| 1) 정부의 육아지원이 육아비 지출의 감소에 기여했다 | 1 | 2 | 3 | 4 | 5 | 9 |
| ※ 현재 지원받는 항목을 체크하시고 각각 응답해주세요. | | | | | | |
| 1-1) [□유치원, □어린이집, □양육수당] 지원이 육아비 지출 감소에 기여했다 | 1 | 2 | 3 | 4 | 5 | 9 |
| 1-2) 그밖에 지원(적어주세요: _____)이 육아비 지출 감소에 기여했다 | 1 | 2 | 3 | 4 | 5 | 9 |
| 2) 저소득/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한 차등지원설계보다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는 현행 보편지원설계가 적절하다. | 1 | 2 | 3 | 4 | 5 | 9 |
| 3) 영유아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1 | 2 | 3 | 4 | 5 | 9 |
| 4) 육아지원정책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 | 1 | 2 | 3 | 4 | 5 | 9 |
| 5) 서비스/(또는) 바우처 지원보다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 | 1 | 2 | 3 | 4 | 5 | 9 |
| 6)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영유아가구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1 | 2 | 3 | 4 | 5 | 9 |
| 7)기타(적어주세요: _____) | 1 | 2 | 3 | 4 | 5 | 9 |

문30.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자녀 육아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1, 2순위로 응답해주세요.

- ① 부모대상 육아 멘토링 및 상담, 교육 지원
- ② 건강·영양·의료 지원

- ③ 영유아부모 육아공동체 모임 및 품앗이 지원
- ④ 문화행사/체험 지원
- ⑤ 양육비 지원
- ⑥ 긴급상황 돌봄지원체계
- ⑦ 기타의견(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설문에 성실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및 대상아 수

□ 건강보험료 기준 0세아 지원 대상 규모

- 2015년 4월 말 기준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 기간 중 출생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의 소득 분포별 가입자 수는 다음 <부표 1~2> 와 같음.

<부표 표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0세아 포함 가입자 수

단위: 명

| 최저생계비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00% 이하 | 35,377 | 10,210 | 3,591 |
| 100% 초과 110% 이하 | 44,270 | 14,675 | |
| 110% 초과 120% 이하 | 54,082 | 18,718 | |

주: 구간별 누적 가입자수

<부표 표 2> 건강보험료 기준 0세아 포함 가입자 수_가구원수별

단위: 명

| 가구원 수 | 0세아 포함 직장가입자 | | | 0세아 포함 지역가입자 | | | 0세아포함 의료급여 가입자 |
|-------|--------------|------------|---------|--------------|------------|---------|----------------|
| | 전체 | 본인 부담금 기준액 | 120% 이하 | 전체 | 본인 부담금 기준액 | 120% 이하 | |
| 계 | 290,072 | - | 54,082 | 82,296 | - | 18,718 | 3,591 |
| 2인이하 | 44,711 | 38,301 | 2,808 | 13,256 | 16,013 | 5,691 | / |
| 3인 | 83,811 | 50,100 | 12,014 | 29,436 | 30,123 | 3,800 | |
| 4인 | 77,359 | 61,379 | 16,033 | 24,593 | 47,997 | 4,645 | |
| 5인 | 47,387 | 72,137 | 11,584 | 10,206 | 64,949 | 2,876 | |
| 6인 | 24,910 | 83,871 | 7,255 | 3,373 | 83,410 | 1,143 | |
| 7인 | 8,801 | 95,252 | 3,173 | 1,010 | 99,229 | 381 | |
| 8인이상 | 3,093 | 105,783 | 1,215 | 422 | 113,831 | 182 | |

*2015년4월말기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0세아'는2014.5.1~2015.4.30기간중출생아

☞ 보험료본인부담금은최근보험료적용

부록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사업 자료 분석

-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의 판정 대상자는 다음 〈부표 3〉 과 같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 대상자⁴⁴⁾에 대해 지원함.
-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의 월별 판정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매월 1만 9천에서 2만 천 가구가 매월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의 신청하는 총 246,704 가구로 산출됨.

〈부록 표 3〉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월별 판정 대상자 현황

단위: 가구

|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월 | 가구수 | 누적 가구수 |
|--------------|--------|---------|
| 2014/02 | 20,463 | |
| 2014/03 | 20,481 | 40,944 |
| 2014/04 | 21,152 | 62,096 |
| 2014/05 | 21,607 | 83,703 |
| 2014/06 | 21,537 | 105,240 |
| 2014/07 | 20,721 | 125,961 |
| 2014/08 | 21,083 | 147,044 |
| 2014/09 | 21,252 | 168,296 |
| 2014/10 | 20,345 | 188,641 |
| 2014/11 | 19,891 | 208,532 |
| 2014/12 | 19,054 | 227,586 |
| 2015/01 | 19,118 | 246,704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내부자료:

-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을 신청한 246,704가구 중 사업 대상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는 총 82,145 가구이고, 사업기간 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은 이용 가구는 63,647 가구임.
-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의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에 관한 사업 지원 신청 당시의 정보를 행복e음에 연계하여 추출함.

44)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 2014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생계비 구간별 적합 판정자 분포와 이 중 실제 사업 이용자 분포를 추정함.

※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대한 정보는 없어 직장·지역가입을 혼합 적용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소득분포를 추정함.

〈부록 표 4〉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적합 판정자의 소득 분포

단위: 가구

| 최저생계비 | 적합판정가구 | 누적 빈도 |
|-----------------|--------|--------|
| 100% 이하 | 30,101 | 30,101 |
| 100% 초과 110% 이하 | 5,718 | 35,819 |
| 110% 초과 120% 이하 | 6,514 | 42,333 |
| 120% 초과 130% 이하 | 6,943 | 49,276 |
| 130% 초과 140% 이하 | 6,399 | 55,675 |
| 140% 초과 150% 이하 | 5,149 | 60,824 |
| 150% 초과 | 21,321 | 82,145 |

〈부록 표 5〉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이용자의 소득 분포

단위: 가구

| 최저생계비 | 이용 가구 | 누적빈도 |
|-----------------|--------|--------|
| 100% 이하 | 23,444 | 23,444 |
| 100% 초과 110% 이하 | 4,342 | 27,786 |
| 110% 초과 120% 이하 | 5,048 | 32,834 |
| 120% 초과 130% 이하 | 5,372 | 38,206 |
| 130% 초과 140% 이하 | 5,014 | 43,220 |
| 140% 초과 150% 이하 | 4,012 | 47,232 |
| 150% 초과 | 16,415 | 63,647 |

〈부록 표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월별 이용 현황

단위: 가구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전국가구 평균소득4 0%초과~5 0%이하 | 합계 | 출생통계대비 이용비율 | | | 출생통계 |
|-------|-----------------------|---------------------------------|-------|-----------------------|---------------------------------|-------|--------|
| | | | | 전국가구 평균소득4 0%이하 | 전국가구 평균소득4 0%초과~5 0%이하 | 합계 | |
| 12.2월 | 3,644 | 2,471 | 6,115 | 8.97 | 6.08 | 15.06 | 40,609 |
| 12.3월 | 4,307 | 2,664 | 6,971 | 9.97 | 6.17 | 16.13 | 43,209 |
| 12.4월 | 4,375 | 2,577 | 6,952 | 10.91 | 6.43 | 17.34 | 40,094 |
| 12.5월 | 4,227 | 2,702 | 6,929 | 10.73 | 6.86 | 17.59 | 39,388 |
| 12.6월 | 3,942 | 2,503 | 6,445 | 10.33 | 6.56 | 16.88 | 38,170 |
| 12.7월 | 3,538 | 2,234 | 5,772 | 8.82 | 5.57 | 14.38 | 40,127 |
| 12.8월 | 4,106 | 2,520 | 6,626 | 9.90 | 6.08 | 15.98 | 41,455 |
| 12.9월 | 3,929 | 2,467 | 6,396 | 9.41 | 5.91 | 15.33 | 41,735 |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전국가구 평균소득4 0%초과~5 0%이하 | 합계 | 출생통계대비 이용비율 | | | 출생통계 |
|--------|-----------------------|---------------------------------|--------|-----------------------|---------------------------------|-------|---------|
| | | | | 전국가구 평균소득4 0%이하 | 전국가구 평균소득4 0%초과~5 0%이하 | 합계 | |
| 12.10월 | 4,064 | 2,707 | 6,771 | 9.70 | 6.46 | 16.16 | 41,889 |
| 12.11월 | 3,774 | 2,500 | 6,274 | 9.78 | 6.48 | 16.26 | 38,579 |
| 12.12월 | 3,587 | 2,313 | 5,900 | 10.45 | 6.74 | 17.20 | 34,311 |
| 계 | 43,493 | 27,658 | 71,151 | 9.89 | 6.29 | 16.19 | 439,566 |
| 13.1월 | 3,699 | 2,340 | 6,039 | 8.36 | 5.29 | 13.65 | 44,247 |
| 13.2월 | 3,471 | 2,357 | 5,828 | 9.47 | 6.43 | 15.90 | 36,645 |
| 13.3월 | 3,941 | 2,487 | 6,428 | 10.23 | 6.45 | 16.68 | 38,540 |
| 13.4월 | 3,942 | 2,547 | 6,489 | 10.73 | 6.93 | 17.66 | 36,738 |
| 13.5월 | 3,862 | 2,458 | 6,320 | 10.84 | 6.90 | 17.74 | 35,626 |
| 13.6월 | 3,433 | 2,317 | 5,750 | 10.35 | 6.99 | 17.34 | 33,154 |
| 13.7월 | 3,486 | 2,538 | 6,024 | 9.63 | 7.01 | 16.65 | 36,188 |
| 13.8월 | 3,396 | 2,719 | 6,115 | 9.33 | 7.47 | 16.80 | 36,400 |
| 13.9월 | 3,326 | 3,145 | 6,471 | 8.97 | 8.49 | 17.46 | 37,063 |
| 13.10월 | 3,852 | 4,179 | 8,031 | 10.68 | 11.59 | 22.27 | 36,055 |
| 13.11월 | 3,328 | 4,349 | 7,677 | 9.84 | 12.86 | 22.69 | 33,827 |
| 13.12월 | 3,207 | 4,679 | 7,886 | 10.03 | 14.63 | 24.67 | 31,972 |
| 계 | 42,943 | 36,115 | 79,058 | 9.84 | 8.27 | 18.11 | 436,455 |
| 14.1월 | 3,097 | 4,441 | 7,538 | 7.52 | 10.78 | 18.30 | 41,200 |
| 14.2월 | 3,298 | 3,760 | 7,058 | 8.96 | 10.22 | 19.18 | 36,800 |
| 14.3월 | 3,819 | 3,033 | 6,852 | 10.05 | 7.98 | 18.03 | 38,000 |
| 14.4월 | 3,873 | 2,557 | 6,430 | 10.41 | 6.87 | 17.28 | 37,200 |
| 14.5월 | 3,720 | 2,425 | 6,145 | 10.42 | 6.79 | 17.21 | 35,700 |
| 14.6월 | 3,418 | 2,248 | 5,666 | 9.99 | 6.57 | 16.57 | 34,200 |
| 14.7월 | 3,479 | 2,297 | 5,776 | 9.56 | 6.31 | 15.87 | 36,400 |
| 14.8월 | 3,366 | 2,207 | 5,573 | 9.22 | 6.05 | 15.27 | 36,500 |
| 14.9월 | 3,529 | 2,335 | 5,864 | 9.34 | 6.18 | 15.51 | 37,800 |
| 14.10월 | 3,561 | 2,414 | 5,975 | 9.78 | 6.63 | 16.41 | 36,400 |
| 14.11월 | 3,216 | 2,086 | 5,302 | 9.96 | 6.46 | 16.41 | 32,300 |
| 14.12월 | 3,170 | 2,117 | 5,287 | 9.69 | 6.47 | 16.17 | 32,700 |
| 계 | 41,546 | 31,920 | 73,466 | 9.55 | 7.33 | 16.88 | 435,200 |
| 15.1월 | 3,276 | 2,140 | 5,416 | 7.86 | 5.13 | 12.99 | 41,700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내부자료.

통계청(2014) 인구동향조사.

부록 4. 최저생계비-소득구간 환산 기준

〈부록 표 7〉 최저생계비-소득구간 환산 기준

단위: 천원, %

| 최저생계비 구간 |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천원 이하) | | | | 평균소득 (%) 대비 | 중위소득 (%) 대비 |
|-------------|-------------------------|-------|-------|--------------|----------------|----------------|
|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이상) | | |
| 100% 이하 | 1,051 | 1,359 | 1,668 | 1,976 | | 40% |
| 110% 이하 | 1,156 | 1,496 | 1,835 | 2,175 | | |
| 120% 이하 | 1,261 | 1,632 | 2,002 | 2,372 | | 50% |
| 130% 이하 | 1,366 | 1,768 | 2,169 | 2,570 | | 52% |
| 140% 이하 | 1,471 | 1,904 | 2,336 | 2,768 | | |
| 150% 이하 | 1,577 | 2,040 | 2,502 | 2,965 | 50% | 60% |
| 180% 이하 | 1,892 | 2,447 | 3,003 | 3,559 | | 72% |
| 200% 이하 | 2,102 | 2,719 | 3,337 | 3,954 | 65% | 80% |
| 300% 이하 | 3,153 | 4,079 | 5,005 | 5,931 | 100% | 120% |
| 중위소득 | 266만원 | 344만원 | 422만원 | 500만원 | - | - |

주: 잠정기준으로, 소득구간 비율과 최저생계비 구간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음.

부록 5. 기저귀·분유 지원단가별 소요예산 추계

수요자 평균 이용량과 월령 및 대표 상품의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원 단가(표 IV-3-22) 소요예산(표 IV-4-1)의 상세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록 표 7〉 소요 예산: 1-1안

| 지원 대상 | 지원 내역 | 구매처 | 지원단가 (원) | 건강보험 자료 | | 단위: 억원 |
|------------------|-------|------|-------------|-------------|-------------|-----------------------|
| | | | | 예비타당성 방식 | KICCE 방식 |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자료 |
| 100% 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81,000 | 498 | 523 | 504 |
| | | 오프라인 | 97,000 | 597 | 627 | 603 |
| | 분유 | 온라인 | 124,000 | 38 | 55 | 54 |
| | | 오프라인 | 133,000 | 41 | 59 | 58 |
| 합계 | 온라인 | | 536 | 579 | 557 | |
| | | 오프라인 | | 638 | 686 | 661 |
| 100%초과 11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81,000 | 643 | 668 | 599 |
| | | 오프라인 | 97,000 | 770 | 800 | 718 |
| | 분유 | 온라인 | 124,000 | 49 | 66 | 61 |
| | | 오프라인 | 133,000 | 53 | 71 | 65 |
| 합계 | 온라인 | | 692 | 734 | 660 | |
| | | 오프라인 | | 822 | 871 | 783 |
| 110%초과 12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81,000 | 793 | 817 | 708 |
| | | 오프라인 | 97,000 | 950 | 978 | 848 |
| | 분유 | 온라인 | 124,000 | 61 | 78 | 69 |
| | | 오프라인 | 133,000 | 65 | 83 | 74 |
| 합계 | 온라인 | | 854 | 894 | 778 | |
| | | 오프라인 | | 1015 | 1061 | 923 |
| 120%초과 13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81,000 | | | 825 |
| | | 오프라인 | 97,000 | | | 988 |
| | 분유 | 온라인 | 124,000 | | | 78 |
| | | 오프라인 | 133,000 | | | 84 |
| 합계 | 온라인 | | | | 903 | |
| | | 오프라인 | | | 1072 | |
| 130%초과 14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81,000 | | | 932 |
| | | 오프라인 | 97,000 | | | 1116 |
| | 분유 | 온라인 | 124,000 | | | 87 |
| | | 오프라인 | 133,000 | | | 93 |
| 합계 | 온라인 | | | | 1018 | |
| | | 오프라인 | | | 1209 | |
| 140%초과 15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81,000 | | | 1018 |
| | | 오프라인 | 97,000 | | | 1219 |
| | 분유 | 온라인 | 124,000 | | | 93 |
| | | 오프라인 | 133,000 | | | 100 |
| 합계 | 온라인 | | | | 1111 | |
| | | 오프라인 | | | 1319 | |

〈부록 표 8〉 소요 예산: 1-2만

단위: 억원

| 지원대상 | 지원내역 | 구매처 | 지원단가 (원) | 건강보험 자료 | | 산모신생 아도우미 사업 자료 |
|------------------|------|------|-------------|--------------|-------------|-----------------------|
| | | | | 예비타당 성 방식 | KICCE 방식 | |
| 10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4,000 | 394 | 414 | 398 |
| | | 오프라인 | 66,000 | 406 | 427 | 410 |
| | 분유 | 온라인 | 86,000 | 26 | 38 | 37 |
| | | 오프라인 | 94,000 | 29 | 42 | 41 |
| | 합계 | 온라인 | | 420 | 452 | 435 |
| | | 오프라인 | | 435 | 468 | 451 |
| 100%초과 11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4,000 | 508 | 528 | 474 |
| | | 오프라인 | 66,000 | 524 | 544 | 488 |
| | 분유 | 온라인 | 86,000 | 34 | 46 | 42 |
| | | 오프라인 | 94,000 | 37 | 50 | 46 |
| | 합계 | 온라인 | | 542 | 574 | 516 |
| | | 오프라인 | | 561 | 594 | 535 |
| 110%초과 12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4,000 | 627 | 645 | 560 |
| | | 오프라인 | 66,000 | 646 | 665 | 577 |
| | 분유 | 온라인 | 86,000 | 42 | 54 | 48 |
| | | 오프라인 | 94,000 | 46 | 59 | 53 |
| | 합계 | 온라인 | | 669 | 699 | 608 |
| | | 오프라인 | | 692 | 724 | 630 |
| 120%초과 13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4,000 | | | 652 |
| | | 오프라인 | 66,000 | | | 672 |
| | 분유 | 온라인 | 86,000 | | | 54 |
| | | 오프라인 | 94,000 | | | 59 |
| | 합계 | 온라인 | | | | 706 |
| | | 오프라인 | | | | 731 |
| 130%초과 14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4,000 | | | 736 |
| | | 오프라인 | 66,000 | | | 759 |
| | 분유 | 온라인 | 86,000 | | | 60 |
| | | 오프라인 | 94,000 | | | 66 |
| | 합계 | 온라인 | | | | 796 |
| | | 오프라인 | | | | 825 |
| 140%초과 15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4,000 | | | 804 |
| | | 오프라인 | 66,000 | | | 829 |
| | 분유 | 온라인 | 86,000 | | | 65 |
| | | 오프라인 | 94,000 | | | 71 |
| | 합계 | 온라인 | | | | 869 |
| | | 오프라인 | | | | 900 |

〈부록 표 9〉 소요 예산: 1-3안

단위: 억원

| 지원 대상 | 지원 내역 | 구매처 | 지원단가 (원) | 건강보험 자료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자료 |
|------------------|-------|------|-------------|-------------|-------------|-----------------------|
| | | | | 예비타당성 방식 | KICCE 방식 | |
| 100% 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338 | 355 | 342 |
| | | 오프라인 | 59,000 | 363 | 381 | 367 |
| | 분유 | 온라인 | 61,000 | 19 | 27 | 26 |
| | | 오프라인 | 61,000 | 19 | 27 | 26 |
| | 합계 | 온라인 | | 357 | 383 | 368 |
| | | 오프라인 | | 382 | 408 | 393 |
| 100%초과 11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436 | 453 | 407 |
| | | 오프라인 | 59,000 | 468 | 486 | 437 |
| | 분유 | 온라인 | 61,000 | 24 | 33 | 30 |
| | | 오프라인 | 61,000 | 24 | 33 | 30 |
| | 합계 | 온라인 | | 461 | 486 | 437 |
| | | 오프라인 | | 492 | 519 | 467 |
| 110%초과 12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538 | 555 | 481 |
| | | 오프라인 | 59,000 | 578 | 595 | 516 |
| | 분유 | 온라인 | 61,000 | 30 | 38 | 34 |
| | | 오프라인 | 61,000 | 30 | 38 | 34 |
| | 합계 | 온라인 | | 568 | 593 | 515 |
| | | 오프라인 | | 607 | 633 | 550 |
| 120%초과 13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 | 560 |
| | | 오프라인 | 59,000 | | | 601 |
| | 분유 | 온라인 | 61,000 | | | 39 |
| | | 오프라인 | 61,000 | | | 39 |
| | 합계 | 온라인 | | | | 598 |
| | | 오프라인 | | | | 639 |
| 130%초과 14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 | 633 |
| | | 오프라인 | 59,000 | | | 679 |
| | 분유 | 온라인 | 61,000 | | | 43 |
| | | 오프라인 | 61,000 | | | 43 |
| | 합계 | 온라인 | | | | 675 |
| | | 오프라인 | | | | 721 |
| 140%초과 15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 | 691 |
| | | 오프라인 | 59,000 | | | 741 |
| | 분유 | 온라인 | 61,000 | | | 46 |
| | | 오프라인 | 61,000 | | | 46 |
| | 합계 | 온라인 | | | | 737 |
| | | 오프라인 | | | | 787 |

〈부록 표 10〉 소요 예산: 2-1안

단위: 억원

| 지원 대상 | 지원 내역 | 구매처 | 지원단가 (원) | 건강보험 자료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자료 |
|------------------|-------|------|-------------|-------------|-------------|-----------------------|
| | | | | 예비타당성 방식 | KICCE 방식 | |
| 100% 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78,000 | 480 | 504 | 485 |
| | | 오프라인 | 95,000 | 584 | 614 | 591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35 | 51 | 50 |
| | | 오프라인 | 130,000 | 40 | 58 | 56 |
| | 합계 | 온라인 | | 515 | 555 | 535 |
| | | 오프라인 | | 624 | 672 | 647 |
| 100%초과 11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78,000 | 619 | 643 | 577 |
| | | 오프라인 | 95,000 | 754 | 783 | 703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46 | 61 | 57 |
| | | 오프라인 | 130,000 | 52 | 70 | 64 |
| | 합계 | 온라인 | | 664 | 704 | 634 |
| | | 오프라인 | | 805 | 853 | 767 |
| 110%초과 12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78,000 | 764 | 786 | 682 |
| | | 오프라인 | 95,000 | 930 | 958 | 831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56 | 72 | 64 |
| | | 오프라인 | 130,000 | 64 | 81 | 73 |
| | 합계 | 온라인 | | 820 | 859 | 747 |
| | | 오프라인 | | 994 | 1039 | 904 |
| 120%초과 13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78,000 | | | 794 |
| | | 오프라인 | 95,000 | | | 967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 | 73 |
| | | 오프라인 | 130,000 | | | 82 |
| | 합계 | 온라인 | | | | 867 |
| | | 오프라인 | | | | 1049 |
| 130%초과 14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78,000 | | | 897 |
| | | 오프라인 | 95,000 | | | 1093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 | 80 |
| | | 오프라인 | 130,000 | | | 91 |
| | 합계 | 온라인 | | | | 977 |
| | | 오프라인 | | | | 1183 |
| 140%초과 15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78,000 | | | 980 |
| | | 오프라인 | 95,000 | | | 1194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 | 86 |
| | | 오프라인 | 130,000 | | | 98 |
| | 합계 | 온라인 | | | | 1067 |
| | | 오프라인 | | | | 1291 |

〈부록 표 11〉 소요 예산: 2-2안

단위: 억원

| 지원 대상 | 지원 내역 | 구매처 | 지원단가 (원) | 건강보험 자료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자료 |
|------------------|-------|------|-------------|-------------|-------------|-----------------------|
| | | | | 예비타당성 방식 | KICCE 방식 | |
| 100% 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338 | 355 | 342 |
| | | 오프라인 | 72,000 | 443 | 465 | 448 |
| | 분유 | 온라인 | 68,000 | 21 | 30 | 29 |
| | | 오프라인 | 69,000 | 21 | 31 | 30 |
| | 합계 | 온라인 | | 359 | 386 | 372 |
| | | 오프라인 | | 464 | 496 | 478 |
| 100%초과 11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436 | 453 | 407 |
| | | 오프라인 | 72,000 | 571 | 594 | 533 |
| | 분유 | 온라인 | 68,000 | 27 | 36 | 33 |
| | | 오프라인 | 69,000 | 27 | 37 | 34 |
| | 합계 | 온라인 | | 463 | 490 | 440 |
| | | 오프라인 | | 599 | 630 | 567 |
| 110%초과 12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538 | 555 | 481 |
| | | 오프라인 | 72,000 | 705 | 726 | 630 |
| | 분유 | 온라인 | 68,000 | 33 | 43 | 38 |
| | | 오프라인 | 69,000 | 34 | 43 | 39 |
| | 합계 | 온라인 | | 572 | 597 | 519 |
| | | 오프라인 | | 739 | 769 | 668 |
| 120%초과 13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 | 560 |
| | | 오프라인 | 72,000 | | | 733 |
| | 분유 | 온라인 | 68,000 | | | 43 |
| | | 오프라인 | 69,000 | | | 44 |
| | 합계 | 온라인 | | | | 603 |
| | | 오프라인 | | | | 777 |
| 130%초과 14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 | 633 |
| | | 오프라인 | 72,000 | | | 828 |
| | 분유 | 온라인 | 68,000 | | | 47 |
| | | 오프라인 | 69,000 | | | 48 |
| | 합계 | 온라인 | | | | 680 |
| | | 오프라인 | | | | 876 |
| 140%초과 15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55,000 | | | 691 |
| | | 오프라인 | 72,000 | | | 905 |
| | 분유 | 온라인 | 68,000 | | | 51 |
| | | 오프라인 | 69,000 | | | 52 |
| | 합계 | 온라인 | | | | 742 |
| | | 오프라인 | | | | 957 |

〈부록 표 12〉 소요 예산: 2-3안

단위: 억원

| 지원 대상 | 지원 내역 | 구매처 | 지원단가 (원) | 건강보험 자료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자료 |
|------------------|-------|------|-------------|-------------|-------------|-----------------------|
| | | | | 예비타당성 방식 | KICCE 방식 | |
| 100% 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2,000 | 381 | 401 | 386 |
| | | 오프라인 | 91,000 | 560 | 588 | 566 |
| | 분유 | 온라인 | 100,000 | 31 | 45 | 43 |
| | | 오프라인 | 120,000 | 37 | 53 | 52 |
| | 합계 | 온라인 | | 412 | 445 | 429 |
| | | 오프라인 | | 597 | 642 | 618 |
| 100%초과11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2,000 | 492 | 511 | 459 |
| | | 오프라인 | 91,000 | 722 | 750 | 673 |
| | 분유 | 온라인 | 100,000 | 40 | 53 | 49 |
| | | 오프라인 | 120,000 | 48 | 64 | 59 |
| | 합계 | 온라인 | | 532 | 565 | 508 |
| | | 오프라인 | | 770 | 814 | 733 |
| 110%초과 12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2,000 | 607 | 625 | 542 |
| | | 오프라인 | 91,000 | 891 | 918 | 796 |
| | 분유 | 온라인 | 100,000 | 49 | 63 | 56 |
| | | 오프라인 | 120,000 | 59 | 75 | 67 |
| | 합계 | 온라인 | | 656 | 688 | 598 |
| | | 오프라인 | | 950 | 993 | 863 |
| 120%초과13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2,000 | | | 631 |
| | | 오프라인 | 91,000 | | | 926 |
| | 분유 | 온라인 | 100,000 | | | 63 |
| | | 오프라인 | 120,000 | | | 76 |
| | 합계 | 온라인 | | | | 694 |
| | | 오프라인 | | | | 1002 |
| 130%초과14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2,000 | | | 713 |
| | | 오프라인 | 91,000 | | | 1047 |
| | 분유 | 온라인 | 100,000 | | | 70 |
| | | 오프라인 | 120,000 | | | 84 |
| | 합계 | 온라인 | | | | 783 |
| | | 오프라인 | | | | 1130 |
| 140%초과15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2,000 | | | 779 |
| | | 오프라인 | 91,000 | | | 1144 |
| | 분유 | 온라인 | 100,000 | | | 75 |
| | | 오프라인 | 120,000 | | | 90 |
| | 합계 | 온라인 | | | | 854 |
| | | 오프라인 | | | | 1234 |

〈부록 표 13〉 소요 예산: 가구당 월평균 구입비용

단위: 억원

|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지원단가 (원) | 건강보험 자료 | | 산모신생 아도우미 사업 자료 |
|------------------|------|-------------|--------------|-------------|-----------------------|
| | | | 예비타당 성 방식 | KICCE 방식 | |
| 100%이하 | 기저귀 | 78,000 | 480 | 446 | 485 |
| | 분유 | 100,000 | 31 | 41 | 43 |
| | 합계 | | 511 | 487 | 528 |
| 100%초과 110%이하 | 기저귀 | 78,000 | 619 | 568 | 577 |
| | 분유 | 100,000 | 40 | 49 | 49 |
| | 합계 | | 659 | 617 | 626 |
| 110%초과 120%이하 | 기저귀 | 78,000 | 764 | 694 | 682 |
| | 분유 | 100,000 | 49 | 57 | 56 |
| | 합계 | | 813 | 751 | 738 |
| 120%초과 130%이하 | 기저귀 | 78,000 | | | 794 |
| | 분유 | 100,000 | | | 63 |
| | 합계 | | | | 857 |
| 130%초과 140%이하 | 기저귀 | 78,000 | | | 897 |
| | 분유 | 100,000 | | | 70 |
| | 합계 | | | | 967 |
| 140%초과 150%이하 | 기저귀 | 78,000 | | | 980 |
| | 분유 | 100,000 | | | 75 |
| | 합계 | | | | 1,055 |

〈부록 표 14〉 소요 예산_‘14년 단가 기준

단위: 억원

| 지원 대상 | 지원내역 | 구매처 | 지원단가 (원) | 건강보험 자료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자료 |
|------------------|------|------|-------------|--------------|-------------|-----------------------|
| | | | | 예비타당 성 방식 | KICCE 방식 | |
| 100% 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8,000 | 418 | 389 | 423 |
| | | 오프라인 | 75,000 | 461 | 429 | 466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35 | 47 | 50 |
| | | 오프라인 | 140,000 | 43 | 57 | 61 |
| | 합계 | 온라인 | | 454 | 436 | 473 |
| | | 오프라인 | | 504 | 486 | 527 |
| 100%초과 11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8,000 | 540 | 495 | 503 |
| | | 오프라인 | 75,000 | 595 | 546 | 555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46 | 56 | 57 |
| | | 오프라인 | 140,000 | 56 | 68 | 69 |
| | 합계 | 온라인 | | 585 | 551 | 560 |
| | | 오프라인 | | 651 | 615 | 624 |
| 110%초과 12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8,000 | 666 | 605 | 595 |
| | | 오프라인 | 75,000 | 734 | 667 | 656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56 | 65 | 64 |
| | | 오프라인 | 140,000 | 69 | 79 | 78 |
| | 합계 | 온라인 | | 722 | 670 | 659 |
| | | 오프라인 | | 803 | 747 | 734 |
| 120%초과 13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8,000 | | | 692 |
| | | 오프라인 | 75,000 | | | 764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 | 73 |
| | | 오프라인 | 140,000 | | | 88 |
| | 합계 | 온라인 | | | | 765 |
| | | 오프라인 | | | | 852 |
| 130%초과 14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8,000 | | | 782 |
| | | 오프라인 | 75,000 | | | 863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 | 80 |
| | | 오프라인 | 140,000 | | | 98 |
| | 합계 | 온라인 | | | | 862 |
| | | 오프라인 | | | | 960 |
| 140%초과 150%이하 | 기저귀 | 온라인 | 68,000 | | | 855 |
| | | 오프라인 | 75,000 | | | 942 |
| | 분유 | 온라인 | 115,000 | | | 86 |
| | | 오프라인 | 140,000 | | | 105 |
| | 합계 | 온라인 | | | | 941 |
| | | 오프라인 | | | | 1,048 |

〈부록 표 15〉 소요 예산_‘15년 단가 기준

단위: 억원

|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지원단가 (원) | 건강보험 자료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자료 |
|------------------|------|-------------|--------------|-------------|-----------------------|
| | | | 예비타당 성 방식 | KICCE 방식 | |
| 100%이하 | 기저귀 | 65,000 | 400 | 420 | 404 |
| | 분유 | 125,000 | 38 | 56 | 54 |
| | 합계 | | 438 | 476 | 458 |
| 100%초과 110%이하 | 기저귀 | 65,000 | 516 | 536 | 481 |
| | 분유 | 125,000 | 50 | 67 | 62 |
| | 합계 | | 565 | 603 | 543 |
| 110%초과 120%이하 | 기저귀 | 65,000 | 636 | 655 | 568 |
| | 분유 | 125,000 | 61 | 78 | 70 |
| | 합계 | | 698 | 734 | 638 |
| 120%초과 130%이하 | 기저귀 | 65,000 | | | 662 |
| | 분유 | 125,000 | | | 79 |
| | 합계 | | | | 741 |
| 130%초과 140%이하 | 기저귀 | 65,000 | | | 748 |
| | 분유 | 125,000 | | | 87 |
| | 합계 | | | | 835 |
| 140%초과 150%이하 | 기저귀 | 65,000 | | | 817 |
| | 분유 | 125,000 | | | 94 |
| | 합계 | | | | 911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효과성 달성 방안 연구

발행일 2015년 6월

발행인 보건복지부

발행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 044)202-2118

팩스: 044)202-3966

<http://www.mw.go.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